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975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3

<소득세 일반(근로소득, 종합소득 등) 분야> ····· 3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 특례 ····· 3

가. 개요 ····· 3

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7

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납부특례 적용기한 연장(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14

라.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20

2.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하향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25

가.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및 관련 조세특례 개요 ····· 25

나.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하향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윤준병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28

다.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특례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34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및 납입기간 단축 등(엄태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38

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엄태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43

나. 납입기간의 단축(5년→3년) 등(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47

4.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및 특별재난지역,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 기부에 대한 우대 적용(한병도의원안, 황명선의원안, 정성호의원안, 이해식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50
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세제지원 강화 ····· 63
가. 개요 ····· 63
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정부안, 정태호의원안, 박수영의원안) ····· 64
6.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문진석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74
7.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요건 개선에 따른 조세특례 정비(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84
8. 세금우대저축자료 제공요구 주체 확대(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92
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강화 ····· 96
가. 개요 ····· 96
나. ISA 납입·비과세 한도 및 가입대상 확대 등(박대출의원안, 정부안, 이강일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98
1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정부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108
11.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111
12.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115
13. 혼인관련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설(박정하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124
1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 연장 등 (박희승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131
15. 근로장려금 제도 세제지원 강화 등 ····· 141
가. 개요 ····· 141
나.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144
다. 중증장애인인 직계존속 부양 홑벌이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149
라.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요건 정비(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152
16.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특례 신설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156
17.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 추징기준 변경(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163

1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신설, 공제율 상향, 적용기한 연장 등 ····· 170
가. 제도 개요 ····· 170
나.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제도 신설(서영교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173

<양도소득세 분야> ····· 180

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이달희·배준영·최은석·조경태·임미애·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180
2. 대토보상 과세특례 통보절차 변경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195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199
4.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과세특례 연장 등 (엄태영·윤준병·최은석·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204
가.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5
나.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양도 추가 ····· 208
5.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박대출·최은석·이인선·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210
6.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정태호의원안·정부안) ····· 220

<법인세 분야> ····· 225

1. 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225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감면율 정비 등 (윤준병의원안, 정부안, 엄태영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228
가. 적용기한 연장 (윤준병의원안, 정부안, 엄태영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233
나. 감면율 정비 및 감면한도 설정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238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 242
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요 ····· 242
나.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공제율 상향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252

다.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257
라.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 상향과 적용기한 연장(황정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정성호의원안, 박성훈의원안, 박수민의원안, 김종양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영진의원안, 김정재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이병진의원안, 정부안, 최민희의원안, 박지혜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264
마.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제율 상향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이상식의원안, 정성호의원안(1951), 이병진의원안(2125), 이병진의원안(2173), 정진욱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성훈의원안, 박수민의원안, 조지연의원안, 김종양의원안, 박충권의원안, 김영진의원안, 김성원의원안,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정부안, 박지혜의원안, 정성호의원안(4780), 허성무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신영대의원안) ····· 272
바.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운 분야 추가 등 ····· 279
사.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제외 대상에 임대용 자산 추가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293
4.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범위 확대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296
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등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299
가. 주식등 취득기간의 확대 ····· 302
나. 세액공제율 하향 ····· 304
다. 적용기한 연장 ····· 305
6.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307
가. 지방이전지원세제 개요 ····· 307
나. 수도권 내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축소 ····· 310
다. 과거 감면기업 적용 제외 및 동일업종 영위기간 요건 추가 ····· 317
라. 공장이전세액감면 제외업종 규정 삭제 ····· 325
7.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328
8.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박성훈의원안, 정성호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334
가. 적용기한 연장(박성훈의원안, 정성호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339
나. 톤당 운항일 이익을 선박의 소유현황에 따라 차등화하기 위한 위임근거 마련(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343

9.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346
10.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엄태영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351
가. 적용기한 연장(엄태영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356
11. 정비사업 채권포기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엄태영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359
1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365
13. 중복지원 배제 확대 및 추가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370
14. 업종명칭 변경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375

<부가가치세 분야> …… 377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에 대한 가산세 추징 배제 사유 신설(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377
2.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신설(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381
3.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387

<개별소비세 분야> …… 392

1.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 축소(엄태영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조인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392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엄태영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조인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395
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의 축소(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398

<관세 분야> …… 401

1.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수입 자본재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한병도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401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 406

1. 납부유예 주식등의 증여규정 정비(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406

2.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적용대상 어업권 정비(정부안, 정태호의원안) 407

<국세기본법 분야> ····· 409

1.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간(정부안, 정태호의원안) 409

Ⅰ. 개요

1.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97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태호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10. 28.

(3) 회 부 일 : 2024. 10.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것을 감면 요건으로 하던 것을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0조·제24조·제46조의8·제63조·제74조·제87조·제91조의18·제91조의22·제100조의3·제104조의31·제107조의2·제108조의3·제109조·제122조의3·제126조의2·제146조의2 및 제92조·제98조의9·제99조의14·제104조의34·제106조의11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소득세 일반(근로소득, 종합소득 등) 분야>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 특례

가. 개요

□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1]이나 「상법」[2]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의 설립ㆍ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른바 ‘스톡옵션(Stock-option)’으로 불리고 있음.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그 자체로는 권리일 뿐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권의 부여 시점에서는 과세 또한 이루어지지 않으나, 현행 「소득세법」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3]하는 경우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⑤ (생 략)

2)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④ (생 략)

3)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의미함.

하고 있음[4].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매도하는 경우, 그 양도이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및 양도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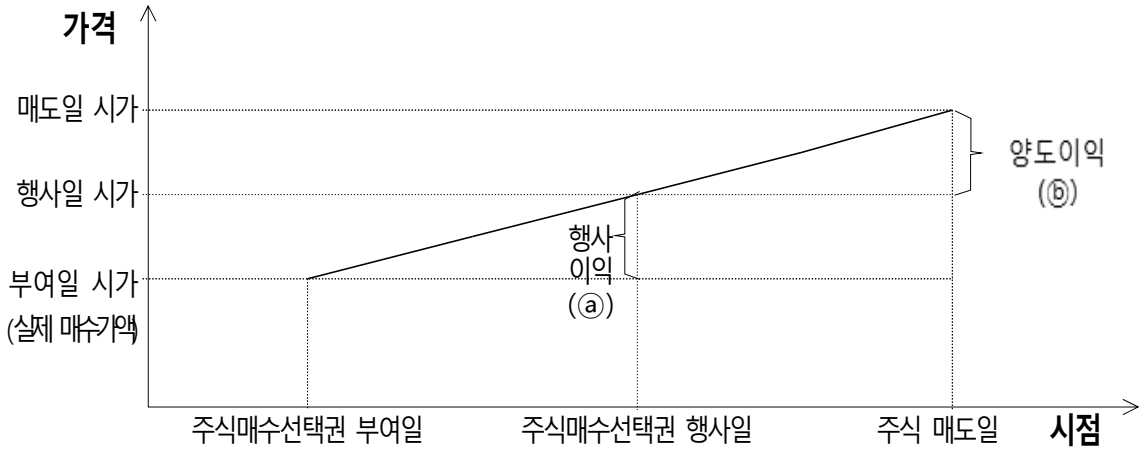

□ 벤처기업[6]의 경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

---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소득금액에 따라 6%~45%의 세율에 직면하게 되고,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퇴직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이 경우에도 300만원 이상 시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6~45%)되므로 과세내용은 사실상 동일함.

5) 소액주주의 경우 세율은 10%, 대주주인 경우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등의 세율이 적용되며(「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17757호)에 따라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이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유예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영자금이 부족하여 임직원에 대해 높은 임금을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성과급 대신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통해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러한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해 세제상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벤처기업에 우수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여러 과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특례규정은 모두 현행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인데, 현행법 제16조의2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특례'로서,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임직원")의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2억원(벤처기업별 총 누적한도 5억원)까지 비과세하는 것이고,

현행법 제16조의3은 '납부특례'로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그 행사이익(ⓐ)에 대한 세액을 5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현행법 제16조의4는 '과세특례'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 대신 주식의 양도 시점에서 행사이익과 양도이익을 합산한 금액(ⓐ+ⓑ)에 양도소득세(종합소득 아닌 분류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조문	내용	비고
제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특례**	연 2억원원까지 비과세 * 벤처기업별 총 누적한도 5억원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	세액을 5년간 분할납부
제16조의4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세로 추후 과세 가능

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대상) 비상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 (과세특례)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연간 2억원 한도 비과세 * 벤처기업별 총 누적한도 5억원 - (적용기한) 2024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연장 - 2027년 12월 31일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75)

□ 2건의 개정안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행사이익에 대하여 연간 2억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허용하는 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먼저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는 1996년 최초로 도입되었다가 2006년 세법개정 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안정적 정착 등을 이유[7]로 폐지되었으나,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다시 신설되었음.

비과세 한도는 최초 도입 당시 '연간 행사가액 5천만원'이었던 것

7) 2006년의 비과세·감면 정비 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됐고 주식매수선택권 자체가 인센티브인 만큼 별도 세제지원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논거로 일몰종료됨(자료 : 기획재정부, "2006년 세제개편안 요약", 2006. 9.).

에서 1999년 세법개정 시 '연간 행사가액 3천만원'으로 축소되었다가, 2000년 세법개정 시 행사가액이 아닌 '연간 행사이익[8] 3천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06년 폐지 이후 2017년에 특례를 재도입하면서 비과세 한도를 종전보다 다소 축소된 '연간 행사이익 2천만원'으로 정하였고, 2019년 세법개정 시에 '연간 행사이익 3천만원'으로 한도액이 1천만원 증액되었음.

이후 2021년 한도액이 '연간 행사이익 5천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2022년 '연간 행사이익 2억원(벤처기업별 총 누적한도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음.

[주식매수선택권 연간 비과세특례 한도액 추이]

개정연도	1996년	1999년	2000년	2006년	2017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금액	행사가액의 5천만원	행사가액의 3천만원	행사이익의 3천만원	<폐지>	행사이익의 2천만원	행사이익의 3천만원	행사이익의 5천만원	행사이익의 2억원

□ 현행법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한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이에 개정안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에 기여할 수 있

8) 행사가액은 실제 매수가액을 말하며,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의 시가에서 실제 매수가액의 차이를 의미함. 예를 들어 주식매수선택권행사를 통해 시가 5만원인 주식 100주를 1만원에 매수하였다면 행사가액은 100만원이며, 행사이익은 400만원임.

을 것으로 보임.

2023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 애로(66.8%)’와 ‘필요인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 애로(61.85%)’가 가장 많은 벤처기업이 겪는 경영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음.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행사이익이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음.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비과세 제도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이 해당 임직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이 벤처기업에 근무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 중인 벤처기업은 10.6%, 향후 활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23.2%로 매년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하거나 활용을 계획하는 벤처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활용 증가에 조세특례 확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의견임.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활용계획]

구분	활용 중	활용계획 있음
2020년	2.4%	2.4%
2021년	5.9%	14.6%
2022년	5.4%	17.0%
2023년	10.6%	23.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2023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

둘째, 벤처산업 전반의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2022년말 기준 벤처기업 총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80.9만명으로 이는 4대 그룹 전체 고용인력인 74.6만명[9]보다 6만명 이상 많은 수치임.

벤처기업 고용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규직 비율 역시 2022년말 기준 약 96.8%에 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10] 벤처산업의 성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경우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적용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수 차례의 세법 개정을 통해 비과세 한도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비과세 특례 대상 및 금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9) 삼성 27.4만명, 현대차 18.9만명, LG 15.7만명, SK 12.6만명

10) 2023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2023. 12.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지만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세제상의 우대조치로서 비과세소득을 규정할 수 있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용기한과 한도를 신중히 검토하여 비과세 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제도의 경우 2017년 재도입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한도를 확대하였고, 2022년에는 비과세 한도를 연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대폭 확대하였음.

비과세 한도의 연이은 상향조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 대상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2022년 7억원이었던 조세지출이 2024년에는 317억원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최근 5년간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대상 인원 및 금액]

(단위 : 명, 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대상인원	9,745	9,253	12,216	21,601	44,582
대상금액	5,505	5,642	8,892	19,828	13,175

주: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비과세 한도 상향은 2023년 이후 발생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부터 반영되므로 2023년 귀속소득 기준 비과세 대상 인원 및 금액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국세통계포털

[벤처기업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특례에 대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조세지출액	0	1	2	6	7	67	317	344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둘째, 연간 2억원의 비과세를 허용하는 것은 과세의 수직적 형평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

최근 주식매수선택권이 임원 등 소수의 담세력이 높은 특정인에게 집중되어 부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11].

또한,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뿐만 아니라 향후 주가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의 실현 가능성까지 감안한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벤처기업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득층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응능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과세특례를 부여받는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셋째, 벤처기업의 가파른 성장세를 고려할 때 제도 유지 필요성 및 대상 축소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연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한 이른바 "벤처천억기업"은 2022년 869개사로 10년 전인 2012년(416개사)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음.

벤처천억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683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은 175억원이며, 매출규모가 1조원 이상인 기업도 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벤처천억기업은 일반적인 대기업이나 중견·중소기업과 비교하더라도 수익성 지표 및 연구개발 비율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11) 투데이신문, "케이뱅크, 전 임직원에 나눈다던 스톡옵션…경영진에 59% 몰아줘", 2021. 7. 26.
한국경제TV, ""상장하면 수백억 차익"....스톡옵션 50만주 받은 직원", 2021. 6. 16,
뉴스핌, "카카오뱅크, 스톡옵션 차별에 일부 직원들 '불만'", 2019. 5. 21.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벤처천억기업 간 지표 비교]

(단위: %)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천억기업
매출액순이익률	4.1	5.5	2.7	6.5
자기자본순이익률	6.1	9.7	6.6	9.7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	1.6	1.0	0.7	2.9

자료: 2022 벤처천억기업조사, 중소벤처기업부, 2023. 11.

벤처천억기업 중 비상장기업이 전년대비 3.9%p 상승한 55.9%로 나타나고 있고 코넥스 상장기업도 3개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4

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납부특례 적용기한 연장(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 행사이익 소득세 분할납부 특례 - (대상) 비상장·상장 벤처기업 - (과세특례) 행사이익 소득세 5년간 분할 납부 - (적용기한) 2024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연장 - 2027년 12월 31일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75)

□ 2건의 개정안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란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제 매수가액과 행사 당시 시가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특례 금액은 현행 연 2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 이상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12] 종합소득 과세가 이루어지게 됨. 이 경우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기존의 근로소득(연봉)이나 기타 금융소득 등

12) 주식매수선택권을 벤처기업 재직 중에 행사하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고, 퇴직 후에 행사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됨.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져 납세 부담이 크게 발생[13]하게 되므로,

그 납세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해 2013년 세법개정 시 그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해당 세액을 3년간 분할하여 납부)을 신설했으며, 2015년 세법개정을 통해 해당 세액을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후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기존에 비상장벤처기업 및 코넥스(KONEX) 상장 벤처기업으로 한정되었던 분할납부 특례 적용대상에 코스피(KOSPI)·코스닥(KOSDAQ) 상장 벤처기업을 추가하였음.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추가로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이후 행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그 이익 또한 몇 년에 걸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데, 행사에 따른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통상 그 행사를 위한 최소 재직기간이 존재하는데 「상법」상의 최소 재직기간(2년) 외에 계약[14]에 따라 추가되는 최소 재직기간(이른바 “클리프”)이 있으며,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정적으로 부여

13) 소득세율은 1억 5천만원~3억원 구간 38%, 3억원~5억원 구간 40%, 5억원~10억원 구간 42%, 10억원 초과구간 45%임(「소득세법」 제55조)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을 의미함.

받는 기간(이른바 “베스팅”)이 존재하는바, 통상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이후 행사까지는 몇 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15].

또한 행사이익(ⓐ)은 실제 매수가액과 행사 당시의 시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데, 그 가격 차이는 해당 벤처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과 행사일 간의 몇 년 단위의 기간(클리프, 베스팅 기간 포함)에 걸쳐 장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몇 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이익을 한 과세기간에 모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및 양도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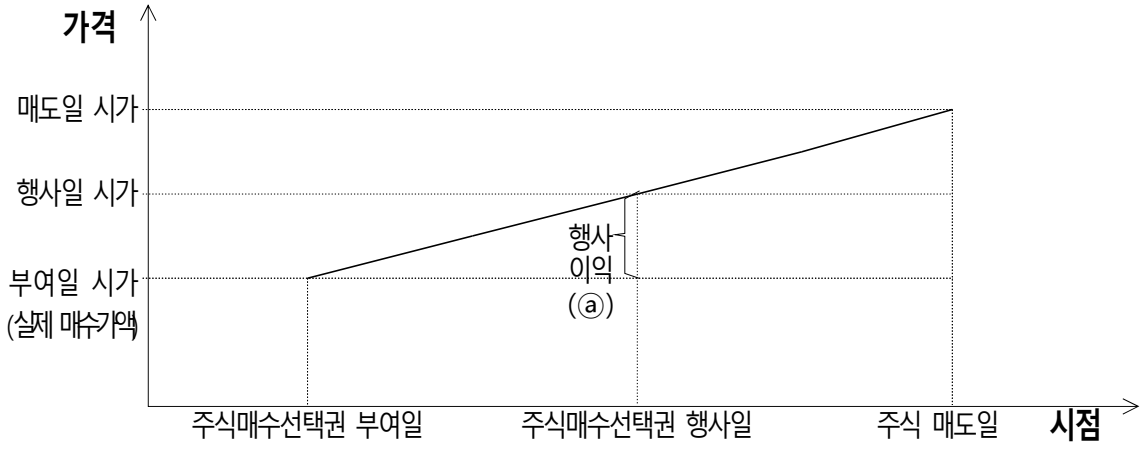

둘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만으로는 소득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동성 측면을 고려하여 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크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취득한 주식을 처분·매각하기 전까지는 현금화된 소득을 수취하는 것이 아

15) 예를 들어, 3년의 클리프(Cliff)에 20%씩 5년에 걸쳐 베스팅(Vesting)이 주어지는 경우, 2022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면 2026년 20%, 2027년 40%, 2028년 60%, 2029년 80% 2030년에 100%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

니므로, 그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는 대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급여를 받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함에 있어 유동성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다만, 비상장 및 상장 벤처기업 전체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소득세 분할납부 특례를 적용하는 본 제도의 연장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한 3가지 과세특례 제도[16] 중 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만 유일하게 특례 대상에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시장규모를 고려할 때 코스피·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각종 특례의 적용이 필요한 초기 벤처기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임.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규모 비교]

(단위: 십억원)

구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가총액	2,147,320	381,312	3,665

주: 2024년 10월 15일 기준
자료: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또한, 벤처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 간 편차도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로, 2022년말 기준 전체 벤처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65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은 -8,400만원인 반면, 2022년 기준 869개사에 달하는

16)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①**'비과세특례'**(비상장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2억원(기업별 총 누적한도 5억원)까지 비과세), ②**'납부특례'**(비상장 및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그 행사이익에 대한 세액을 5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허용), ③**'과세특례'**(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 대신 주식의 양도 시점에서 행사이익과 양도이익을 합산한 금액에 양도소득세(종합소득 아닌 분류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 등 3가지 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연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한 이른바 “벤처천억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683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은 175억원으로 조사되었음.

전체 벤처기업 중 상장기업은 1.9%에 불과하고 이중 코스닥 상장기업이 1.6%(상장기업 중 84.5%), 코스피 상장 기업이 0.01%(상장기업 중 0.8%)에 불과한 반면, 벤처천억기업의 기업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코스피 상장기업이 7.0%, 코스닥 상장기업이 36.7%에 달하고 있음.

[전체 벤처기업과 벤처천억기업 간 비교(2022년말 기준)]

(단위: 원, %)

구분	전체 벤처기업	벤처천억기업
평균 매출액	65억원	2,683억원
당기순이익	-8,400만원	175억원
매출액순이익률	-1.3%	6.5%
상장기업 비율	1.9%	44.1%
KOSPI	0.01%	**7.0%**
KOSDAQ	1.6%	**36.7%**
KONEX	0.28%	0.3%

자료: 2023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2023. 12.
2022 벤처천억기업조사, 중소벤처기업부, 2023. 11

벤처천억기업은 2004년 68개 기업에서 2022년 869개 기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1년에는 16.7%, 2022년에는 17.6%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증가폭을 보이고 있음.

이처럼 평균적인 벤처기업과 비교할 때 별도의 특례를 인정할 필

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이 도래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시 적용대상 축소 등의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4

라.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 (과세특례) 행사시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납부 가능 - (적용기한) 2024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연장 - 2027년 12월 31일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75)

□ 2건의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권리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이익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16조의4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대신, 향후 주식의 처분시점에서 행사이익과 양도이익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17]로

17)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분류과세됨(「소득세법」 제4조)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특례 대상에서 배제되어 종합소득과세 대상에 포함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및 양도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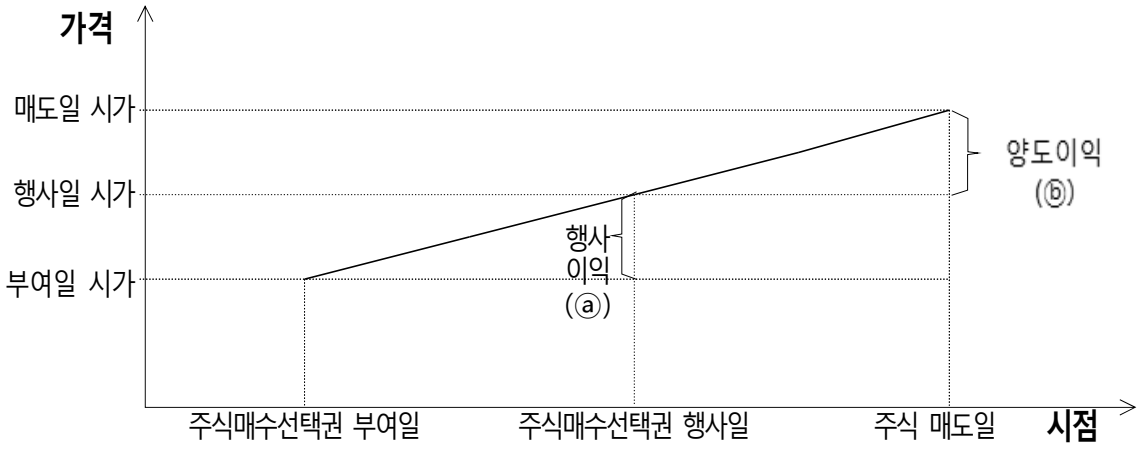

□ 본 특례는 앞서 논의한 비과세특례와 납부특례 제도와 달리 모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만 적용됨.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란 주식매수선택권 중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일 것, ② 3년간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일 것, ③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한 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일 것, ④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⑤ 2년 이상 재직 후 행사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함.

동 과세특례로 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단계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과세시기를 처분단계로 이연할 수 있으며, ② 종합소득 과세 대신 양도소득세로 선택하여 납부함으로써 세율에 일정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음[18].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대신 주식 처분 시 양도이익까지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3년 연장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종합소득세율과 양도세율의 차이를 감안할 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벤처기업 임직원의 세부담이 상당 부분 절감될 수 있어 우수인력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5천만원만 초과하더라도 24%의 한계세율에 직면하는 반면, 대주주가 아닌 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됨[19].

둘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만으로는 소득이 당장 실현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동성 측면을 고려하여 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크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취득한 주

18)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및 제104조제1항제11호 등에 따르면, 종합소득의 경우 소득세율은 1억 5천만원~3억원 구간 38%, 3억원~5억원 구간 40%, 5억원~10억원 구간 42%, 10억원 초과 구간 45%인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10%에서 최대 25%임.

19) 대주주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은 20%의 세율, 3억원 초과 구간은 25%의 세율에 직면함.

식을 처분·매각하기 전까지는 현금화된 소득을 수취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사이익에 대해 즉시 과세할 경우 대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급여를 받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유동성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따라서 과세시기를 주식 처분에 따른 유동성을 확보한 이후로 연기하는 것은 벤처기업 임직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과세특례를 추가로 3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벤처기업의 가파른 성장세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연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한 이른바 "벤처천억기업"은 2022년 869개사로 10년 전인 2012년(416개사)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음.

벤처천억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683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은 175억원이며, 매출규모가 1조원 이상인 기업도 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일반적인 대기업이나 중견·중소기업과 비교하더라도 수익성 지표 및 연구개발 비율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벤처천억기업 중 비상장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도 기준 55.9%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매년 비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벤처천억기업 간 지표 비교]

(단위: %)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천억기업
매출액순이익률	4.1	5.5	2.7	6.5
자기자본순이익률	6.1	9.7	6.6	9.7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	1.6	1.0	0.7	2.9

주: 벤처천억기업이란 연 매출 1천억원 이상을 기록한 벤처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료: 2022 벤처천억기업조사, 중소벤처기업부, 2023. 11.

문 의 처
02)6788-5154

2.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하향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가.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및 관련 조세특례 개요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영성과급 지급 등 일정한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하며,[20] 다음과 같이 6개 유형으로 구분됨.[2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상 성과공유제 유형]

유 형	내 용
경영성과급 지급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 제도의 운영
성과보상공제 가입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내일채움공제) 가입
임금수준 상승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의 상승 -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2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2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6조의2

유 형	내 용
우리사주제도 등 운영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제50조 또는 제86조의2에 따른 우리사주제도・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상법」 제340조의2・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기타	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복지지원 중소기업, 여가친화 인증기업

2018년 2월 성과공유제 실시 이후 성과공유기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2년 기준 102,35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도입현황]

(단위: 개사)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성과공유기업 수	10,794	31,171	51,275	72,222	102,355

자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3년도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성과분석'

「조세특례제한법」제19조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는 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성과공유제 유형 중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급금액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를 50% 감면하는 것임. 동 제도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됨.

동 제도는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2021년 세법개정을 통해 적용기한 연장과 함께 성과급 지급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종전 10%에서 15%로 상향하였고, 근로자가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음.

한편, 종전 시행령에서는 경영성과급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해서만 동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21년 세법개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삭제되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서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해서도 동 제도를 적용하게 되었음.

동 제도에 따른 조세지출은 2020년 59억원에서 2023년 18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21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득세	26	36	44	64	67	72
법인세	33	50	69	116	137	143
합계	59	86	112	180	204	215

주)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나.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하향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윤준병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제19조제1항)	□ 공제율 하향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
○ 대상:「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 중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기업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공제액: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5%	○ 공제액: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4. 12. 31.	○ 적용기한: 2027. 12. 31.	○ 적용기한: 2029. 12. 31.
	○ 시행일: 2025. 1. 1.	○ (좌 동)
	○ 경과조치: 법 시행 전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경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윤준병의원안 2024. 8. 22. 제출(의안번호 3085),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75)

□ 3건의 개정안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세액공제율 하향조정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정부안·정태호의원안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10%로 하향조정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안은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급여 수준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중소기업 인건비 수준은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성과공유기업 직원의 1인당 인건비가 비성과공유기업에 비해 약 1,200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성과공유기업 여부별 종업원 1인당 인건비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성과공유기업 (A)	57.4	61.3	66.2	70.7
非성과공유기업 (B)	51.6	53.2	55.9	59.0
전체기업 평균	54.7	57.5	61.3	65.2
집단 간 차이 (A-B)	5.8	8.1	10.3	11.7

자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3년도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성과분석'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 중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하는' 응답자는 64.4%, '고려하지 않는' 응답자는 35.6%로 나타났는데,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로 '낮은 연봉수

준'(55.3%)이 가장 높았음.[22]

동 제도를 지속 시행함으로써, 경영성과급을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경영성과급 지급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 직원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2022년 기준 대기업 평균소득은 591만원으로, 중소기업 평균소득(286만원)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대기업 평균소득은 전년대비 27만원 증가한 것에 비해 중소기업 평균소득은 19만원 증가한 것에 그쳤음.

[기업규모별 평균소득 및 소득분포 현황]

(단위: 만원, %)

연도	대기업	중소기업
2022년	591	286
2021년	563	266
증감(률)	27 (4.9)	19 (7.2)

자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3년도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성과분석

이와 같이 대기업-중소기업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성과급의 지급은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셋째, 세액공제율 하향조정으로 조세지출 규모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22) 중소기업중앙회, '2023년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 보고서', 2023. 11.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도의 총 세액공제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중소기업이 신고한 세액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최초로 세액공제 신고가 이루어진 2020년에 206개 기업이 33억 4,700만원의 세액공제를 신고했고, 신고법인수와 신고금액이 증가하여 2022년에는 435개 기업이 62억 3,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청했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2020년		2021년		2022년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206	3,347	308	4,593	435	6,231

자료: 국세통계포털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최근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정한 성과공유 기업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세액공제율을 하향조정하면 성과공유 기업이 추가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성과공유기업은 2019년 1,275개사에서 2022년 2,928개사로 증가하였는데, 2023년에는 전년대비 317개사 감소하여 2,611개사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영성과급 지급 성과공유기업 현황]

(단위: 개사)

연도	'19	'20	'21	'22	'23
경영성과급 지급 성과공유기업 수*	1,275	1,489	2,138	2,928	2,611

* 실제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기업 및 지급을 약정한 기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조세지출 평가 및 건의서

최근 고물가 및 경기위축 등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동 제도의 공제율이 축소되면 경영성과급 지급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이전보다 커져 경영성과급 지급을 중단하는 기업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음.

둘째, 세액공제율 하향조정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업의 재정부담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과공유제 중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재정부담'으로 나타났음.

[경영성과급 지급 애로사항]

(단위: %)

구분	재정부담	인센티브 부족	복잡한 서류 및 행정절차	노·사 합의된 성과목표 설정	직원평가 지표설정	제도 효과성 불확실	직원 협업감소	세금부담	기타
응답 비율	50.4	18.4	11.1	5.7	9.8	2.9	0.4	0.0	1.2

자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현황과 발전과제", 2021. 4

2022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세액공제 1,432만원을 신고했는데 공제율이 15%에서 10%로 하향조정되면 세부담이 약 477만원 늘어남.

□ 한편,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안마다 3년 또는 5년의 기간을 제안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다.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특례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19조제2항)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 -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및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외	○ (현행과 같음)
○ 감면내용: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4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 2027년 12월 31일(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2029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

* 윤준병의원안 2024. 8. 22. 제출(의안번호 3085),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75)

□ 3건의 개정안은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하여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정부안과 정태호의원안은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려는 것이고, 윤준병의원안은 5년 연장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려는 것임.

□ 3건의 개정안과 같이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유지되면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어,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유지되므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 향상'이라는 성과공유제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소득세액 계산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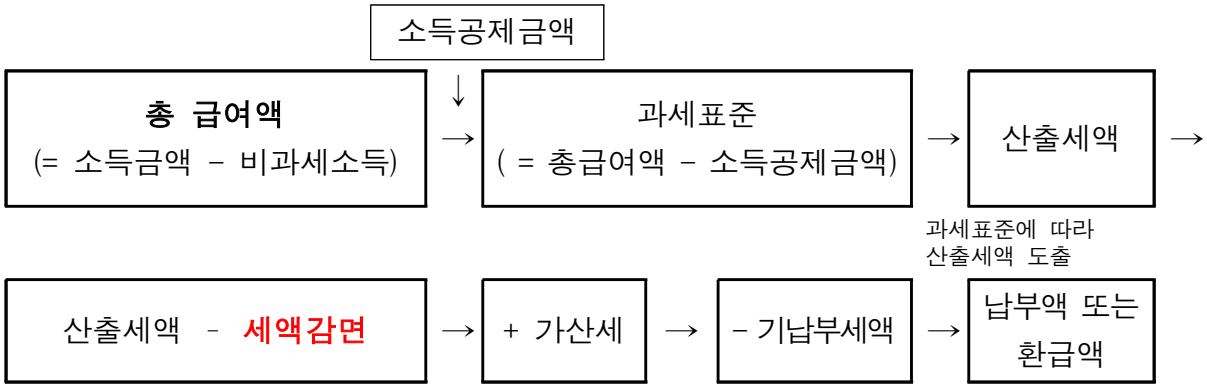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기업(591만원)과 중소기업(286만원) 간 평균소득 격차는 305만원[23]으로, 동 제도의 연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평균소득 격차를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특례제도를 연장하는 3건의 개정안이 입법화되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또는 우수인력의 취업 또는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1년 기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에 대하여 "있다"는 답변이 62.5%, "없다"는 답변이 37.5%이며, 없다고 답변한 경우

23)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통계청, 2024. 2.

그 이유에 대하여 '낮은 급여수준' 외에도 '고용불안정',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수준',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없음' 등의 순으로 답변한 것으로 조사[24]되었음.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2021년 기준)]

(단위: %)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이 부재	고용 불안정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낮은 급여 수준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없음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 수준	기타
8.4	5.0	23.1	8.6	23.3	1.1	11.1	17.0	2.2

주: 사례수 772명 기준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편,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안마다 3년 또는 5년의 기간을 제안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24)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기초분석보고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 의 처
02)6788-5155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및 납입기간 단축 등 (엄태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제29조의6)	□ 적용기한 연장 등
○ 감면대상: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함)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수령한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감면대상: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함)의 공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수령한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감면요건: 성과보상기금에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한 근로자	○ 감면요건: 성과보상기금에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한 근로자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감면내용: 기업의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소득세의 비율별 감면 - (청 년) 중소기업 근로자: 90% 중견기업 근로자: 50% - (그 외) 중소기업 근로자: 50% 중견기업 근로자: 30%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4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김주영의원안) - 2027년 12월 31일(엄태영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2029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

* 엄태영의원안 2024. 8. 1. 제출(의안번호 2496), 윤준병의원안 2024. 8. 22. 제출(의안번호 3085), 한병도의원안 2024. 9. 4. 제출(의안번호, 3661), 김주영의원안 2024. 10. 24. 제출(의안번호 4868),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75)

□ 6건의 개정안은 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한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②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3년 이상 납입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③ 동 특례를 적용받는 공제사업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김주영의원안은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엄태영·한병도·정태호의원안과 정부안은 3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윤준병의원안은 5년 연장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정부안과 정태호의원안의 경우 공제납입금의 최소 납입기한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면서 동 특례를 적용받는 공제사업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25]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26]의 유형 중 하나로서,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일

2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6)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수준 또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법으로 정한 성과공유 유형(성과급, 성과보상공제사업, 임금수준의 상승, 우리사주제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주식매수선택권, 기타) 중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성과를 나누는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우대 및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출처: 2023년도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성과분석, 2023. 12.,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 기간 이상 근속 시 근로자와 기업이 미리 납입·기여하여 형성한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4년에 최초 도입되었음.

현행 소득세 감면규정은 2015년 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는데, 이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통상 '내일채움공제'라 불리움)에 따른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수령액은 최소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 되고, 수령한 공제금 중 근로자가 납부했던 납입금과 기업의 기여금을 제외한 부분은 14%의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반면[27],

기업의 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라[28] 기존의 월급과 함께 종합소득으로 과세(세율 6%~45%)되어 때로는 당초 적립금액보다 실수령이 작게 되는 등 당초의 공제금 지급 취지가 퇴색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임.

동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재직자 중 해당 기업의 대표에 의해 지정된 인력(이하 "핵심인력")이 해당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으로 1:2 이상[29]의 비율로 공제금을 적립한 후,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경우 5년간 최소 2천만원 이상의 공제금과 이자액을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핵심인력 내

---

27)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28) 「소득세법」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29) 예를 들어 핵심인력이 10만원을 납입하면, 사업주가 20만원 이상을 납입하여야 함.

일채움공제'만 운영되었으나,

2018년부터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정규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당 청년과 기업, 정부가 최소 월 12만원 : 월20만원 : 월30만원의 비율로 5년간(정부는 3년간) 공제금을 적립한 후 그 공제금 3,000만원과 이자액을 지급하는 '청년근로자 내일채움공제'가 추가되어 2022년까지 운영되었고, 2023년에는 한시적으로 제조업·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근로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가 운영되었음.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의 유형]

구분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대상	근로자	핵심인력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근로자	6개월 이상 재직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
	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50인 미만의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
요건		해당 기업의 대표가 지정한 인력	청년(만15세~34세)	
가입기간		5년	5년	3년
납입비율		1 : 2 이상 (근로자 : 기업)	월12만원 : 월20만원 : 정액 7회 (근로자 : 기업 : 정부)	월16.7만원 : 월16.7만원 : 정액 6회 (근로자 : 기업 : 정부)
적립금액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1,800만원 이상
운영기간		2014년 8월~	2018~2022년	2023년(한시사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따른 2023년도 감면세액은 38억원이며, 2025년 17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세지출 규모[30]]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망)	2025 (전망)
조세지출	-	8	29	31	38	157	170

자료: 각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30) 동 특례의 경우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가입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까지는 공제금 수령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조세지출도 없었음.

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엄태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6건의 개정안은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한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김주영의원안은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엄태영·한병도·정태호의원안과 정부안은 3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윤준병의원안은 5년 연장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 6건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제도의 지원을 연장하여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또는 중소·중견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평균소득은 대기업 597만원, 중소기업 286만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소득 증가율은 중소기업 7.2%로 대기업 4.9%보다 많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31].

31)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결과」(통계청). 2024. 2.27.

[기업규모별 평균소득]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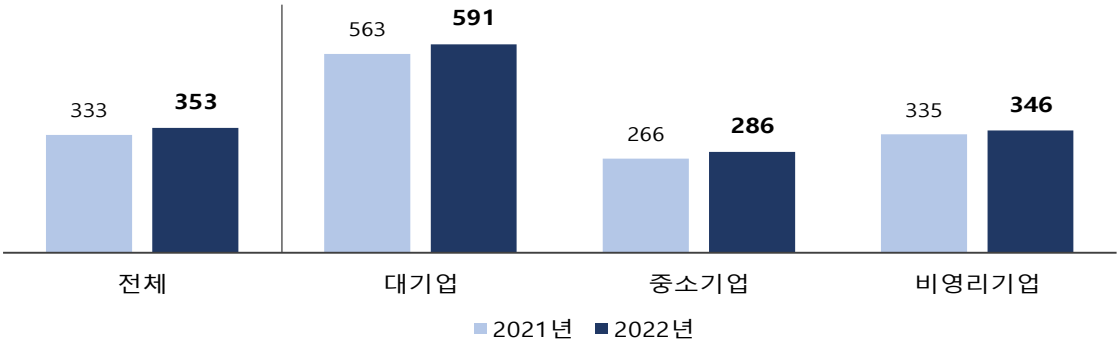

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종업원 수 1~4인 기업의 경우 2,471천원인데 반해 300인 이상 기업은 6,071천원으로, 종업원 수 1~4인 기업과 300인 이상 기업 간 1인당 월평균 임금의 차이가 3,600천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3년 2,763천원과 비교시 증가한 것이며, 기업의 규모에 따른 소득 차이도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기업 규모별(종업원 수 기준) 1인당 월평균 임금 추이]

(단위 : 천원)

구분	1~4인 (A)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B)	차이 (B-A)
2013년	1,684	2,219	2,625	3,007	3,381	4,447	2,763
2023년	2,471	3,241	3,728	4,073	4,610	6,071	3,60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24. 8

둘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자 하는 당초 공제제도의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어 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3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평균재직기간은 52.1개월로 공제 미가입자(18.0개월) 대비 2.9.배 오래 재직하였고,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평균재직기간은 52.8개월로 공제 미가입자(19.2개월) 대비 2.74배 오래 재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청년재직자 및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등 평균재직기간]

(단위: 개월)

청년재직자					핵심인력				
공제가입자			미가입자(B)	장기재직효과(A/B)	공제가입자			미가입자(B)	장기재직효과(A/B)
전체(A)	유지	해지			전체(A)	유지	해지		
52.1	55.4	42.6	18.0	29.0	52.8	56.6	47.4	19.2	2.7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다만, 동 특례제도를 연장하는 개정안이 입법화되더라도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취업유도 또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목돈형성 및 장기재직 유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33],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의 연차별 해지율을 살펴보면 가입 초반인 1년차(12.1%) 및 2년차(11.5%) 해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32) 「내일채움공제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수립 연구」(2022.12.),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3) 「내일채움공제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수립 연구」(2022.12.),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한편,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안마다 3년 또는 5년의 기간을 제안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60

나. 납입기간의 단축(5년→3년) 등(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2건의 개정안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3년 이상 납입하는 것으로 납입기간을 단축시키는 한편, 동 특례를 적용받는 공제사업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자산형성과 장기재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으나, 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5년간 가입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의 적정 가입기간에 대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 3년(기업 55.0%, 근로자 72.8%)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34].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15~34세)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2년 2개월로 조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35], 동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34) 「내일채움공제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2023.1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5)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2024.7.16.). 통계청

[청년층의 첫 직장 근속기간]

(단위: 천명, %, %p)

구분	취업 경험자	임금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첫 직장 그만둔 경우	첫 직장 계속 다니는 경우		첫 직장 그만둔 경우	첫 직장 계속 다니는 경우
2023. 5	7,193	6,996 (100.0)	5,057 (72.3)	1,939 (27.7)	2년1.5개월	1년7.2개월	3년6.0개월
2024. 5	7,094	6,893 (100.0)	4,922 (71.4)	1,971 (28.6)	2년2.0개월	1년6.9개월	3년8.0개월
증감	-99	-103 (0.0)	-135 (-0.9)	32 (0.9)	0.5개월	-0.3개월	2.0개월

자료: 통계청

□ 다만, 2건의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납입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므로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취업 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자산형성 및 장기재직 유도라는 당초의 정책 취지가 다소 퇴색될 우려가 있음.

둘째, 2건의 개정안은 특례를 적용받는 공제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으나[36], 대통령령에

36)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 공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 3년----------

서 규정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예측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그 위임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160

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4.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및 특별재난지역,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 기부에 대한 우대 적용(한병도의원안, 황명선의원안, 정성호의원안, 이해식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제58조)

o 세액공제 규모

- 기부금 금액별 공제율

<table>
<tr><th>기부금 규모</th><th>공제금액</th></tr>
<tr><td>10만원 이하</td><td>기부금 × 100/110</td></tr>
<tr><td>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td><td>10만원 × 100/110 + (기부금 - 10만원) × 15/100</td></tr>
</table>

- <신 설>

- <신 설>

</td><td>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o 세액공제 규모

- 기부금 금액별 공제율

<table>
<tr><th>정부안
정태호·
이해식
의원안</th><th>황명선
의원안</th><th>한병도
의원안</th><th>최은석
의원안</th></tr>
<tr><td>~10만원: 100/110</td><td>~30만원: 100/110</td><td>~20만원: 100/110</td><td>~50만원: 100/110</td></tr>
<tr><td>10만원 ~ 2천만원: 15/100</td><td>30만원 ~ 5백만원: 15/100</td><td>20만원 ~ 5백만원: 30/100</td><td>50만원 ~ 1천만원: 20/100</td></tr>
<tr><td></td><td></td><td>5백만원 ~ 2천만원: 15/100</td><td>1천만원 ~ 2천만원: 15/100</td></tr>
</table>

- 특별재난지역 지방자치단체 기부 시

<table>
<tr><th>정성호의원안</th><th>이해식의원안</th><th>한병도의원안</th></tr>
<tr><td>~20만원: 100/110</td><td>~20만원: 100/110</td><td>~30만원: 100/110</td></tr>
<tr><td>20만원 ~5백만원: 15/100</td><td>20만원 ~ 2천만원: 15/100</td><td>30만원 ~ 5백만원: 30/100</td></tr>
<tr><td></td><td></td><td>5백만원 ~ 2천만원: 15/100</td></tr>
</table>

-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 기부 시

<table>
<tr><th>이만희의원안</th></tr>
<tr><td>~20만원: 100/110</td></tr>
<tr><td>20만원~5백만원: 15/100</td></tr>
</table>

</td></tr>
</table>

* 한병도의원안 2024. 7. 15. 제출(의안번호 1727), 황명선의원안 2024. 7. 17. 제출(의안번호 1847), 정성호의원안 2024. 7. 17. 제출(의안번호 1856), 이해식의원안 2024. 7. 31 제출.(의안번호 2435), 최은석의원안 2024. 8. 2. 제출(의안번호 2539), 이만희의원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429),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75)

□ 8건의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를 장려하고, 특별재난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부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일반 지방자치단체 기부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방자치단체 기부 시				인구감소지역 기부 시
정부안 정태호 이해식 의원안	황명선 의원안	한병도 의원안	최은석 의원안	정성호 의원안	이해식 의원안	한병도 의원안	이만희 의원안
~10만원: 100/110	~30만원: 100/110	~20만원: 100/110	~50만원: 100/110	~20만원: 100/110	~20만원: 100/110	~30만원: 100/110	~20만원: 100/110
10만원 ~ 2천만원: 15/100	30만원 ~ 5백만원: 15/100	20만원 ~ 5백만원: 30/100	50만원 ~ 1천만원: 20/100	20만원 ~5백만원: 15/100	20만원 ~ 2천만원: 15/100	30만원 ~ 5백만원: 30/100	20만원 ~5백만원: 15/100
		5백만원 ~ 2천만원: 15/100	1천만원 ~ 2천만원: 15/100			5백만원 ~ 2천만원: 15/100	

* 현행법: 10만원 이하: 기부금 × 100/110,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10만원 × 100/110 + (기부금 - 10만원) × 15/100

한병도의원안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액을 현행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면서, 110분의 10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37] 기부금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2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구간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 대하여는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 금액 구간을 30만원 이하로 우대하도록 하려는 것임.

37) 국세 세액공제액(10만원 이하분의 경우 110분의 100)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국세·지방세 세액공제액을 합하면 기부액이 전액 공제됨.

황명선의원안은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안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 대하여는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 금액 구간을 일반 지방자치단체 기부보다 우대하여 20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안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액을 현행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면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 대하여는 정성호의원안과 같이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 금액 구간을 일반 지방자치단체 기부보다 우대하여 20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최은석의원안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액을 현행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 금액 구간은 5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50만원 초과 1천만원 구간에 대하여는 공제율을 20%로 상향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 대하여는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 금액 구간을 일반 지방자치단체 기부보다 우대하여 20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정부안과 정태호의원안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액만 현행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 도입되었으며, 현행법은 거주자가 광역·기초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91%(110분의 100)[38],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2024년 2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39]의 개정으로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이 현행 500만원에서 2025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확대됨.

□ 8건의 개정안은 ① 일반적인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의 필요성과 ②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③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의 세액공제 우대 필요성으로 나누어 검토될 수 있음.

---

38) 국세 세액공제액(10만원 이하분의 경우 110분의 100)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국세·지방세 세액공제액을 합하면 기부액이 전액 공제됨.

3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14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ㆍ신용카드ㆍ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먼저, 고향사랑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40] 기부금 금액 구간의 확대, 공제율 상향, 공제대상 기부금 한도 확대)하는 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에 다소나마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평균 76% : 24%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향사랑 기부의 활성화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 보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임.

[국세 및 지방세 비중]

(단위: 조원,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조세	377.9	383.9	387.6	456.9	514.5	2,120.8
국세	293.6	293.5	285.5	344.1	395.9	1,612.6
(국세 비중,%)	77.7	76.4	73.7	75.3	77.0	**76.0**
지방세	84.3	90.5	102.0	112.8	118.6	508.2
(지방세 비중,%)	22.3	23.6	26.3	24.7	23.0	**24.0**

자료: 국세청.관세청「징수보고서」, 행정안전부「지방세통계연감」

40) 국세 세액공제액(10만원 이하분의 경우 110분의 100)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국세·지방세 세액공제액을 합하면 기부액이 전액 공제됨.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추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지방재정자립도	45.2	43.6	45.3	45.0	43.3

재정자립도=(지방세 + 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X 100(%)
자료: 통계청

특히, 거주자가 기부한 금액을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구간을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상향하는 안(20만원, 30만원, 50만원)의 경우 그 상향규모에 비례하여 소액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41]에서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부자에게 기부액의 30%의 범위에서 지역특산품, 지역 상품권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부자 입장에서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간까지는 세액공제를 통해 경제적 손실 없이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임.

둘째, 공제대상 기부금액 한도를 확대하는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세법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음.

2024년 2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42]의 개정으로 연간

4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개인별로 기부할 수 있는 상한액이 현행 500만원에서 2025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대상 기부금액 한도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고액기부를 유인할 수 있다는 것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2년 8월에 실시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43] 결과에 따르면, 0.8%만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제혜택 등 유인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희망 금액]

(단위: %)

기부의사 없음	~10만원	10만원 ~20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500만원
24.7	45.9	19.9	6.5	2.2	0.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셋째, 공제율을 인상하는 안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44] 공제율과 형평을 맞추는 측면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조세특례제한법」[45]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초과, 500

4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14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신용카드·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 국승용·김창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동 설문조사는 2022년 8월, 18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44)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만원 이하 기부금 부분에 대하여 1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46]에 따른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의 경우 1천만원 이하 분에 대하여는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30%를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를 2,000만원까지로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기부에 대하여는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야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공제율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됨.

□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시행된 지 이제 1년 된 제도로 아직 그 정책적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추후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후 필요한 측면이 있음.

둘째, 현행 법령상 기부금을 전액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는 정치자금 기부금[47]과 고향사랑 기부금에만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소액기

---

45)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

46)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하 생략)

부 부분에만 한정하여 운용하는 특별한 세제지원이라는 점에서, 이를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셋째, 고향사랑 기부금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효과 외에 답례품 등의 운영비 지출이 수반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체 재정 차원에서는 순지출이 발생하여 재정자원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구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점이 있음.

(2)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우대

□ 다음,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를 확대하는 개정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고향사랑 기부를 유인하여 피해 복구 지원을 도모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점이 있음.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는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자체별 재정력지수를 감안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선포하게 됨.

---

47)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선포요건 검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선포 건의		선포
지역본부장 요청 중앙본부장 인정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여부 심의 (위원장 : 국무총리)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중앙본부장→대통령)	➡	대통령 재가

자료: 행정안전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지자체 부담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며,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 감면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48].

이러한 국고의 지원은 피해금액이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지수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49]에 이루어지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의 경우 통상 인적·물적 피해가 심대하여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금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고향사랑기부금 확대를 통한 지원이 피해복구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49)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①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의 피해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20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군·구: 26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군·구: 32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군·구: 38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군·구: 44억원

것으로 보임.

□ 다만, 국비를 지방비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고향사랑 기부금 확대는 피해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지방비 지원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우대

□ 인구감소지역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공제액의 규모를 확대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고향사랑 기부금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보다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도입 당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50] 결과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관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41.3%) 외에,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지방자치단체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33.0%, '중소도시를 포함하여 도시지역은 기부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8.4%, '특별·광역시 등 대

50) 국승용 , 김창호. (2022).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도시는 기부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17.3%로 나타나, 모금 지방자치단체를 선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게 나타난 바 있음.

둘째,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지표 중 하나가 재정자립도[51] 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소액기부를 촉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재정을 강화하고 지방 간 격차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시행된 지 이제 1년 된 제도로 아직 그 정책적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추후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후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인구감소지역 외에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 세액공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게 되므로 해당 지역들의 추가적인 지원요청이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부산광역시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11.1%로 동 지역에 포함된 동구(17.3%), 서구(13.6%)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낮음.

51) 연평균인구증감율,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셋째, 인구감소지역은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 5년마다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52] 지정 주기마다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었다가 제외되는 지자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차이는 지자체가 장기적인 모금 계획과 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61

52)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부칙
제2조(인구감소지역의 지정주기) 고시일로부터 5년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세제지원 강화

가. 개요

□ 중소기업중앙회는 2007년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를 관리·운영하고 있음.

소기업·소상공인 범위[53]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월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폐업, 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음.

2007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 이후 2024년 9월까지 누적 가입자 수는 291만명이고, 누적 공제부금은 37조 6,990억원이며, 8조 1,224억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및 공제금 지급 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9월)	누 계 ('07년 이후)
가입자수	237,167	274,094	288,570	266,990	242,875	195,611	2,909,561
공제부금	33,258	37,857	44,150	50,398	53,623	42,885	376,990
공제지급건수	77,411	84,459	99,388	97,850	119,626	95,253	810,139
공제지급액	6,572	7,900	9,981	11,534	15,517	13,658	81,224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53) 소기업: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5명~10명 미만

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정부안, 정태호의원안, 박수영의원안)

<table>
<tr><th>현 행</th><th>정부안, 정태호의원안</th><th>박수영의원안</th></tr>
<tr>
<td>□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공제부금 납입한도 :
- 분기별 300만원 (연 1,200만원)
*시행령 규정사항

○ 공제적용 소득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근로소득

○ 소득공제 한도
<table>
<tr><th>사업(근로) 소득금액</th><th>공제한도</th></tr>
<tr><td>4천만원 이하</td><td>500만원</td></tr>
<tr><td>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td>300만원</td></tr>
<tr><td>1억원 초과</td><td>200만원</td></tr>
</table>
</td>
<td>□ 법인대표자 소득공제 요건 완화 및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공제부금 납입한도 : (현행과 같음)

○ 공제적용 소득
- 개인사업자: (현행과 같음)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근로소득

○ 소득공제 한도
<table>
<tr><th>사업(근로) 소득금액</th><th>공제한도</th></tr>
<tr><td>4천만원 이하</td><td>600만원</td></tr>
<tr><td>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td>400만원</td></tr>
<tr><td>1억원 초과</td><td>200만원</td></tr>
</table>
</td>
<td>□ 소득금액 구간 확대 및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공제부금 납입한도 : (현행과 같음)

○ 공제적용 소득
- 개인사업자: (현행과 같음)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근로소득

○ 소득공제 한도
<table>
<tr><th>사업(근로) 소득금액</th><th>공제한도</th></tr>
<tr><td>6천만원 이하</td><td>900만원</td></tr>
<tr><td>6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td><td>600만원</td></tr>
<tr><td>1.5억원 초과</td><td>300만원</td></tr>
</table>
</td>
</tr>
</table>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75), 박수영의원안 2024. 10. 31. 제출(의안번호 5133)

□ 3건의 개정안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정부안과 정태호의원안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고, 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

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며,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임.

박수영의원안은 현행법상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로 나누어진 소득금액 구간을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억 5천만원 초과” 구간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한도를 기존의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에서 “900만원, 600만원,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86조의3[54]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법인의 대표자가 납부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 수준별로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에 대비하여 스스로 자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3건의 개정안은 높은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소득금액 구간의 확대, 공제한도의 상향조정 및 전체 가입자의 4.3%에 해당하는 법인 대

5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까지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공제한도 상향 및 법인 대표자 공제기준 완화 등을 통해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일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계속된 고금리·고물가와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폐업자 수는 2022년 867,292명에서 2023년 986,487명으로 약 12만명이 증가하였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사업부진에 따른 폐업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폐업현황]

(단위: 명, %)

구분	총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폐업자 수	사업부진으로 인해 폐업한 비중	폐업자 수	사업부진으로 인해 폐업한 비중	폐업자 수	사업부진으로 인해 폐업한 비중
2019년	922,159명	41.4%	526,377명	40.8%	69,587명	40.1%
2020년	895,379명	43.1%	490,189명	43.2%	67,547명	43.5%
2021년	885,173명	45.6%	456,839명	45.1%	65,983명	43.6%
2022년	867,292명	46.8%	438,023명	45.9%	37,656명	78.1%
2023년	986,487명	48.9%	499,677명	47.8%	75,668명	44.6%

주: 폐업사유로는 사업부진 외에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적용, 양도·양수, 해산·합병 등이 있음
자료: 각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이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중 폐업공제금 지급액 역시 2019년 6,142억원에서 2023년 1조 2,600억원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24년말 공제금 지급건수가 11만건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러한 폐업자 수 및 폐업공제금 지급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할 때, 공제한도 상향 등을 통해 공제부금의 추가 납입을 장려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폐업공제금 지급 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
공제지급건수	75,493	81,897	95,463	91,130	110,015	86,466
공제지급액	6,142	7,283	9,040	9,682	12,600	10,945

자료: 기획재정부

둘째, 개정안은 최근 신규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에 대한 가입 유인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 증가세가 둔화되어 2023년도에는 신규 가입자가 전년대비 9% 감소하였고, 중도해지 건수는 61% 증가하였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및 공제금 지급 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9월)	누 계 ('07년 이후)
가입자수	237,167	274,094	288,570	266,990	242,875	195,611	2,909,561
공제부금	33,258	37,857	44,150	50,398	53,623	42,885	376,990
공제지급건수	77,411	84,459	99,388	97,850	119,626	95,253	810,139
공제지급액	6,572	7,900	9,981	11,534	15,517	13,658	81,224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2007년 제도 출범 당시 300만원으로 설정한 이후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현행법과 같이 소득금액 별로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추가적인 공제구간의 조정이나 공제한도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중소기업중앙회는 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007년 제도 신설 당시와 동일하게 300만원 한도를 적용받고 있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혜택은 감소하고 있다는 의견임.

또한,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노란우산 제도확산을 위한 가입자 설문조사” 결과 가장 추가되었으면 하는 혜택으로 “소득공제 상향, 비과세 등 세제지원 확대(30.4%)”가 선정되었고,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정책으로 세제지원(51.9%)이 자금지원(71.8%)을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때 공제한도를 확대할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가입자 수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할 경우 저축이 증가하여 중장기적으로 자영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소요되는 사회복지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022년 기준 소상공인의 59.3%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부채액은 평균 1억 8,5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소기업·소상공

인 공제한도는 최대 연 500만원에 불과하여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55].

또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공제한도인 200만원 또는 300만원은 임금근로자의 퇴직소득으로 적립되는 연평균 퇴직급여 635만원 대비 31.5% 또는 47.2%에 불과하므로[56]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활성화를 통하여 자영업자의 노후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먼저 공제구간 조정 및 공제한도 상향과 관련하여, 납입한도의 상향에 따른 혜택이 공제부금의 추가 납부 여력이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집중될 여지가 있음.

2022년 기준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가입자 1인당 평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액은 249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257만원의 공제를 적용받고 있고, 1억원 초과 가입자의 경우 1인당 평균 공제액이 199만원으로 거의 대부분이 공제한도(200만원)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2년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원)

구 분	공제대상 인원	비율	공제대상 금액	비율	1인당 평균 공제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895,417	67.2%	2,226,259	68.4%	**249만원**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79,285	21.0%	717,029	22.0%	**257만원**	300만원

55)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 중소벤처기업부, 2024. 9.

56) 2022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고용노동부, 2023. 12.

구 분	공제대상 인원	비율	공제대상 금액	비율	1인당 평균 공제액	공제한도
1억원 초과	156,819	11.8%	312,017	9.6%	**199만원**	200만원
총계 및 평균	1,331,521	100.0%	3255305	100.0%	245만원	-

자료: 국세통계포털

또한,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한도 적용비율을 살펴보면 사업소득 금액 1억원 초과 가입자의 85% 이상이 공제한도를 적용받고 있는 반면,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비율이 10%를 조금 상회하고 있는 실정임.

[공제한도 적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사업소득금액 (한도)	소득공제 적용인원(A)	공제한도 적용인원(B)	한도적용비율 (B/A)
2021년 귀속	4천만원 이하 (500만원)	918,834	112,338	**12.23%**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92,111	126,183	**65.68%**
	1억원 초과 (200만원)	102,663	87,406	**85.14%**
	총계	1,213,608	325,927	26.86%
2022년 귀속	4천만원 이하 (500만원)	1,005,662	140,974	**14.02%**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211,070	138,579	**65.66%**
	1억원 초과 (200만원)	114,789	98,450	**85.77%**
	총계	1,331,521	378,003	28.39%

자료: 국세청

소득구간별 1인당 평균 공제액 및 한도적용비율을 고려할 때 박수영의원안과 같이 전체적인 공제한도 상향과 더불어 높은 공제한도에 직면하는 구간을 확대할 경우 대부분의 혜택은 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소득금액이 1억원에 가까운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

정부안과 정태호의원안과 같이 4천만원 이하 구간과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의 공제한도만 상향하더라도 추가적인 공제한도 상향에 따른 혜택은 소득금액이 1억원에 가까운 자영업자에게만 집중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이 매년 상승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조세감면액은 2018년 2,179억원에서 2023년 3,653억원으로 약 1.7배 증가하였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이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가입대상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매년 172억원의 추가 세수감이 예상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조세감면액	2,179	2,543	2,770	2,950	3,285	3,653	3,812	4,065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다음으로 법인 대표자의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법인 대표자의 소득기준

을 설정한 제도의 연혁과 함께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007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 당시 납입한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연 300만원 한도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특례규정을 함께 마련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는 창출하는 소득의 성격과 소득금액의 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았음.

이후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에 가입하여 근로소득 공제를 받는 것은 제도의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공제대상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으로 변경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개인사업자로 한정하였음.

그러나 소규모 법인사업체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체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2015년 세법개정을 통해 법인의 대표자를 소득공제 대상에 다시 추가하였으나, 법인의 대표는 근로소득자로서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 가입대상을 한정하였음.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연혁]

<table>
<tr><th>구분</th><th>2007년
세법개정</th><th>2014년
세법개정</th><th>2015년
세법개정</th><th>2016년
세법개정</th></tr>
<tr><td rowspan="2">공제
대상</td><td colspan="4">개인사업자</td></tr>
<tr><td>법인
대표자</td><td>-</td><td colspan="2">총급여액 <u>7천만원</u> 이하의 법인대표자</td></tr>
<tr><td>공제
한도</td><td colspan="3">300만원</td><td>
<table>
<tr><th>소득금액</th><th>공제한도</th></tr>
<tr><td>4천만원 이하</td><td>500만원</td></tr>
<tr><td>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td>300만원</td></tr>
<tr><td>1억원 초과</td><td>200만원</td></tr>
</table>
</td></tr>
</table>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설정한 법인 대표자의 급여기준 7천만원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1천만원 상향조정하였다는 입장인데, 2015년 조세소위원회 당시 기획재정부는 법인의 대표는 근로소득자로서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취지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폐업 등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자와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에게 동일한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6.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문진석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문진석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87조제2항)	□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 적용대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적용대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적용대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공제대상: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	○ 공제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율: 40%	○ 공제율: (현행과 같음)	○ 공제율: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현행과 같음)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제87조제3항)	□ (현행과 같음)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적용대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6백만원(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적용대상: (현행과 같음)	○ 적용대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6백만원(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연령요건: 가입 당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연령요건: 가입 당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의무가입기간: 2년	○ 의무가입기간: (현행과 같음)	○ 의무가입기간: (현행과 같음)
○ 특례내용: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연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	○ 특례내용: (현행과 같음)	○ 특례내용: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현행과 같음)

* 문진석의원안 2024. 8. 23. 제출(의안번호 3130),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75)

□ 3건의 개정안은 무주택 결혼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문진석의원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이고,

정부안 및 정태호의원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57]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줌으로써 무주택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임. 동 제도의 납입한도는 연간 300만원이고,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같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58]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까지

57)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됨

58)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800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공제한도액)[59]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이루어짐.

□ 한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산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달리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연령요건(만 19세~34세), 소득요건(연 3천6백만원[60]),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입이 허용됨.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중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

59)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하 이 항에서 “고정금리”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하 이 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2천만원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600만원

60)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2월 출시한 청년주택드림청약의 경우 가입자격 중 소득요건을 연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였음

이 2천6백만원인 자가 2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백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연 납입금액 6백만원 한도)을 적용받게 됨[61].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계좌 수는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 약 2,549만 계좌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현황]

(단위: 좌)

연도	2018. 7.	2019. 7.	2020. 7.	2021. 7.	2022. 7.	2023. 7.	2024. 7.
계좌 수	22,007,046	23,268,991	24,844,321	26,425,730	27,019,253	25,837,293	25,489,863

자료: 한국부동산원(청약Home)

□ 개정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현행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가 기대됨.

첫째, 무주택·저소득 결혼가구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확대 및 가처분소득 증가를 통해 가입자의 주택 구입을 위한 재산 형성에

---

6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⑭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는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저축 가입을 유도하여 분양 신청을 위한 요건을 갖추도록 장려하고 세제혜택 부여를 통한 가처분소득 증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세제지원 대상에 세대주가 아닌 기혼자를 추가할 경우 기존 가입자의 세후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세제 지원 확대에 따라 새롭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인원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2023년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62]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3%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공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고, 절반 이상이 본 조세특례 제도가 재산 형성 및 주택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을 참고할 때 가입자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2년 기준 신혼부부가구의 자가점유율은 43.6%로 일반가구(57.5%)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결혼가구의 가처분소득 증대 및 청약자격 충족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62) 기획재정부·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3년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2023. 9.

[가구 유형별 자가점유율 비교]

구 분	청년가구	신혼부부가구	고령가구	일반가구
자가점유율	13.2%	**43.6%**	75.0%	57.5%

주: 자가점유율은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하고 청년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가구, 신혼부부가구는 혼인한지 7년 이하인 가구, 고령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가구를 지칭함
자료: 「2022년도 특성가구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2023. 12.

둘째, 결혼에 따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결혼 페널티'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상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해당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에 한정됨에 따라 결혼 이전에 각각 무주택세대주로서 세제혜택을 받던 개인이 혼인 이후 하나의 세대를 이루는 경우 세대원인 배우자는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와 그 배우자는 동일하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금을 납부할 수 있고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에게만 소득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셋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3년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63]에 따르면, 청년의 소득과 거주에 대한 불안은 출산 기피를 심화시키는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

63) 기획재정부·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3년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2023. 9.

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청년의 재산 형성 및 주택 구입 지원을 통해 소득과 거주에 대한 불안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국토연구원[64]은 전년도 집값이 1% 상승하면 이듬해 합계출산율이 0.002명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 주거 불안과 저출생 문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도출되고 있음. 이처럼 무주택 결혼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확대는 결혼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신규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의 가입자격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소득요건을 일관성 있게 규정할 필요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국토교통부는 2024년 2월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보다 우대금리가 높고 연계대출 혜택 등이 포함된 청년주택드림청약을 출시하였고,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계좌로 자동 전환됨[65].

청년주택드림청약의 경우 가입자격을 기존 연 소득 3천6백만원 이

64) 국토연구원,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2022. 12.

65)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2024dreamaccount/main.jsp)

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소득요건을 완화한 반면, 현행법 및 개정안은 이자소득 비과세요건을 근로소득 3천6백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함.

[가입자격 및 비과세 요건 비교]

구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청년주택드림청약 (2024. 2. 출시)
가입 자격	연령요건	만 19세～만 34세	좌동
	소득요건	연 3천6백만원 이하	연 5천만원 이하
	무주택요건	무주택자	좌동
비과세요건		총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	좌동
비과세한도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연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	좌동
우대금리		일반 청약통장 대비 1.5%p 우대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자료: 국토교통부

가입자의 혼선을 방지하고[66] 정부정책 간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해

66)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3항은 연령요건, 소득요건 및 최소 계약기간을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약칭하면서 해당 요건을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자격과 비과세 혜택 소득요건을 일관성 있게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둘째, 조세지출 전체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 제80조[67]에 따른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과세·감면제도를 제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국세감면액 규모]

(단위: 억원, %)

연 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국세감면액(A)	570,248	635,484	697,664	714,305	780,178
국세수입총액(B)	3,639,730	4,229,237	3,703,803	3,949,465	4,122,410
국세감면율[A/(A+B)	13.5	13.0	15.8	15.3	15.9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3	14.6	14.3	14.6	15.2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23년에 398억원의 실적을 보였으며, 2024년에는 404억원, 2025년에는 43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2.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67)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연도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295	357	414	396	401	43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0.1	0.2	0.5	2	3	3
합계	295.1	357.2	414.5	398	404	436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문 의 처
02)6788-5154

7.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요건 개선에 따른 조세특례 정비(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및 검증절차	□ 사후 검증절차 폐지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제87조제10항제3호)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소득요건: 총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	- 소득요건: (현행과 같음)
- 소득 기준연도: (원칙) 직전 과세기간 (예외) 직전연도 소득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	- 소득 기준연도:(현행과 같음)
- 사후검증: 국세청장이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소득요건 충족여부 통보	<삭 제>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91조의18제10항)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비과세 한도 및 요건 400만원: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200만원: 그 외	- 비과세 한도 및 요건: (현행과 같음)
- 소득 기준연도: (원칙) 직전 과세기간 (예외) 직전연도 소득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	- 소득 기준연도: (현행과 같음)
- (사후검증) 국세청장이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업자등에게 소득요건 충족여부 통보	<삭 제> (정부안)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75)

□ 2건의 개정안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정부안, 정태호의원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정부안) 가입 이후 국세청장이 가입자의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하여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사후검증 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청년층 또는 저소득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금융상품과 관련한 다양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음.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등[68]과 관련하여 소득요건은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3년까지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1월부터 7월 중에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우선 전전연도 소득을 토대로 가입하되 직전연도 소득이 확정되면 국세청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사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음.

□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세제 지원 혜택 및 소득요건 사후 검증절차는 다음과 같음.

먼저 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69]는 무주택세대주인 저소득 청년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발생

---

6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관련 특례의 경우 가입요건이 아닌 40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지만 논의의 편의상 다른 과세특례의 가입요건과 함께 검토함.

69)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연 납입금액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세청장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해야 함[70].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71]는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400만원 또는 200만원 한도로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한도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는 것으로,

---

70)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⑩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국세청장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가 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⑲ 법 제87조제10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도(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7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국세청장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보유자의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72].

③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73]는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의 청년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만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해 그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세청장은 저축취급기관이 가입자의 소득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통보해야 함[74].

---

7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⑨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③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당 요건을 확인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협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2. 법 제91조의18제2항제1호(다목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73)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제1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호에 따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생 략)

74)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⑧ 저축취급기관은 국세청장에게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⑨ 국세청장은 제8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입자의 가입 당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④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75]는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청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연 600만원 납입한도의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하는 것으로,

국세청장은 금융회사 등이 가입자의 소득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해당 금융회사등에 통보해야 함[76].

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77]는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청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연 840만원의 납입한도 내에서 해당 계좌에서 발생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③ 국세청장은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법 제91조의20제8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연도(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75)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1(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희망적금(이하 이 조에서 "청년희망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④ 금융회사등은 국세청장에게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가입 당시 법 제91조의2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가입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적금 가입연도(적금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금융회사등에 통보해야 한다.

77)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세청장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가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금융회사 등에게 통보하여야 함[78].

□ 그런데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5개의 저축상품[79]에 가입할 당시 가입 신청인의 소득요건인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음(현행법 제91조의24)[80].

따라서 직전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전전연도 소득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후 소득요건을 검증하여 저축 취급기관 등에 통보하는 절차가 불필요해짐.

---

78)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④ 국세청장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가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에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

80)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91조의20제1항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및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의 가입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과 관련하여 제87조제3항제1호, 제91조의18제2항제1호, 제91조의20제1항제1호, 제91조의21제1항 및 제91조의22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저축등에의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에 개정안은 국세청장의 소득요건 충족여부 사후검증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섯 종류의 소득기준 적용 특례 대상 중 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정부안, 정태호의원안)과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정부안)에 한하여 국세청장의 사후 소득요건 검증 절차를 삭제하고 있음.

사후검증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고 현재 가입이 중단된 ④ 청년희망적금[81]은 더 이상 소득요건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③ 청년형 장기펀드와 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국세청장이 소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금융회사 등에 통보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함께 삭제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③ 청년형 장기펀드의 경우 국세청장의 가입자 소득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검증의무는 저축취급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소득요건 구비여부 확인을 요청할 때에만 발생하는데, 저축취급기관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인 현행법 제91조의20제8항은 재량규정에 해당하므로 사후검증 규정이 삭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임[82].

---

81) 2022년 한시적으로 판매

8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⑧ 저축취급기관은 국세청장에게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⑨ 국세청장은 제8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입자의 가입 당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요건의 확인·통보방식이 다음연도 사후검증 방식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매월 가입신청자의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구조이므로 국세청장의 소득요건 검증근거를 존치할 필요가 있음.

가입을 원하는 자가 직전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 상품에 가입하면 국세청장이 직전연도 소득이 확정된 이후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소득요건 해당여부를 검증하여 통보하는 방식이었던 다른 4개 제도와 달리,

청년도약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매월 정해진 기간에 가입신청을 받으면 국세청에서 매월 가입자의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이를 반영하여 다른 4개 저축지원 금융상품과 달리 국세청장의 사후검증 통보기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83].

문 의 처
02)6788-5154

83) 청년도약계좌를 제외한 4개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의 경우, 국세청장의 통보기한을 가입연도가 속한 다음연도 2월 말일로 규정하고 있음.

8. 세금우대저축자료 제공요구 주체 확대(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제89조의2)	□ 세금우대저축자료 제공요구 주체
○ 세금우대저축자료 대상 특례상품 : 비과세종합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ISA,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및 청년희망적금 등	○ (현행과 같음)
○ 세금우대저축자료 제출의무자 : 특례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	○ (현행과 같음)
○ 세금우대저축자료 제출대상 :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 (현행과 같음)
○ 세금우대저축자료 제출자료 : 저축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저축 체결·해지·권리이전 내용 등	○ (현행과 같음)
○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에 관련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됨. 다만, 아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현행과 같음)
-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 (현행과 같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조사 등을 위한 경우	- (현행과 같음)
- <신 설>	- 통계청장이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을 위하여 연금계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75)

□ 2건의 개정안은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공 대상에 통계청장이 지정통계 작성 목적으로 연금계좌 자료를 「통계법」 제25조[84]에 따라

84)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

□ “세금우대저축자료”란 비과세종합저축 등 세금우대저축의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함[85].

현행법에 따라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금융회사 등)은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세금우대저축 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저축 집중기관은 통보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다음연도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함.

또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저축자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세금우대저축에 관련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지정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5)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금ㆍ공제금ㆍ해지환급금ㆍ중도인출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 지급금액과 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납입금액ㆍ인출금액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121조의35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증권, 장기주택마련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비과세종합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재형저축,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개인투자용국채,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증권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3.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4.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

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종사자에게 자료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국세청장이 이 법에 따라 저축자의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조회·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86]의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통계청장이 지정통계 작성 목적으로 연금계좌 자료를 「통계법」 제25조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연금계좌 자료를 연금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복지정책 등 수립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는 통계의 목적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

8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 8. (생략)

문 의 처
02)6788-5161

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강화

가. 개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 이하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이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으로서, 서민·중산층에 대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출시되었음.

ISA는 중개형ISA, 신탁형ISA, 일임형ISA 등 3가지 종류로 구분[87] 되는데, 중개형ISA와 신탁형ISA는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세 유형 모두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방식임.

[ISA의 종류]

구 분	중개형ISA	신탁형ISA	일임형ISA
투자가능재산	국내상장주식, 채권 등	예금, ETF, 펀드, 등	ETF, 펀드 등
투자선택여부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 선택		증권사가 포트폴리오운용
투자방법	간접투자		

87)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2. 계좌의 명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 제도 도입 시기인 2016년부터 ISA 가입의 활성화를 위해 14%의 세율[88]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도입하였는데,

제도 도입 당시 비과세 한도는 서민이 250만원, 그 밖의 가입자는 200만원이었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로 분리과세하도록 하였음.

이후 2017년 세법 개정으로 서민·농어민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2020년 세법 개정으로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19세 이상인 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고,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제도가 영구화되었음.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음.

[ISA 제도 및 과세특례 연혁]

구 분	2015년 개정	2017년 개정	2020년 개정
가입대상	19세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자		19세이상인 자
비과세한도	서민 250만원 기타 200만원	서민·농어민 400만원 기타 200만원	
일몰기한	~2018년	~2021년	제도 영구화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88) 2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며, 이를 초과한 경우 6%~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

나. ISA 납입·비과세 한도 및 가입대상 확대 등(박대출의원안, 정부안, 이강일의원안, 정태호의원안)

<table>
<tr><th>현행 및
제18634호 개정법률</th><th>박대출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th><th>이강일의원안</th></tr>
<tr>
<td>□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제91조의18)

○ 가입대상 :
-19세 이상인 자
-15세 이상으로 근로소득 있는 자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가입 제한

○ 특례내용 : 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 아래 표와 같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table><tr><th>소득액
대상</th><th>200만원 이하</th><th>200만원~400만원</th><th>400만원 초과</th></tr><tr><td>서민*
농어민</td><td colspan="2">비과세</td><td>9%
분리과세</td></tr><tr><td>일반</td><td>비과세</td><td colspan="2">9%
분리과세</td></tr><tr><td>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td><td colspan="3">(가입불가)</td></tr></table>*총 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납입한도 : 연 2천만원(이월허용), 총 한도 1억원</td>
<td>□ 일반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비과세 한도 상향
*정태호의원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명칭 현행대로 유지

○ 가입대상 :
(현행과 같음)

○ 특례내용 : 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 아래 표와 같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table><tr><th>소득액
대상</th><th>500만원 이하</th><th>500만원~1000만원</th><th>1000만원 초과</th></tr><tr><td>서민*
농어민</td><td colspan="2">비과세</td><td>9%
분리과세</td></tr><tr><td>일반</td><td>비과세</td><td colspan="2">9%
분리과세</td></tr><tr><td>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td><td colspan="3">(가입불가)</td></tr></table>*총 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납입한도 : 연 4천만원(이월허용), 총 한도 2억원
* 단,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 및 「아동복지법」 상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른 계좌</td>
<td>□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총 납입한도 상향, 비과세 한도 폐지 및 가입대상 확대

○ 가입대상 :
-19세 이상인 자
-15세 이상으로 근로소득 있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가입 가능

○ 특례내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 납입한도 : 연 2천만원(이월허용), 총 한도 3억원
* 단, 가입 첫해 최고 2억 2천만원 납입 가능</td>
</tr>
</table>

현행 및 제18634호 개정법률	박대출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이강일의원안
○ 의무가입기간 : 3년	를 해지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연간 납입한도와 무관하게 일시납입 가능(정부안·정태호의원안) ○ 의무가입기간 : (현행과 같음)	○ 의무가입기간 : (현행과 같음)

* 박대출의원안 2024. 6. 12. 제출(의안번호 390),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이강일의원안 2024. 9. 25. 제출(의안번호 4299),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75)

□ 4건의 개정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를 상향조정하거나 폐지하고, 가입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안, 정부안 및 정태호의원안은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연 2천만원(총 한도 1억원)에서 연 4천만원(총 한도 2억원)으로, 비과세한도를 현행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하려는 것이고, 박대출의원안과 정부안은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을 “일반투자형 ISA“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이강일의원안은 총 납입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현행법상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를 가입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현행 및 개정안 비교]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현 행</th><th>박대출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th><th>이강일
의원안</th></tr>
<tr><td rowspan="2">납입
한도</td><td colspan="2">연간 한도</td><td><u>2천만원</u>
(이월허용)</td><td><u>4천만원</u>
(이월허용)</td><td>2천만원
(이월허용)</td></tr>
<tr><td colspan="2">총 누적 한도</td><td><u>1억원</u></td><td><u>2억원</u></td><td><u>3억원</u></td></tr>
<tr><td rowspan="7">세제
혜택
(이자·
배당
소득)</td><td rowspan="2">일반
투자자</td><td>비과세 한도</td><td><u>200만원</u></td><td><u>500만원</u></td><td rowspan="5"><u>한도폐지</u></td></tr>
<tr><td>비과세 한도
초과시</td><td colspan="2">9% 분리과세</td></tr>
<tr><td rowspan="2">서민
농어민</td><td>비과세 한도</td><td><u>400만원</u></td><td><u>1,000만원</u></td></tr>
<tr><td>비과세 한도
초과시</td><td colspan="2">9% 분리과세</td></tr>
<tr><td rowspan="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td><td>ISA 가입</td><td colspan="2"><u>가입제한</u></td><td><u>가입허용</u></td></tr>
<tr><td>비과세 한도</td><td colspan="2">-</td><td rowspan="2"><u>한도폐지</u></td></tr>
<tr><td>비과세 한도
초과시</td><td colspan="2">-</td></tr>
</table>

□ 개정안에 대해서는 ①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를 상향조정 또는 폐지하려는 부분과, ②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ISA 가입을 허용하려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① ISA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를 상향조정 또는 폐지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ISA의 출시 목적인 국민 자산형성 지원기능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음.

ISA 가입자 수 및 가입금액은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8월 기준 가입 계좌수가 564만좌를 넘어섰고, 가입금액은 30조 2,722억원에 달함.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상향조정은 ISA를 통한 투자유인을 증가시켜 동 정책금융상품을 통한 국민의 자산형성에 보다 기여할 것이 기대됨.

< 연도별 ISA 총 가입자 수 및 가입금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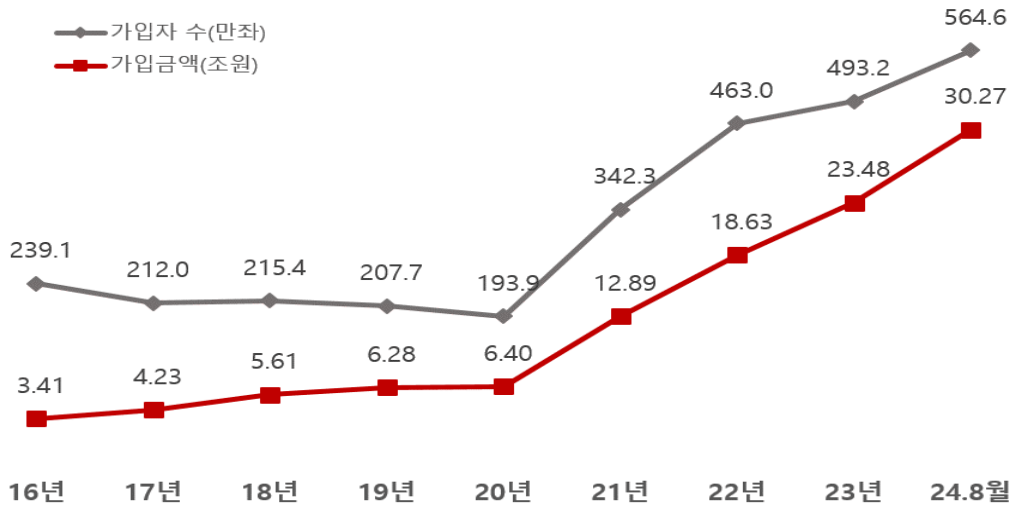

* 자료: 금융투자협회

둘째,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도모할 수 있음.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의 상향조정 또는 폐지를 통해 투자가 증가하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증가될 것이고 이는 국내 증시의 부양 및 기업 자금조달 환경의 개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최근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의 투자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개형 ISA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국내주식이 39%[89]를 차지

89) 2024년 8월말 기준

하고 있어 ISA를 통한 투자 증가는 국내 증시의 부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우리나라의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영국 ISA의 경우 연간 납입한도는 2만 파운드 수준(원화 약 3,522만원)이고 비과세한도는 없으며, 일본의 경우 연간 납입한도는 360만엔(원화 3,350만원) 수준이고 비과세한도가 따로 설정되지 않고 운영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ISA는 현재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 비과세한도는 연간 200만원~400만원인 실정임.

[국가별 ISA 제도 비교]

구 분	우리나라	영 국	일 본[90]
납입 한도	(現) 연 2천만원	연 2만 파운드 (원화 약 3,522만원)	연 360만엔 (원화 3,350만원)
비과세 한도	<일반투자형 ISA> (現) 200(서민형 400)만원→ (改) 500(서민형 1,000)만원	없 음	없 음
편입 자산	예·적금, 채권, 주식, 펀드, 파생증권 등	(예금형) 예·적금, MMF 등 (주식형) 주식, 펀드, 사채·국채	주식, 상장지수펀드, 상장지수증권, 상장리츠 등 (예·적금 X)

자료: 기획재정부

90) 참고로 일본의 경우 2024년부터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NISA)의 납입한도 등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였음.
일본의 ISA 세제지원 확대 주요내용 (新NISA, '24.1월 시행)
- 年 납입한도 : 일반형(現성장형) 120만엔 → 240만엔 / 적립형 40만엔 → 120만엔
- 총 납입한도 : 일반형(現성장형) 600만엔 → 1,200만엔 / 적립형 800만엔 → 1,800만엔
- 중복가입여부 : 일반형·적립형 중복가입 불가 → 성장형·적립형 중복가입 가능
* 적립형은 적립식 펀드만 편입 가능, 일반형(現성장형)은 주식, ETF, 리츠 주식형펀드 등 편입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인원 및 비중을 감안할 때, 한도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음.

2024년 7월 기준 ISA에 가입한 1계좌 당 평균 투자금액은 532만원이고, 누적 투자금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좌의 수는 약 1만계좌로 전체의 0.2%에 불과하여, 현재 ISA의 납입한도까지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를 상향조정하려는 개정안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아직 납입한도까지 투자하는 투자자 비율이 높지 않지만 매년 투자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에 따라 ISA에 대한 비과세한도 등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향후 가입인원과 투자금액도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임.

[ISA 가입자 및 투자현황]

(2024. 7월말 기준)

구 분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합 계
가입계좌(만좌, A)	82.0	12.5	460.7	555.1
전체 투자금액(억원, B)	132,604	9,704	153,098	295,405
1계좌당 투자금액(만원, B/A)	1,617	776	332	532

자료: 금융투자협회

[투자금액 수준별 인원]

(2024. 7월말 기준)

구 분	계좌수(만좌)	비중
1만원 이하	350	63.1%
1만원～10만원	24	4.3%
10만원～3백만원	49	8.8%
3백만원～5백만원	14	2.4%
5백만원～1천만원	23	4.2%
1천만원～2천만원	55	9.9%
2천만원～4천만원	24	4.4%
4천만원～6천만원	10	1.8%
6천만원～8천만원	5	0.9%
8천만원 초과	1	0.2%
합계	555	100.0%

자료: 금융투자협회

둘째, 개정안의 취지와 다르게 일반 투자자의 투자금액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등 정책효과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이 입법화되어 투자가 확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ISA를 통해 해외 증시 등에 대한 간접적 투자도 가능하므로 국내 증시의 수익률 등이 해외 주식에 비해 투자자산으로서 뚜렷한 강점을 보이지 않는다면 ISA를 통한 투자의 확대가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확충 및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연계되지 않을 수 있는 등 정책효과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특히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의 경우 일반계좌를 통해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 및 분배금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4%의 배당소

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ISA를 활용하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투자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셋째,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의 상향 또는 폐지의 혜택이 저축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에 집중되어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현재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가 적용되는 계좌의 수 및 비중이 크지 않고 계좌당 평균 투자금액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도 상향 또는 폐지에 따른 감세 혜택은 현행 납입한도 이상을 투자할 여력이 있거나 비과세한도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고소득자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을 것임.

또한, 비과세한도 폐지 시 서민과 농어민을 우대하기 위하여 일반 ISA와 서민·농어민형 ISA를 구분한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음.

□ 다음으로 ②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ISA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안은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공급을 증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비과세 혜택 등이 적용되는 ISA에 가입할 유인이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성향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ISA 가입 허용은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증가 및 국내 증시의 부양에 기여

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ISA 가입 허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ISA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동 정책금융상품의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ISA 제도의 목적은 비과세 혜택을 통해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서민의 자산형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ISA 가입 허용은 고소득자에게 감세효과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둘째, 이강일의원안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게 최대 3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는 과도한 조세혜택으로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인 고액 자산가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45%의 한계세율을 적용받는데[91], ISA에 가입하여 투자하는 경우 최대 3억원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91)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한계세율
~1,400만원	6%
1,400만원~ 5,000만원	15%
5,000만원~ 8,800만원	24%
8,800만원~ 1.5억원	35%
1.5억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10억원	42%
10억원~	45%

혜택을 적용받을 뿐 아니라 과세표준 중 ISA를 통해 비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다 낮은 한계세율 구간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조세 감면효과가 발생함.

문 의 처
02)6788-5154

1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정부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정부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제91조의20)	□ 적용기한 연장 등
○ 가입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직전년도 총급여 5,000만원(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현행과 같음)
○ 요건 : - 40% 이상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 - 1인당 납입액이 연 600만원 이하	○ (현행과 같음)
○ 특례내용 : -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 특례내용 :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가입일 기준) 2024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 (가입일 기준) 2025년 12월 31일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가입일 기준) 2027년 12월 31일 (김주영의원안)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김주영의원안 2024. 10. 25. 제출(의안번호 4903),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75)

□ 3건의 개정안은 동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1년(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혹은 3년(김주영의원안) 연장하려는 것임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92] 제도는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의 청년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만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

9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제1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호에 따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으로 한정)하는 사람에 대해 그 납입금액(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하는 제도로,

청년의 중장기투자 유도를 목적으로 2021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개요]

구 분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자격	연령요건	만 19세～만 34세
	소득요건	직전 연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운용	투자자산	4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
	의무가입 기간	3년 ～ 5년
혜택	소득공제	납입액의 40% 공제 (연 600만원 한도)

□ 개정안은 동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1년(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혹은 3년(김주영의원안) 연장하려는 것으로, 2021년 정기회 세법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청년형 소득공제장기펀드의 실제 상품 출시일이 상품 판매시스템 개발 지연 등으로 인해 2023년 1분기로 늦어짐에 따라 청년들이 청년형 장기펀드의 출시를 인지하고 가입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에 제도 운용 기간이 짧았음을 고려할 때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3년도 실적

은 10억원으로, 2024년도와 2025년도에는 각각 14억원, 16억원의 조세지출이 전망되고 있음.

□ 다만, 청년층의 경우 펀드 방식의 간접투자보다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93] 동 상품의 활성화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61

93) 국내 한 증권회사에서 실시한 조사(모티즌인 MZ세대의 금융플랫폼 이용행태 분석, 2022.12.26.)에 따르면
- MZ세대가 경험해 본 금융상품은 예적금·청약(84.6%), 주식(직접투자) 63.5%, 보험(연금 포함) 44.3%, 가상자산 30.8%, 펀드(간접투자) 28.4% 순으로 조사됨

11.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제91조의22)	□ 추징요건 완화
○ 가입대상 -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현행과 같음)
○ 과세특례: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 (현행과 같음)
○ 청년도약계좌 요건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1인 1계좌 보유 - 예금·적금·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저축성보험,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국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납입한도: 연 840만원 이하	○ (현행과 같음)
○ 추징: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시 비과세를 적용받은 상당세액 추징 - 추징예외 사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	○ 추징: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시 비과세를 적용받은 상당세액 추징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 (현행과 같음)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75)

□ 개정안은 2024년 초 발표된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94]에서 언급된 청년의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청년도약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은 소득세 상당액에 대해 추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완화하여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추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청년층[95]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 중이던 정책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96]"의 가입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면서 이를 대체하는 "청년도약계좌"가 2022년 정기회 심의를 거쳐 신설·도입되었고, 법 개정 이후 정부와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23년 6월부터 11개 은행[97]에서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됨.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청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가능한 5년 만기의 자유적립형 적금상품으로, 해당 계좌에 월 70만원을 한도(연 840만원)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의 지원금(매월 납입액의 최대 6%)이 함께 적립[98]되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해서

94)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8조를 근거로 수립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4)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3월 발표됨.

95) 19세~34세 청년(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96)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청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가능했던 2년 만기의 정책금융상품으로 연 600만원 납입한도로,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하였음.

97)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98) 소득 및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이 매칭적립됨.

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정책금융상품으로, 2024년 8월말 기준 누적 가입자는 143.8만명, 누적 중도해지자는 16.1만명임.

□ 개정안은 청년도약계좌를 5년 이상 유지한 계좌보유자에 한하여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해도 비과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청년층은 중장년 세대에 비해서 소득수준이 낮아 충분한 자산이 형성되기 어렵고, 교육·창업 등을 통해 자립기반을 구축하려는 시기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청년이 해당 계좌에 5년간 목돈을 예치하여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99].

참고로, 청년도약계좌의 전신인 청년희망적금도 2년 만기 금융상품이었음.

둘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수단으로서 제도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청년도약계좌의 높은 이자율과 정부지원금이 매칭된다는 장점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이 출시된지 1년 동안 133만명이 가입하였

개인소득		매칭대상 납입한도	매칭비율	월 기여금 한도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		

99)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 개최」(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 1.18.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18일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청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금융권과 향후 지원방향 등 논의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을 개선(3년 이상 가입 유지시 비과세 적용,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출산 추가)하는 등 가입 지원을 지속 강화 예정

고, 가입자의 90% 이상이 가입율을 유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음[100].

□ 다만,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이 단축되어, 주거비용 마련 등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당초의 제도 도입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 세대의 경우 취업난으로 인하여 학교 졸업 후 첫 취업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11.5개월로 전년 동월 대비 1.1개월이 증가하였고, 초봉이 월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 중 46.1%로 나타나는 등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101].

문 의 처
02)6788-5160

100)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 - "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 7.23.

101)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2024. 7. (*청년: 15~34세)

12.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특례(안 제91조의23)	□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 개인투자용 국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유한 사람 시행령 : 발행일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국채를 발행일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 (현행과 같음)
○ 특례내용 : 1인당 매입액 2억원 이하의 개인투자용 국채의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분리과세 적용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매입일 기준) 2024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 (매입일 기준) 2027년 12월 31일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75)

□ 2건의 개정안은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이하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1인당 매입액 2억원 이하의 개인투자용 국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특례 적용대상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매입분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매입분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국채(國債)’란 정부가 「국채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債券)으로, 현재 국고채권, 개인투자용 국채,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

택채권, 재정증권 등 5종의 국채가 발행되고 있음.

「국채법」에서는 매입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국고채권과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직접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주택도시기금법」은 국민주택채권을, 「국고금 관리법」은 재정증권의 발행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국채는 국회의 의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개시장에서 발행하고 있는데[102], 국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채의 경우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인 '국고채 전문딜러'[103][104]가 응찰금리 및 응찰금액을 제시함으로써 국채 발행물량을 낙찰받아 인수하게 되고 일반인의 경우 국고채 전문딜러를 통해 입찰하여야 하며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함[105].

이에 따라 현재 국고채의 대부분은 은행(40%)·보험(26%)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장외채권시장에서의

---

102) **「국채법」**
제5조(국채의 발행) ① 국채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② 국채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3)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고채전문딜러"라 함은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위하여 국채딜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채에 대한 투자매매업(인수업 포함)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104) 2023년 6월말 기준 국고채전문딜러는 교보증권 등 11개 증권사 및 국민은행 등 7개 은행으로 총 18개임.

105)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7조(입찰참가자) 국고채의 입찰에는 전문딜러, 예비전문딜러 및 일반인(전문딜러 및 예비전문딜러를 제외한 개인, 금융기관, 기타 법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참가할 수 있다.
제12조(일반인의 입찰 및 낙찰 방법) ① 일반인은 전문딜러를 통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② 일반인이 응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대행 전문딜러에게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계좌를 개설한 자는 그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⑤ 일반인은 응찰금리를 제출할 수 없다.

거래량을 바탕으로 추정한 개인의 국채 보유비중은 약 1.5%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106].

[경제주체별 국고채 보유비중]

구 분	은행	보험	연기금	증권	투신	기타 (개인 등)
국고채 보유비중	40%	26%	11%	12%	6%	5%

자료: 기획재정부, 「2023 국채백서」, 2024. 3.

□ 이에 정부는 국채의 수요기반을 다변화하고 일반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투자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추진하였고, 2023년 4월 국회 의결을 거쳐 일반 개인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107].

개정된 「국채법」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적인 국고채권과 달리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10년물과 20년물로 종류가 제한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전에 발행이자율을 공고할 수 있음.

또한,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는 직전월 동일 연물 국고채의 최고 낙찰금리로 하고, 개인의 수요 확대 및 투자 유인을 위하여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를 적용하는데, 가산금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자금의 수요 및 국채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106) 다만, 2021년말 기준 개인의 국고채 보유비중은 0.07%에 불과하였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112406)」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p. 90)

107) 국채법(법률 제 19327호, 2023. 5. 12. 시행)

여 매월 결정함.

[국고채권과 개인투자용 국채의 비교]

구 분	국고채권	개인투자용 국채
인수자격	국고채 전문딜러	일반인
만기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10년, 20년
금리결정	입찰에 의해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공고
가산금리	-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자금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월 결정
만기 전 매도	가능	불가능 (매입 1년후부터 중도환매 가능하지만 가산금리, 세제혜택 등 미적용)

□ 한편,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경우 다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108][109],

108)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후단 생략)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분문 생략)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109)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국채법」 개정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 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개인투자용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3년 연장함으로써 개인투자용 국채의 실질 수익률 증대를 통한 수요 확대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개인의 국채 투자 활성화 및 국채 수요기반 다변화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국채 발행 증대에 대비하고 국채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가채무 추이 및 향후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30년
국가채무	681	723	847	971	1,067	1,129	1,737
GDP대비 비중	35.9%	37.6%	43.6%	46.7%	49.4%	51.1%	58.4%

자료 : 기획재정부, 「2023~2027 국가채무관리계획」
국회예산정책처, 「2023~2032 NABO 중기재정전망」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18년 35.9%에서 2022년 기준 49.4%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2030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8.4%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바, 향후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공공자금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의 증대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음.

또한, 국고채 보유비중이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에 편중되어 있어 특정한 상황에서 대량의 국채를 매도하거나 매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무위험 및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향후 국채 발행량 증가에 대비하고, 재무위험의 분산 및 시장 변동성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투자시계(time horizon), 위험선호도, 거래목적 등이 상이한 경제주체가 국채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바, 2024년 새롭게 도입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연장하여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초기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채의 수요기반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개인투자용 국채는 2024년 6월 처음 발행되어 현재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의 활성화 및 정책 홍보 측면에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보임.

기획재정부는 10년물 채권의 가산금리를 6월·7월 0.15%에서 8월·9월 0.22%로 0.07%p 상향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매달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20년물 채권은 매달 목표 청약건수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임.

출시 이후 수요가 저조한 20년물의 경우 유동성의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세제 지원을 통한 수요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보임.

[2024년도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 분		6월	7월	8월	9월
10년물	청약건수	13,084	11,579	9,826	4,922
	경쟁률	**3.49:1**	**1.94:1**	**1.17:1**	**0.30:1**
	총 발행규모	1,231	1,703	1,761	388
	표면금리	3.540	3.275	3.185	2.980
	가산금리	0.15	0.15	0.22	0.22
	만기 수익률	44	40	40	37
	연평균 수익률	4.4	4.0	4.0	3.7
20년물	청약건수	4,673	2,845	2,279	1,967
	경쟁률	**0.77:1**	**0.59:1**	**0.27:1**	**0.34:1**
	총 발행규모	769	297	136	67
	표면금리	3.425	3.220	3.085	3.000
	가산금리	0.3	0.3	0.42	0.42
	만기 수익률	108	100	99	96
	연평균 수익률	5.4	5.0	5.0	4.8

주: 경쟁률은 월별 발행계획 금액 대비 청약 금액을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본 조세특례의 연장은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어 보임.

개인투자용 국채는 상속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고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하지만 환매시 가산금리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주된 투자주체는 10년 또는

20년 동안의 유동성 제한을 감수할 수 있는 자로 한정될 것임.

즉, 낮은 위험-낮은 수익의 특성을 가진 국채에 최소 10년 이상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여유자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또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투자자의 경우 별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매입한 개인투자용 국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이자소득세만 부담하면 되므로, 개정안의 분리과세 혜택은 고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한정된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채의 개인투자가 발달한 외국의 경우에도 개인의 국채투자에 대한 별도의 과세혜택이 없는 경우가 많음.

미국의 경우 국채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자본소득과 같이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지방소득세는 면제되나[110] 연방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혜택이 없음.

영국은 국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인 채권과 같이 20%의 소득세가 부과될 뿐 별다른 과세특례는 없고[111][112], 일본 역시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은 일반적인 회사채나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15%의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며, 별다른 세제상 특례는 없음[113].

110) 반대로, 미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채권을 구입할 경우 연방소득세가 면제됨

111) 참고로, ISA(Individual Saving Account;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구매한 채권의 이자소득은 비과세되는데, 이는 국채에 부여한 과세혜택이 아니라 ISA에 의한 과세혜택이므로 제외함.

112) https://www.dnsassociates.co.uk/blog/taxes-on-bonds-gilts-government-uk-bonds

다만, 싱가포르의 경우 국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113) https://www.mof.go.jp/english/policy/jgbs/topics/individual/guideb2016.html

13. 혼인관련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설(박정하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박정하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부안·정태호의원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신설>	□ 특별소득공제에 혼인소득공제 추가 (제52조) ○ 공제대상: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근로소득자 ○ 공제기간: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공제형태: 소득공제 ○ 공제금액: 1천만원 ○ 적용기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분	□ 특별세액공제에 혼인세액공제 추가 (제52조) ○ 공제대상: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공제기간: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공제형태: 세액공제 ○ 공제금액: 300만원 ○ 적용기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분	□ 결혼세액공제 신설 (제92조) ○ 공제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공제기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형태: 세액공제 ○ 공제금액: 50만원 ○ 적용기간: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분

* 박정하의원안 2024. 7. 12. 제출(의안번호 1680), 안도걸의원안 2024. 7. 15. 제출(의안번호 1770),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75)

□ 4건의 개정안은 혼인과 관련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박정하의원안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에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1천만원을 소득공제하는 내용

을 추가하려는 것이고,

안도걸의원안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에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의 거주자가 혼인을 한 경우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이며,

정부안과 정태호의원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를 신설하여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세액공제하려는 것임.

[개정안 내용 비교]

구 분	박정하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부안·정태호의원안
①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자	종합소득이 있는 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거주자
② 공제대상 비용	거주자 본인 또는 직계비속의 혼인비용	거주자 본인의 혼인비용	거주자 본인에 한하여 1회
③ 공제한도	1,000만원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8,800만원 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 50만원
④ 공제방식	소득공제 (공제액: 1천만원)	세액공제 (공제액: 300만원)	세액공제 (공제액: 50만원)

□ 통계청에 따르면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처음으로 20만건 이하로 집계되었고, 2023년 기준 19만 3,657건을 기록하였음.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 역시 혼인건수와 마

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6년 5.5건에서 2023년 3.8건으로 약 31% 감소하였음.

[연도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단위: 건, 천명당 건)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잠정)
혼인건수	281,635	264,455	257,622	239,159	213,502	192,507	191,690	193,657
조혼인율	5.5	5.2	5.0	4.7	4.2	3.8	3.7	3.8

주: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함.
자료: 「인구동향조사」, 통계청(국가통계포털 KOSIS)

이와 같은 혼인률의 하락은 저출생 추세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약 40만 6,000명에서 2023년 23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임.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천명, 가임여자 1명당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잠정)
출생아 수	406	358	327	303	272	261	249	230
합계출산율	1.17	1.05	0.98	0.92	0.84	0.81	0.78	0.72

자료: 「인구동향조사」, 통계청(국가통계포털 KOSIS)

□ 이에 4건의 개정안은 혼인과 관련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혼인비용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혼인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13세 이상 미혼의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남녀 모두 결혼자금의 부족을 가장 큰 요인으로 선택하였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혼인비용을 경감함으로써 혼인을 장려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3세 이상 미혼의 결혼하지 않는 이유(2022년)]

(단위: %)

구 분	전체	남자	여자
결혼자금(혼수 비용, 주거마련 등)이 부족해서	**29.7**	**35.4**	**22.0**
직업이 없거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	11.0	13.4	7.7
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워서	6.6	4.7	9.1
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	10.7	9.3	12.5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11.6	11.3	11.9
결혼하기에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서	0.8	1.1	0.6
행동과 삶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	9.6	8.4	11.2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가 부담되어서	1.0	0.6	1.6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8.7	15.2	23.3

자료: 「사회조사」, 통계청(지표누리)

□ 다만, 4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동 세제지원을 통한 혼인율 제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 결혼정보 전문업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신

혼부부의 평균 결혼비용은 2억 4,299만원으로 2023년 대비 3,678만원 감소[114]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정안에 따른 1인 기준 공제액은 평균 결혼비용의 0.21%(정부안 및 정태호의원안), 1.23%(안도걸의원안), 1.85%(박정하의원안)[115] 정도의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혼인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또한, 4건의 개정안에 따른 혼인관련 공제는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1회성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장기적·계속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혼인의 결정에 있어 동 제도의 신설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저출생 문제 해소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4건의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소 또한 목적으로 하고 있고 통상 혼인이 출생의 전단계로 인식되기는 하나, 혼인과 출산을 독립적인 사안으로 인식하는 청년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22년에는 과반(53.5%)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114) 2024 결혼비용 보고서, 2023년 결혼비용 보고서 등

115) 세액공제액 300만원(안도걸의원안)은 2024년 평균 결혼비용의 1.23%에 해당하고, 소득공제액 1,000만원(박정하의원안)의 경우 최고 소득세율 45%가 적용되는 구간을 가정하더라도 450만원 수준으로 평균 결혼비용의 1.85%에 해당함(다만, 박정하의원안과 안도걸의원안은 맞벌이 부부인 경우 공제액 및 평균 결혼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배가 됨). 또한, 세액공제액 50만원(정부안)은 2024년 평균 결혼비용의 0.21%에 해당하나,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부부 합산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는 2024년 평균 결혼비용의 0.41%에 해당함.

[결혼 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중]

(단위: %)

구 분	2018년	2020년	2022년
전체	30.5	32.0	34.7
청년	46.4	50.5	53.5

자료: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통계청, 2023. 8. 28.

또한, 청년들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116], 고용・소득 불안정과 아울러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족, 딩크(DINK: Double Income No Kids)족의 확산 등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혼인 관련 공제제도의 신설만으로는 최근의 비혼·저출생 추세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힘든 상황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결혼을 망설인 이유 비중 연도별 추이]

(단위: 명)

사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결혼비용	46.4	65.8	53.2	51.4	41.9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12.5	9.1	8.6	13.9	12.6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 부족	18.8	9.2	16.4	12.9	25.2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13.7	9.1	11.8	12.3	18.2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7.5	6.3	8.5	9.5	1.2
기타	1.1	0.6	1.5	-	0.8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p.59

셋째, 혼인소득공제의 경우 旣 시행되었다가 실효성 문제로 폐지된 바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04년부터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100만

116) 청년(15세~2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7년 46.7%→2018년 47.1%→2019년 47.8%→2020년 46.4→2021년 47.9%→2022년 49.8%→2023년 49.4%로 나타나고 있음.(통계청, 각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의 혼인 특별소득공제가 시행[117]된 바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특별공제를 간소화하는 차원[118]에서 2008년 세법개정으로 폐지되었음.

문 의 처
02)6788-5160

117) 「소득세법」[제88차 일부개정 2007.12.31. 법률 제8825호]
제52조(특별공제)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혼인

118) 이에 더해 고소득자의 혼인율이 높아 고소득자에 많은 혜택이 귀착된다는 점도 감안되었음.

1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 연장 등 (박희승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6조의3)	□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등
○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폐업소상공인 포함)인 임차인으로부터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시행령 :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금융업, 사행오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현행과 같음)
○ 공제내용 -해당 연도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 : 임대료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해당 연도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임대료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내용 -해당 연도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 : 공제율 80%로 상향조정(박희승의원안)
○ 공제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 공제기간 : 임대료 인하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간	○ 공제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정부안,정태호의원안) -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엄태영의원안) - 공제기간 삭제 (박희승의원안,안도걸의원안,윤준병의원안)

* 박희승의원안 2024. 6. 11. 제출(의안번호 321), 안도걸의원안 2024. 6. 24 제출(의안번호 833), 엄태영의원안 2024. 8. 14. 제출(의안번호 2827), 윤준병의원안 2024. 8. 22. 제출(의안번호 3085), 정부안 2024. 9. 2. (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의안번호 4975)

□ 6건의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경감을 위하여 ①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10%p 상향조정(박희승의원안)하고, ② 공제특례 적용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정부안, 정태호의원안) 또는 2026년 12월 31일(엄태영의원안)까지 연장하거나, 공제기간을 삭제(박희승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윤준병의원안)하려는 것임.

□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라고도 불리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3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119]인 임차인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임대료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제도는 당초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보전해 줌으로써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 3월 도입[120]되었으며 2020년 12월, 2021

1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소상공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임대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다.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라.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마.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폐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폐업하기 전에 제1호에 해당했을 것
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120) 2020년 3월 도입 당시,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료 인하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였고, 2021년 11월 개정으로 2020년 2월 1일~2021년 6월 30일 신규 체결한 임대차 계약과 폐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음.

년 3월, 2021년 12월, 2022년 12월, 2023년 12월 개정을 통해 다섯 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되었는데, 2021년 3월 개정 시에는 기준소득금액[121]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한 바 있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연혁 및 개정안과의 비교]

<table>
<tr><th rowspan="2">개정 시기</th><th colspan="2">’20년</th><th colspan="3">’21년</th><th>’22년</th><th>’23년</th><th rowspan="2">박화승 의원안</th><th rowspan="2">안도걸 ·윤준병 의원안</th><th rowspan="2">정부안 정태호 의원안</th><th rowspan="2">엄태영 의원안</th></tr>
<tr><th>3월</th><th>12월</th><th>3월</th><th>12월</th><th>12월</th><th>12월</th></tr>
<tr><td rowspan="2">공제율</td><td colspan="2" rowspan="2">인하액의 50%</td><td colspan="4">인하액의 70%</td><td>80%</td><td colspan="3">(현행과 같음)</td></tr>
<tr><td colspan="7">(단, 기준소득금액 1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50%)</td></tr>
<tr><td>공제 기간</td><td>2020. 6.까지</td><td>2021. 6.까지</td><td>2021. 12까지</td><td>2022. 12까지</td><td>2023. 12까지</td><td>2024. 12까지</td><td>공제기간 삭제</td><td>2025. 12.까지</td><td>2026. 12.까지</td></tr>
</table>

2023년에는 소득세에서 801억원, 법인세에서 205억원이 감면되어 총 1,006억원의 조세지출이 있었음.

[연도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전망)	2025년(전망)
전체	1,672	1,970	1,006	513	545
소득세	1,448	1,597	801	416	443
법인세	225	373	205	98	102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121) 기준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5항)

□ 먼저, ① 세액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려는 부분은 보다 많은 임대인의 상가임대료 인하를 지속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임.

[최근 3년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자 수]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개인	법인	합계	개인	법인	합계	개인	법인	합계
대상자	93,604	3,712	97,316	74,448	2,763	77,211	35,566	1,503	37,069

자료: 기획재정부

동 조세특례의 2021년 대비 2023년 적용인원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감소하였고, 2024년 10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대책이 대부분 해제되었으며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안정성 심화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사업자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개정안과 같이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면 보다 많은 임대인의 상가임대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소상공인 체감경기 현황]

구분	2023년	2022년	2023년(전망)	2024년(전망)
소상공인 경기체감BSI	64.4	48.1	64.5	64.4
소상공인 비용체감 BSI	111.4	107.0	107.6	107.0

자료: 기획재정부 (BSI<100, 전월 대비 악화, BSI>100 전월대비 상승)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2021년 국회에서 동 조세특례의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50%에

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당시 동 조세특례로 인해 세후소득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세액공제율의 한계치가 70% 수준이라는 이유로 세액공제율을 70%로 설정하였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즉, 세액공제율이 70%를 넘는 경우 ① 동 조세특례에 따른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분과 ② 임대료를 인하함으로써 임대인의 종합소득이 감소하여 소득세 자체가 감소하는 효과가 더해져, 임대료 인하 전보다 세후소득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임.

둘째, 동 조세특례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다른 제도 대비 높은 수준의 공제율(70%)을 적용[122]하고 있는 예외적인 제도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 확산 초창기와 달리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어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된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다음, ②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 및 삭제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첫째, 임차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되어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

122) 의료비·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수준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음.

는 상황이므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코로나19 상황은 완화되었으나 물가상승, 높은 금리, 국내외 주식시장의 변동성 심화 등의 요인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사업부진[123]을 사유로 폐업한 사업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연도별 사업자 폐업사유 구성비율]

(단위: %)

구분	사업부진	행정처분 등[1]	기타[2]	계
2019년	41.4	5.8	52.8	100.0
2020년	43.1	6.3	50.6	100.0
2021년	45.6	7.1	47.3	100.0
2022년	46.8	6.3	47.3	100.0
2023년	48.9	5.4	45.7	100.0

주 1: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적용, 양도·양수, 해산·합병을 포함
2: 사업자가 폐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구체적 폐업사유를 알수 없는 경우와 열거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자료: 각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둘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 있음.

동 조세특례의 실적을 보면 2020년 대비 2021년 세액공제 금액이 개인과 법인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가격지수는 중대형 상가, 소형 상가, 집합 상가[124]

123) 폐업신고서 상 폐업사유를 의미

124) · 중대형 상가 :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상가(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이고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인 일반건축물
· 소규모 상가 :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상가(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이고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 이하인 일반건축물
· 집합 상가 :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상가(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인 집합

등 그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상업용부동산 임대가격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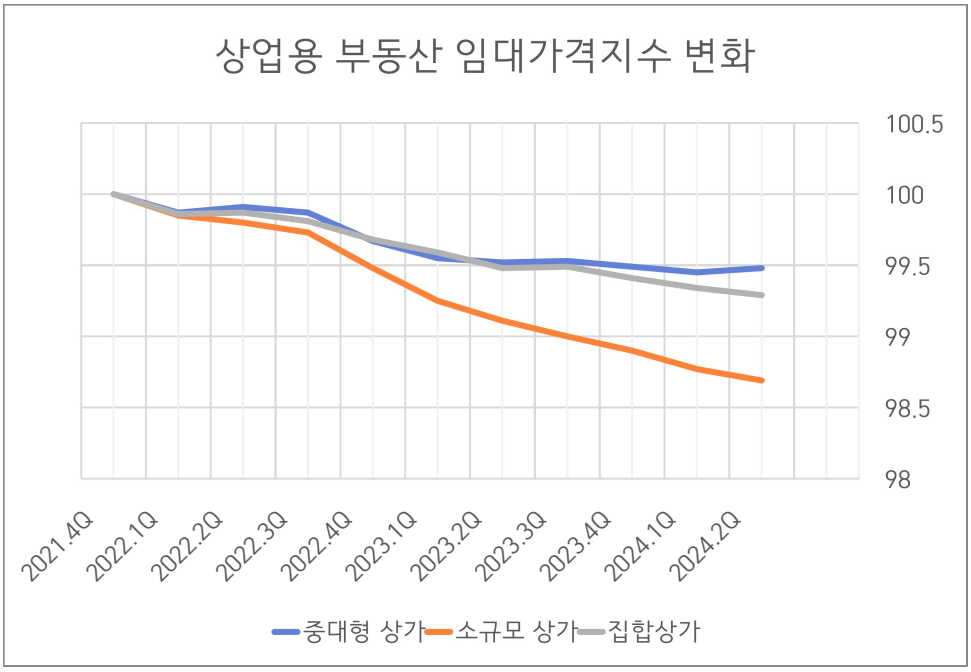

주 : 2021년 4분기를 100으로 하여 구한 상대적 지수
자료 : 부동산 통계정보,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2022년 실시된 조세특례 심층평가[125]는 방역 및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서 본 제도의 도입·운영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효과성 내지 실효성[126]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였음.

또한, 상가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동 제도의 제한적인 활용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1년 이하의 공제기간 연장을 검토하되 향후 국내외 경제적 여건 개선 시 점진적 폐지 추진을

건축물

12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8)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2022. 9.

126) 개인사업자의 제도 활용도(전체 정책대상자 중 제도를 실제로 이용한 사람의 비율)는 기준에 따라 4.2~8.3% 수준이며, 법인사업자는 6.9~7.3% 수준으로 나타남.

제안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전체적인 조세지출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4년의 경우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 제80조[127]에 따른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128]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연례적인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129], 불요불급한 조세지출 사업의 적정 수준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효율적인 국가재원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국세감면액 규모]

(단위: 억원, %)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국세감면액(A)	529,357	570,248	635,484	697,664	714,305
국세수입총액(B)	3,036,717	3,639,730	4,229,237	3,703,803	4,122,410
국세감면율[A/(A+B)	14.8	13.5	13.0	15.8	**15.3**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3.6	14.3	14.6	14.3	**14.6**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셋째, 동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만 세액공제를 규정하여 정책 도입시점과 관련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동 제도상 상가임대료를 인하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상가

127)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128) 0.7%p

129) 2023년 결산 기준 56조 4,000억원, 2024년 추정치 29조 6,000억원

건물을 2021. 6. 30. 이전부터 임차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여야 함[130].

하지만 임차인의 개인적인 이유로 임대 계약이 종결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인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신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동 조항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연례적인 일몰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로서 임차인의 범위는 변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131], 개정안에 따라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삭제하더라도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온전히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박희승·안도걸·윤준병의원안은 공제기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영구적인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고, 정부안·정태호의원안은 1년간, 엄태영의원안은 2년간 공제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

1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소상공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임대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131) 2021년 12월 세법 개정 이후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대상 임차인의 규정은 변하지 않았음. 따라서 입법취지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동 제도가 적용가능한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8

15. 근로장려금 제도 세제지원 강화 등

가. 개요

□ 근로장려금 제도(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서 2008년부터 시행되었음.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반대급부 없이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정책대상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소득 금액 등에 따라 차등화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현행 근로장려금 제도에 따르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200만원(단독가구 기준)~3,8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 기준)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132]인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짐.

근로장려금 산정 산식을 살펴보면, ① 일정 소득 이하 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금액이 증가하고(점증구간; 그래프 우상향 구간), ② 그 후 최고지급액 구간에 이르면 지급금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다가(평탄구간; 그래프 수평구간), ③ 일정 소득 이상 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이 감소하여(점감구간; 그래프 우하

132) 재산합계액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을 의미하며,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함

향 구간) ④ 소득상한구간에 이르면 장려금 지급이 중단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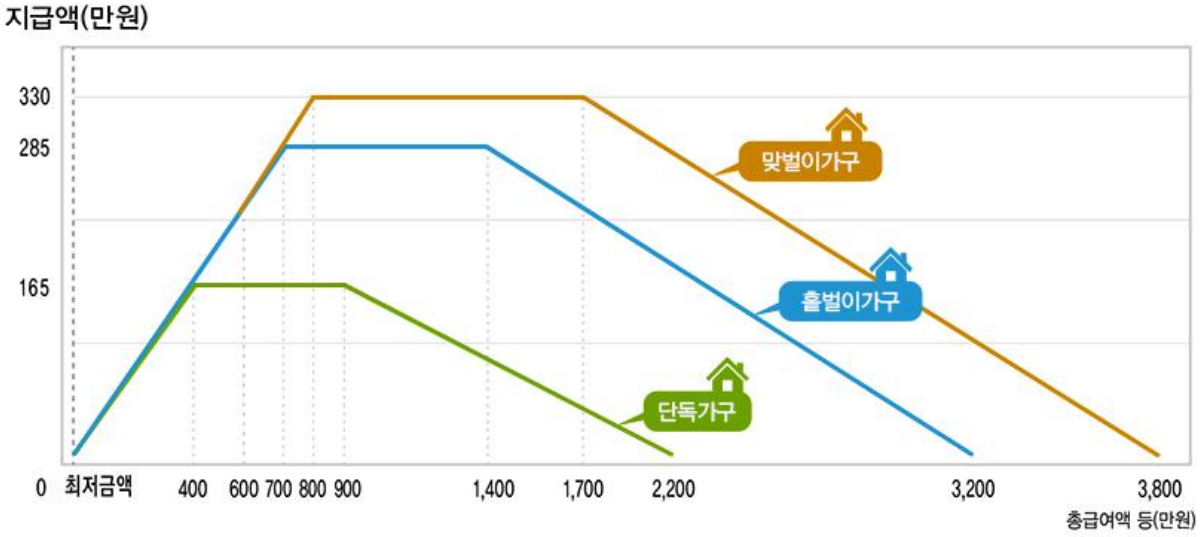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식]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400분의 165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700분의 285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800분의 330
400~900만원	165만원	700~1,400만원	285만원	800~1,700만원	330만원
900~2,200만원	165만원 - (총급여액등 - 900만원) × 1,300분의 165	1,400~3,200만원	285만원 - (총급여액등 - 1,400만원) × 1,800분의 285	1,700~3,800만원	330만원 - (총급여액등 - 1,700만원) × 2,100분의 330

주)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2023년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가구는 약 410만 가구이고 총 지급액 규모는 4조 5,636억원으로, 최근 6년간 지급대상 가구와 총 지급액 규모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음.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가구 및 지급액 추이]

(단위: 만 가구, 억원)

귀속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급 가구	166	179	410	432	426	442	426	410
총 지급액 규모	11,967	13,381	45,049	44,683	44,732	44,871	47,254	45,636

주1. 귀속연도별 최종 지급현황 (다만, 2023년은 기한 후 신청분 제외)
주2. 귀속소득 연도 기준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의 통계로서 조세감면액과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2022년 총지급액은 귀속소득 연도 기준으로 2022년 귀속 상반기(2022년 9월 신청, 12월 지급), 2022년 귀속 하반기(2023년 3월 신청, 6월 지급), 2022년 귀속 정기(2023년 5월 신청, 9월 지급) 신청에 대한 지급액이 포함
자료 : 국세통계포털 14-1-1. 근로·자녀장려금별 신청·지급현황

연도별 근로장려금 관련 조세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조 3,381억원에서 2023년 4조 7,281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4조 8,5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근로장려금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8년	2019년[1]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조세감면액	13,381	49,256	44,826	46,035	45,036	47,281	47,120	48,520

주1: 지급금액 인상, 단독가구 연령요건, 소득 및 재산요건 완화, 2019년부터 반기신청·지급 시행으로 2019년 상반기 신청분 4,207억원 2019.12월 조기지급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나.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정부안, 정태호의원안)

<table>
<tr><th>현 행</th><th>정부안, 정태호의원안</th></tr>
<tr><td>□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제100조의3)
○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table>
<tr><th>가구유형</th><th>총소득기준금액</th></tr>
<tr><td>단독가구</td><td>2,200만원</td></tr>
<tr><td>홑벌이가구</td><td>3,200만원</td></tr>
<tr><td>맞벌이가구</td><td><u>3,800만원</u></td></tr>
</table>
-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미만일 것
* 1.7억원 이상인 경우 50% 지급</td><td>□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상향조정
○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table>
<tr><th>가구유형</th><th>총소득기준금액</th></tr>
<tr><td>단독가구</td><td>2,200만원</td></tr>
<tr><td>홑벌이가구</td><td>3,200만원</td></tr>
<tr><td>맞벌이가구</td><td><u>4,400만원</u></td></tr>
</table>
- (현행과 같음)</td></tr>
<tr><td>□ 근로장려금의 산정(제100조의5)
○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산정방식
<table>
<tr><th>총급여액 등</th><th>근로장려금</th></tr>
<tr><td>800만원 미만</td><td>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td></tr>
<tr><td>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td><td>330만원</td></tr>
<tr><td>1천700만원 이상 <u>3천800만원</u> 미만</td><td>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 <u>2천100분의</u> 330</td></tr>
</table></td><td>□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상향조정 반영
○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산정방식
<table>
<tr><th>총급여액 등</th><th>근로장려금</th></tr>
<tr><td>800만원 미만</td><td>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td></tr>
<tr><td>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td><td>330만원</td></tr>
<tr><td>1천700만원 이상 <u>4천400만원</u> 미만</td><td>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 <u>2천700분의</u> 330</td></tr>
</table></td></tr>
</table>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75)

□ 2건의 개정안은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현행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

을 단독가구의 2배 수준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당초 근로장려금 제도는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소득기준 및 지급 산식을 차등하여 적용하다가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현행과 같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구유형을 분류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한 이후 2018년, 2021년 두 차례의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기준을 점차 확대해왔음.

이러한 소득기준 확대 과정에서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은 단독가구의 소득기준으로 나눈 값은 1.92에서 1.73까지 감소하였음.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개정추이]

가구유형	2013년 개정	2018년 개정	2021년 개정	개정안
단독가구	1,3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3,000만원	3,2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3,600만원	**3,800만원**	**4,400만원**
맞벌이가구÷단독가구	1.92	1.80	**1.73**	**2.0**

□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액을 단독가구의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가 기대됨.

첫째, 결혼에 따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결혼 페널티'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정부는 2024년 4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경제분야)」를 통해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맞벌이부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상향 등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결혼 이전에 각각 단독가구로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던 개인이 결혼을 통해 맞벌이가구로 전환된 이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장려금 수령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맞벌이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2배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둘째,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에 따르면[133] 근로장려금 지급은 근로유인효과와 근로소득 및 세후소득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확대 적용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2023년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에 따르면, 직전연도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경우 다음 연도에 총급여액이 존재할 확률이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지 않은 경우보다 8.82%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효과가 존재한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음.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에 따른 소득의 증가는 근로 증가에 따른 총급여액의 증가와 그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급으로 인한 증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근로유인으로 인한 총급여액의 증가는 72만원으로 나타났고 근로장려금을 고려한 세후소득은 108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133)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근로장려금」, 2023. 9.

□ 다만, 개정안의 입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첫째,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기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현행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기준 상한은 최소 2,200만원(단독가구 기준)에서 최대 3,800만원(맞벌이가구 기준)으로 2022년 1인당 GDP 4,184만원의 53%~91%에 해당하는데, 이는 미국 29%~77%, 캐나다 46%~60% 등 다른 주요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임.

또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비해 세수여건이 여의치 않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급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국가별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기준 상한 비교]

(단위: USD, CAD, 원, %)

국가	유형	소득기준 상한(A)		1인당 GDP(B)	비율(A/B)
미국	부양자녀 0명	22,610	USD	77,192 (미국달러)	29%
	1명	49,622			64%
	2명	55,529			72%
	3명	59,187			77%
캐나다	단독가구	33,015	CAD	72,383 (캐나다달러)	46%
	가족가구	43,212			60%
한국	단독가구	2,200만	원	4,184만 (한국원)	53%
	홑벌이가구	3,200만			76%
	맞벌이가구	3,800만			91%

주: 1. 환율변동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모든 화폐기준은 자국화폐로 통일함.
2.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부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국의 경우 부부합산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독신・한부모신고보다 소득기준이 더 높음).
3. 2022년 1인당 GDP 기준

자료: KOSIS 1인당 국내총생산, 당해년가격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근로장려금」, 2023. 9.

둘째, 개정안에 따르면 맞벌이부부의 근로장려금 점감구간이 확대

되는데, 추가적인 노동공급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근로유인을 저하시키는 점감구간의 확대는 노동공급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점감구간 확대 효과를 일부 축소하고 단독가구 간 혼인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감소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득요건의 한도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려금 산정방식을 함께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134].

□ 참고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을 600만원 상향조정할 경우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증가하고, 지원 인원은 20만 7,000가구에서 25만 7,000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문 의 처
02)6788-5154

134) 평탄구간과 점감구간의 경계점을 현행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조정

다. 중증장애인인 직계존속 부양 홑벌이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홑벌이 가구 요건(제100조의3)	□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거주요건 완화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현행과 같음)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 (현행과 같음)
○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현행과 같음)
- 연령요건: 70세 이상일 것(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현행과 같음)
- 거주요건:	- 거주요건:
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① (현행과 같음)
②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 <단서 신설>	②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간주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75)

□ 2건의 개정안은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질병 치료, 요양 목적으로 일시 퇴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홑벌이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르면 홑벌이 가구는 ①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만 있는 가구 또는 ③배우자 없이 특정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지칭함[135].

이때 직계존속은 ①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②연령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 70세 이상일 것) 및 ③ 거주요건(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을 충족해야 함.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던 직계존속이 질병의 치료, 요양을 위해 일시퇴거하는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양자인 거주자가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강화된 소득기준 및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인 직계존속이 질병 치료 및 요양 목적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해당 가구를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간주함으로써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더 많은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직계존속에 대한 현실적 부양의무를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135)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있는 가구
1)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3) 70세 이상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간 근로장려금 지급액 비교]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400분의 165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700분의 285
400～900만원	165만원	700～1,400만원	285만원
900～2,200만원	165만원 - (총급여액등 - 900만원) × 1,300분의 165	1,400～3,200만원	285만원 - (총급여액등 - 1,400만원) × 1,800분의 285

주)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문 의 처
02)6788-5154

라.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요건 정비(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제100조의5)	□ 지급금액 명확화
○ 상반기 소득분: 총지급액 x 0.35	○ 상반기 소득분: (현행과 같음)
○ 하반기 소득분: 총지급액 x 0.35	○ 하반기 소득분: 연간 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유보 요건(제100조의8)	□ 지급유보 요건 조정
○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 (현행과 같음)
○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 상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75)

□ 2건의 개정안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현행 "총지급액의 35%"에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변경하고,

장려금 지급유보 요건을 현행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서 "상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 조정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136]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지만[137], 반

136)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

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는 신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반기별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음[138].

□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기존의 정기 지급제도의 경우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여 소득 증대 및 근로유인 체감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세법개정으로 2019년부터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제도가 도입되었음.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근로소득자가 당해연도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당해연도 9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당해연도 12월 30일까지 상반기 근로소득에 근거하여 계산한 총 근로장려금 금액의 35%를 지급받았고, 당해연도 하반기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3월에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상반기 근로소득과 하반기 근로소득에 근거하여 산출한 총 근로장려금 금액의 35%를 지급받았으며, 그 후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기 지급된 반기별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산 및 환급이 이루어졌음.

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37)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3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半期)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6월 말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이후 9월 말에 별도로 정산이 이루어져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자가 소득·재산 변동 등에 따라 정산 결과 장려금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음[139].

이에 근로장려금 반납에 따른 절차적 불편 및 심리적 박탈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세법개정을 통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과 최종 정산이 6월 말에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음.

[2021년 세법개정 전후 반기별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3">2021년 세법개정 이전</th><th colspan="3">현 행</th></tr>
<tr><th>신청시기</th><th>지급시기</th><th>정산시기</th><th>신청시기</th><th>지급시기</th><th>정산시기</th></tr>
<tr><td colspan="2">(정기)
근로장려금</td><td>다음해
5월</td><td colspan="2">다음해
9월</td><td colspan="3">(현행과 같음)</td></tr>
<tr><td rowspan="2">반기별
근로장려금</td><td>상반기</td><td>9월</td><td>12월</td><td rowspan="2">다음해
9월</td><td>9월</td><td>12월</td><td rowspan="2">다음해
6월</td></tr>
<tr><td>하반기</td><td>다음해
3월</td><td>다음해
6월</td><td>다음해
3월</td><td colspan="2"></td></tr>
</table>

□ 그러나 2021년 세법개정에 따라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과 최종 정산을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어 하반기 근로장려금 수령시 연간 근로장려금에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차감한 잔액 전부를 수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여전히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상반기 및 하반기 근로소득에 따라 계산한 근로장려금의 35%로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의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139) 2020년에 근로장려금 지급 후 환수된 가구는 9,757가구로, 전년의 근로장려금이 환수된 3,631가구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하였음(국회입법조사처, 「근로소득장려세제 현황과 과제」, 2021. 9.)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정산시기 조정에 따라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과 정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하반기 지급금액을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한편, 현행법은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를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지급유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2년부터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지급과 최종 정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위 유보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에 해당함.

이에 개정안은 하반기 근로장려금 유보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당해연도 12월에 해당 연도의 재산요건 등의 파악이 가능하여 다음 해 6월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불필요한 환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4

16.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특례 신설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신 설>	□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안 제104조의34 신설) ○ 적용대상 - 건설기계* 1대를 양도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대체취득한 사업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 ○ 과세특례 - 양도차익에서 대체취득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0만원* 초과분을 3년 분할 산입 * 시행령 규정 예정 - 5년 이내 중복 적용 불가 ○ 사후관리 - 총수입금액 전액 산입 전 폐업등의 경우 미산입금액 전액 총수입금액 산입 후 해당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 추가 납부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75)

□ 2건의 개정안은 건설기계 1대를 처분한 후 다른 건설기계를 대체취득할 경우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양도차익 중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분을 3년간 분할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5년 이내 동일 특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2018년 이전까지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 업무용승용차의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었던 반면 운반구, 기계, 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음[140].

140)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은 매년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하는데, 유형자산을 양도해서 얻는 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그동안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았음.

이후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141]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 시작하였는데[142], 건설용 중장비는 10억원 이상 고가 장비가 많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면 자금 경색을 유발하고 건설기계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건설기계에 한하여 2020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2년간 시행을 유예하였음.

이후 유예기간이 도래하여 중고시장의 일시적 공급과잉으로 인한 매각의 어려움이 발생하자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건설기계를 양도한 경우로 대상범위를 축소하였음[143].

□ 한편, 건설기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액법[144]을 활용하여 5년 단위

---

141)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14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9. 생략)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43)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로 비용·경비를 정산함에 따라 2018년 이후 취득한 장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건이 2023년부터 발생하는데, 양도소득세 유예기간 종료로 인하여 고가의 건설장비 1대만 보유·대여하는 사업자의 경우 건설기계 교체시 일시적으로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취득가 3억 2천만원의 굴착기의 경우 10년이 경과하면 장부가액은 감가상각율 75%가 반영된 8천만원이 되어, 장비 교체를 위해 기존 장비를 2억 8천만원에 판매할 경우 2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3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됨.

[건설기계 기종별 감가상각율 및 중고가격]

(단위: 원, %)

기종(규격)	취득가	10년 경과	감가율
굴착기(480톤)	3억 2천만원	8천만원	-75.0%
하이드로크레인(100톤)	14억원	7억원	-50.0%
크롤라크레인(100톤)	8억 5천만원	4억원	-52.9%
항타및항발기(150톤)	12억원	6억원	-50.0%
항타및항발기(170톤)	13억원	7억원	-46.1%
항타및항발기(200톤)	18억원	11억원	-38.8%

자료: 대한건설기계협회

144)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기 일정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단위: %)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또한, 최근 안전사고 예방[145]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건설기계의 제도 도입·규제[146]로 인하여 불가피한 노후 건설기계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건설기계 처분 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다른 건설기계를 대체취득할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처분이익에 대해 3년간 분할 과세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소득의 결집효과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8개 구간으로 나누고 과세표준 금액 상승에 따라 구간별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누진세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

14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주요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고자 건설사의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일정기간(3~5년)이 경과한 건설기계의 임대 및 출입을 제한

14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제11호바목에 따라 공사금액 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장의 경우 노후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지게차 및 굴착기) 사용을 제한

따라서 건설기계 판매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1개 과세연도에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경우 일시적으로 높은 한계세율에 직면하게 되어 동일한 소득을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이 커지는 효과가 발생함.

또한, 영세한 건설기계 사업자의 경우 건설기계 취득가액 상당액을 제2금융권 할부 대출로 충당하고 있어 처분수익에 대한 과세로 인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건설기계 할부금융의 금리 변동 추이]

구 분	2020년도	2023년도
신차 기준	4%~6%	8%~14%
중고차 기준	5%~7%	9%~15%

자료: 대한건설기계협회

이에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양도차익을 4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어 절대적인 납부세액이 감소하고[147], 단기적인 자금 확보가 어려운 건설기계 사업자의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노후화된 건설기계의 조속한 교체를 유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규 건설장비 구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노후된 건설기계의 처분이 필요한데 현재 세부담으로 인하여 처분을

147) 예를 들어, 2020년에 건설용 크레인을 2억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다 2025년 기계장치를 1억원에 처분한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처분시점에 세율 35%를 적용한 1,956만원을 일시에 부담하여야 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4년간 세율 15%를 적용한 총 1,032만원(첫해: 60만원, 2년차~4년차: 324만원)을 분할 부담하게 됨.

지연하고 있는 건설기계 사업자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처분이익에 대한 분할과세 특례를 부여할 경우 노후화된 건설기계의 적기 교체 및 안전사고 방지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일정 금액을 초과한 처분이익에 대한 분할과세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감세의 효과가 커질 수 있으므로 특례가 적용되는 건설기계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일몰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상 건설기계를 제외한 차량 및 운반구, 선박, 항공기 등 사업용 유형자산의 경우 2018년부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개시되었고 분할납부 등 별도의 세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용 유형자산과의 과세형평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4

<참고> 건설기계의 범위

건 설 기 계 명	범 위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7. 기중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8. 모터그레이더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 롤러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1. 공기압축기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2. 천공기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23. 항타 및 항발기	공기배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24. 자갈채취기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5. 준설선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6. 특수건설기계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27. 타워크레인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17.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 추징기준 변경(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 (제122조의3)	□ 추징기준 변경
○ 적용대상 :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 적용대상 : (현행과 같음)
○ 공제율 : - 일반 의료비 : 15% - 난임시술비 : 30% - 미숙아 등 의료비 : 20% - 교육비 : 15% - 월세액 : 15%(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는 17%)	○ 공제율 : (현행과 같음)
○ 추징기준(전액 추징) - 수입금액 20% 이상 과소신고 or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계상	○ 추징기준(전액 추징) - 사업소득금액 10%(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또는 20%(성실사업자) 이상 과소신고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75)

□ 2건의 개정안은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추징기준을 현행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20% 이상을 과소신고 또는 과대계상한 경우에서 사업소득금액의 10%(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또는 20%(성실사업자) 이상 과소신고한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 성실사업자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복식부기 등에 따른 장부를 기록하여 소

득금액을 계산·신고하며 사용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는 사업자를 말하며[148],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5억원~15억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사업소득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149]을 통해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의미함[150].

이 중 현행법에 따른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는 모든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성실사업자 중 일정 요건[151]을 갖춘 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중 성실신고

---

148)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⑨ (본문생략)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연 12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59조의4제9항제2호가목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법 제1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한다)
3.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149) 세무사 외에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공인회계법인을 포함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3항)

150)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1) [성실사업자 요건과 성실사업자로서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만 공제대상에 해당됨.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는 2007년 세법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고 월세 소득공제는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2014년에는 의료비·교육비·월세 소득공제가 모두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음.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2015년 말에 일몰되었다가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재도입되었고,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는 2021년과 2023년에 각각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현행법에 따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의료비 등을 지급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됨.

한편, 현행법은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의 20% 이상을 과소신고하거나 필요경비의 20% 이상을 과대계상한 경우 공제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7년 세법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

요 건	현 행
성실사업자 요건 「소득세법」 §59의4⑨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 -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복식부기·간편장부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 ③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성실사업자로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과세기간이 3개 과세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할 것 ②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③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성실사업자로서 월세세액공제 요건	①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공제율 15% ②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 공제율 17%

할 당시부터 동일하게 유지된 기준임.

□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추징기준을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 아닌 사업소득금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추징기준과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의 추징기준을 일원화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 간에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1년 도입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152]'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을 과소신고한 경우 전액 추징함.

---

15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금액등"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의료비 등 세액공제와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간 비교]

구분	의료비 등 세액공제 (§122조의3)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126조의6)
적용대상	-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공제내용	-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 15%	- 60%
추징기준	**- 수입금액 20% 이상 과소신고 or -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계상**	**-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소신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입장에서는 2개 공제제도의 사후관리 기준이 상이하여 사례별로 유불리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추징기준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결과치인 사업소득금액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제도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공제」에 따르면 의료비 등 세액공제와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의 제재기준을 소득금액의 과소신고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제도간 정합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음[153].

□ 다만, 개정안은 성실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의 20% 이상을 과소신고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을

153) 기획재정부, 2023. 9.

과소신고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전액 추징하도록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추징기준을 상이하게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수입금액 등 규모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154], 성실사업자는 영세한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어 추징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제도는 본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의료비 등 공제를 성실사업자에게도 허용하여 과표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자는 공제혜택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현행법과 개정안 간 공제액 추징기준 비교]

구분	의료비 등 세액공제(§122조의3)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126조의6)
	현행법	개정안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수입금액 20% 이상 과소신고 or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계상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소신고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소신고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사업소득금액 20% 이상 과소신고	-

154) 농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등: 7.5억원
부동산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등: 5억원

문 의 처
02)6788-5154

1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신설, 공제율 상향, 적용기한 연장 등

가. 제도 개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통시장 사용분은 50%, 2023년 연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80%),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에 대해서는 30%[155](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은 40%),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30%,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고, 2024년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됨.

또한,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및 도서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한도를 별도로 적용하며,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한도가 별도로 적용됨.

155)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 및 공제한도]

<table>
<tr><th colspan="2">소득공제율</th><th colspan="4">공제한도</th></tr>
<tr><th>구분</th><th>공제율</th><th colspan="2">구분</th><th>7천만원이하</th><th>7천만원초과</th></tr>
<tr><td>❶ 신용카드</td><td>15%</td><td colspan="2" rowspan="2">기본공제 한도</td><td rowspan="2">300만원</td><td rowspan="2">250만원</td></tr>
<tr><td>❷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
<tr><td>❸ 전통시장
※ 2023년 4.1 ~ 12.31. 사용분</td><td>40%
(50%)</td><td rowspan="4">추가 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3">300만원</td><td rowspan="2">200만원</td></tr>
<tr><td>❹ 대중교통
※ 2023년 1.1 ~ 12.31. 사용분</td><td>40%
(80%)</td><td>대중교통</td></tr>
<tr><td>❺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 등
※ 2023년 4.1 ~ 12.31. 사용분</td><td>30%
(40%)</td><td>도서 등</td><td>-</td></tr>
<tr><td>❻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 2024년 사용금액 분에 한시적으로 적용</td><td>10%</td><td>23년대비 소비증가분</td><td colspan="2">100만원</td></tr>
</table>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9년 9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도입 당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적용기한이 10차례 연장되어 2025년말 일몰 예정임[156].

156) 최초 도입 시 적용기한은 2002. 11. 30. 이었으나 2005. 11. 30. ⇒ 2007. 11. 30. ⇒ 2009. 12. 31. ⇒ 2011. 12. 31. ⇒ 2014. 12. 31. ⇒ 2016. 12. 31. ⇒ 2018. 12. 31. ⇒ 2019. 12. 31. ⇒ 2022. 12. 31. ⇒ 2025. 12. 31.로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왔음

□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1조 8,537억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3조 9,458억원에 달하였으며, 2024년에는 4조 1,183억원, 2025년에는 4조 3,6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조세지출액	18,537	21,176	22,553	24,698	31,882	31,675	39,458	41,183	43,693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나.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제도 신설(서영교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서영교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부안·정태호의원안
□ <신 설>	□ 특별세액공제에 체육시설 이용료 추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공제대상: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위하여 체육시설에 지급한 이용료 ○ 공제형태: 세액공제 ○ 공제율: 15% ○ 공제한도: 연 30만원 (200만원*0.15) ○ 적용기한: 없음	□ 특별세액공제에 체육시설 이용료 추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 대상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공제대상: 거주자가 본인을 위하여 체육시설에 지급한 이용료 ○ 공제형태: 세액공제 ○ 공제율: 15% ○ 공제한도: 연 30만원 (200만원*0.15) ○ 적용기한: 없음	□ 체육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 ○ 대상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대상: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지급한 금액 ○ 공제형태: 소득공제 ○ 공제율: 30% ○ 공제한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등사용분과 합산하여 300만원 ○ 적용기한: 2025. 12. 31.

* 서영교의원안 2024. 6. 10. 제출(의안번호 251), 안도걸의원안 2024. 6. 25. 제출(의안번호 894),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제출(의안번호 4975)

□ 4건의 개정안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안과 안도걸의원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157]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이용료(연 최대 200만원)의 15%를 세액공제하는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서영교의원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거주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위해 체육시설에 이용료를 지급한 경우를 공제 대상 및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고, 안도걸의원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을 위해 체육시설(골프장 제외)에 이용료를 지급한 경우를 대상 및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음.

정부안과 정태호의원안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158] 항목에 추가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공제한도는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등사용분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임.

157)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구 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인공암벽장, 파크골프장, 풋살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자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15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려는 개정안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및 세부담을 경감하는 정책효과가 기대됨.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체육활동 참여가 정신적 건강 유지에 효과가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87.0%, 신체적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비율이 86.1%에 달하는 등 체육활동의 증가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체육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체육활동 지출비용 여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4.6%에 달하고 있어 체육시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세제혜택은 실질적인 체육시설 이용비

소득공제율		공제한도			
구분	공제율	구분		7천만원이하	7천만원초과
❶ 신용카드	15%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❷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❸ 전통시장 ※ 2023년 4.1 ~ 12.31. 사용분	40% (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❹ 대중교통 ※ 2023년 1.1 ~ 12.31. 사용분	40% (80%)		대중교통		
❺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 등 ※ 2023년 4.1 ~ 12.31. 사용분	30% (40%)		도서 등		-
❻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 2024년 사용금액 분에 한시적으로 적용	10%		23년대비 소비증가분	100만원	

용을 낮추어 국민들의 체육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체육활동 참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는 체육시설 이용비용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 최근 1년간 체육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문한 결과 '체육활동 가능 시간 부족(57.5%)',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 부족(46.8%)', '체육시설 접근성 낮음(35.0%)'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고, '체육활동 지출비용 부담'(20.0%)은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따라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체육활동 관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더라도 기존 이용자의 체육활동 관련 비용 절감 효과만 있을 뿐 추가적인 체육활동 증가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조세특례의 실질적인 유인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세제 지원 외에 장려금 지급 등 다른 정책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입법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면세자를 포함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세제혜택을 적용할 경우 2022년 기준 근로소득자의 33.6%에 달하는 면세자는 정책대상에서 제외됨.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체육활동 경비가 소득

수준과 전반적으로 비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정책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소득별 월평균 체육활동 경비]

(단위: %, 원)

경비 / 월 소득	없음	~3만원	3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20만원 ~30만원	30만원~	평균(원)
~100만원	74.9	15.5	7.4	0.6	0.7	0.9	9,971
100만원 ~200만원	71.3	13.4	12.2	2.4	0.5	0.3	12,263
200만원 ~300만원	62.2	11.0	17.1	7.2	1.4	1.2	25,410
300만원 ~400만원	50.8	11.9	20.5	13.1	2.2	1.6	38,382
400만원 ~500만원	44.4	13.6	22.1	14.1	4.1	1.8	46,435
500만원 ~600만원	48.0	10.2	20.7	16.0	3.1	2.2	47,111
600만원 ~700만원	44.5	8.6	17.8	15.7	9.2	4.1	64,348
700만원 ~800만원	37.6	9.1	21.8	17.1	8.2	6.3	79,603
800만원 ~900만원	40.8	6.1	15.7	18.1	7.0	12.2	103,168
900만원~	29.9	12.3	12.2	20.7	7.1	17.8	170,12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 2023 재구성

셋째, 월평균 체육활동 경비를 고려한 공제한도 설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서영교의원안과 안도걸의원안은 공제대상 체육시설 이용료를 최대 2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체육활동 경비는 48,788원(연평균 약 585,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연 200만원 이상 체육활동 경비를 지출하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고려할 때, 고가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고소득층 위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제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넷째,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 지원 방식 및 공제대상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서영교의원안과 안도걸의원안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특별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정부안과 정태호의원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서영교의원안은 근로소득자가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 체육시설에 이용료를 지급한 경우를, 안도걸의원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본인을 위하여 체육시설(골프장 제외) 이용료를 지급한 경우를, 정부안과 정태호의원안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지급한 금액을 각각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적용시 납세자가 체육시설 이용료를 직접 신고·증명해야 하므로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등과 같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소비여력이 없어 체육활동을 기피하게 되는 저소득층으로 정책대상을 제한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구체적인 공제방식 및 대상의 설정은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정책대상의 특성 및 입법의 재정영향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4

<양도소득세 분야>

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이달희·배준영·최은석·조경태·임미애·정태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안 제71조의2 신설) ○ 요건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1채 신규 취득 * 주택 소재지, 주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 1개 보유한 경우 포함) ○ 취득기한 - 2024. 1. 4. ~ 2026. 12. 31. (배준영·정태호의원안·정부안) - 2024. 1. 4. ~ 2028. 12. 31. (최은석의원안) ○ 신청절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배준영·최은석의원안) -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정태호의원안·정부안)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정태호의원안·정부안) 공포한 날 (배준영의원안) 공포 후 1년 경과 (최은석의원안)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 배준영의원안 2024. 7. 9. 발의(의안번호 1541), 최은석의원안 2024. 8. 2. 발의(의안번호 2539),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현 행	개정안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9조의4)	□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추가
○ 1세대가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취득(건설취득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 농어촌주택등 3년 이상 보유요건 충족 전 일반주택 양도 시에도 허용하나, 3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 (현행과 같음)
- 농어촌주택	- (현행과 같음)
· ①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관광단지 외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소재, ② 취득당시 주택·토지가액 합계액 3억원(한옥 4억원) 이하	
- 고향주택	- (현행과 같음)
· ① 고향 소재, ② 수도권지역, 조정대상지역, 관광단지 외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소재 ③ 취득당시 주택·토지가액 합계액 3억원(한옥 4억원) 이하	
	-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추가 · 3년 이상 보유 요건 제외 · 기존 주택과 신규취득 주택이 같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경우 적용 제외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임미애의원안 2024. 9. 19. 발의(의안번호 4067)

현 행	개정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이달희의원안: 안 제71조의2 신설 조경태의원안: 안 제70조의3 신설) ○ 요건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1채 신규 취득 * (이달희의원안) 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1개 보유한 경우 포함 - 기존 1주택과 신규 취득 1주택이 같은 인구감소지역이 아닐 것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 ○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 주택 범위(제8조제2항)	□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포함
○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 (현행과 같음) ○ 인구감소지역주택 추가 (이달희의원안) - 기존 1주택과 신규 취득 1주택이 같은 인구감소지역이 아닐 것 -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일 것 ○ 인구감소지역주택 추가 (조경태의원안) -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제외
○ 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노인복지주택 등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이달희의원안 2024. 7. 1. 발의(의안번호 1224, 1249), 조경태의원안 2024. 9. 9. 발의(의안번호 3808, 3814)

□ 9건의 개정안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배준영·최은석·정태호 의원안과 정부안은 제71조의2를 신설하면서 주택 소재지, 주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①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하고, ②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4억원으로 제한하며, ③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취득은 제외한다는 계획임.[159]

배준영·정태호의원안과 정부안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기한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말까지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 최은석 의원안은 2028년 말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절차에 있어서 3건의 개정안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안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신고기간을 두고 있음.

임미애의원안은 제9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음.

다만,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과는 달리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159)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4. 7. 25.

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보유기간 요건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과 신규취득 주택이 같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이달희·조경태의원안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3(조경태의원안) 또는 제71조의2(이달희의원안) 신설을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을 개정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포함시키고 있음.

다만, 취득하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의 공시가격, 취득기한 등의 제한이 없다는 점과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일 것(이달희의원안)을 요한다는 점에서 배준영·최은석·정태호의원안 및 정부안과 차이가 있음.

□ 2023년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32만 5,329명으로 전년에 비해 11만3709명(△0.22%) 줄어들어, 2020년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이래 4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4년~2023년 성별 인구수 및 전년대비 증감 현황]

(단위: 명)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인구	5,133만	5,153만	5,170만	5,178만	5,183만	5,185만	5,183만	5,164만	5,144만	5,133만
남	2,567만	2,576만	2,583만	2,586만	2,587만	2,586만	2,584만	2,575만	2,564만	2,557만
증감	80,960	88,890	69,408	28,325	10,210	△1,313	△2,787	△94,345	△109,733	△71,215
여	2,566만	2,577만	2,587만	2,592만	2,596만	2,599만	2,599만	2,589만	2,580만	2,576만
증감	105,493	112,532	97,470	54,003	37,305	25,115	2,949	△95,869	△90,038	△42,494

자료: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2024.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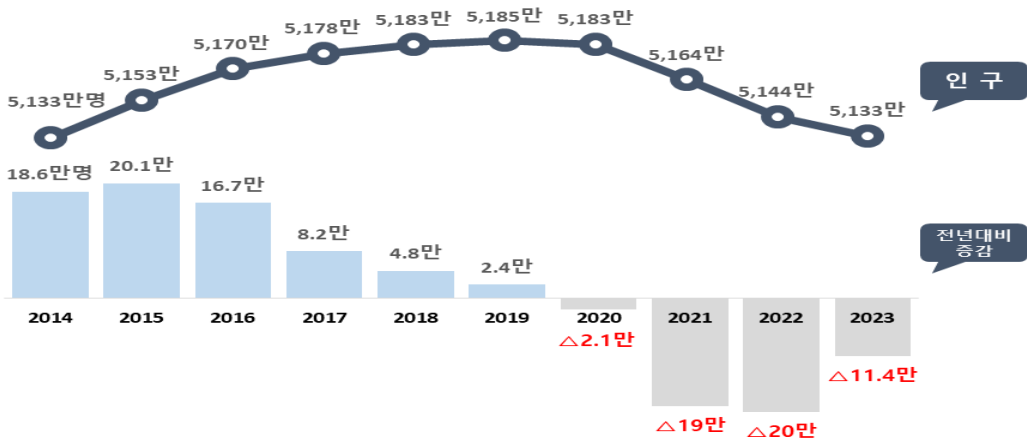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2024.1.10.

고령 인구(65세 이상)는 973만명으로 18.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인구는 22년말 대비 5.00%p 늘었고, 70세 이상 인구는 22년말 대비 3.91%p 늘어남.

[2014년~2023년 고령(65세 이상) 인구수 및 비중 추이]

(단위: 명, %)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65세 이상	652만 (12.70)	678만 (13.15)	700만 (13.53)	736만 (14.21)	765만 (14.76)	803만 (15.48)	850만 (16.39)	885만 (17.14)	927만 (18.02)	973만 (18.96)
70세 이상	444만 (8.65)	458만 (8.89)	476만 (9.20)	501만 (9.67)	524만 (10.12)	548만 (10.57)	570만 (11.00)	582만 (11.28)	608만 (11.82)	632만 (12.31)

※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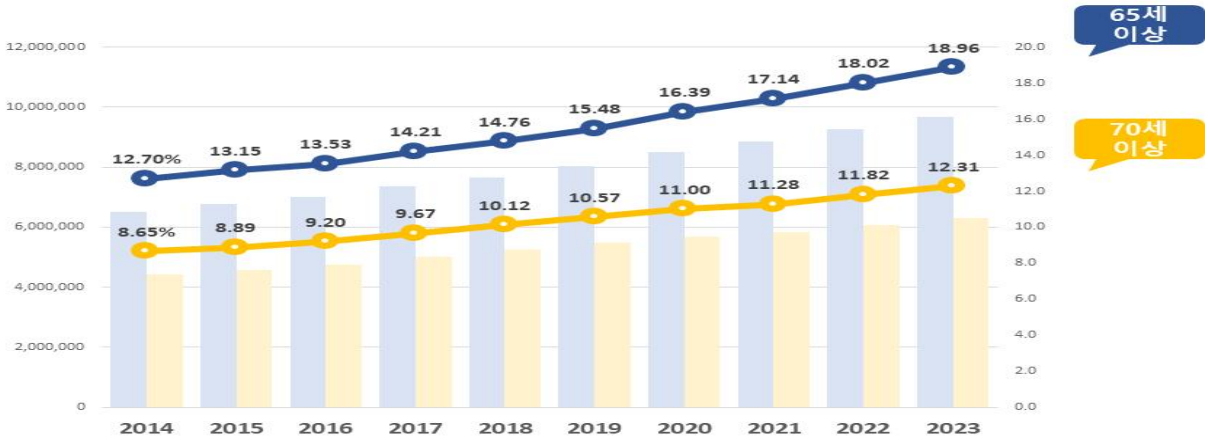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

자료: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2024.1.10.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26.10%), 경북(24.68%), 전북(24.11%), 강원(23.99%), 부산(22.63%), 충남(21.34%), 충북(20.85%), 경남(20.60%) 등 8곳은 초고령사회에 해당되고 있음.

[2022년 및 2023년 시·도별 고령 인구 현황]

(단위: 명, %)

구 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23년	173만 (18.47)	75만 (22.63)	47만 (19.64)	50만 (16.58)	23만 (16.48)	24만 (16.97)	18만 (15.92)	4만 (11.01)
‘22년	166만 (17.59)	71만 (21.47)	44만 (18.43)	46만 (15.63)	22만 (15.58)	23만 (16.09)	16만 (14.75)	4만 (10.48)

구 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3년	212만 (15.57)	37만 (23.99)	33만 (20.85)	45만 (21.34)	42만 (24.11)	47만 (26.10)	63만 (24.68)	67만 (20.60)	12만 (17.94)
‘22년	199만 (14.66)	35만 (22.77)	32만 (19.87)	44만 (20.58)	41만 (23.20)	46만 (25.17)	62만 (23.78)	64만 (19.47)	12만 (1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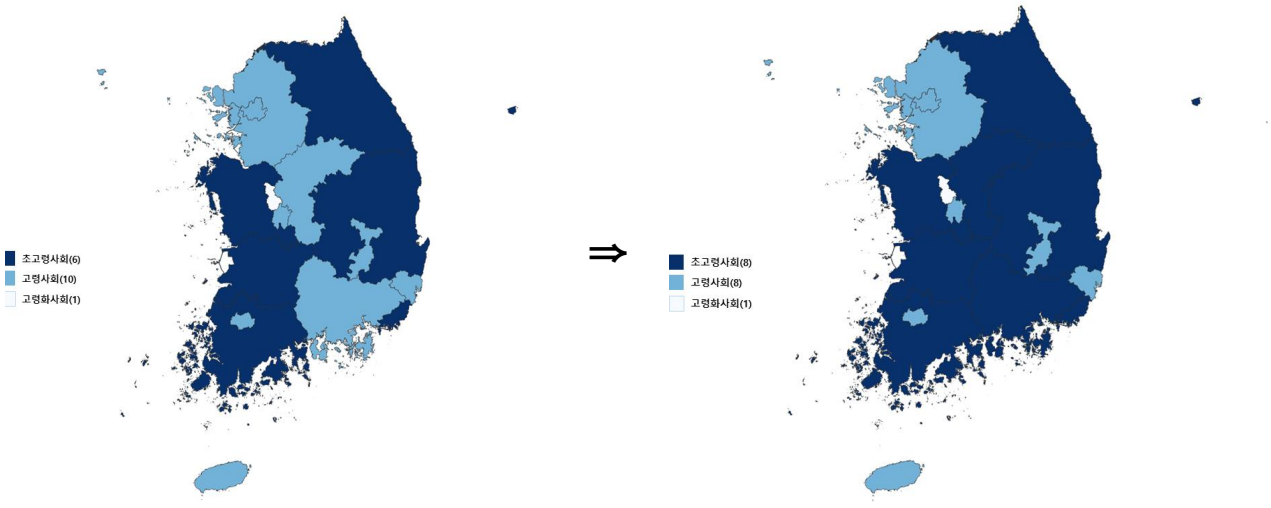

[2022년] **[2023년]**

자료: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2024.1.10.

권역별로 비교해보면, 2023년 수도권 인구는 2601만4265명(50.69%), 비수도권 인구는 2531만1064명(49.31%)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 보다 70만3201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래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인구 격차가 증가하고 있음.

[2014년~2023년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수 및 비중]

(단위: 명, %)

구 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수도권	2,536만 (49.41)	2,547만 (49.43)	2,559만 (49.50)	2,568만 (49.60)	2,580만 (49.78)	2,593만 (50.00)	2,604만 (50.24)	2,602만 (50.39)	2,599만 (50.52)	2,601만 (50.69)
비수도권	2,596만 (50.59)	2,606만 (50.57)	2,611만 (50.50)	2,610만 (50.40)	2,603만 (50.22)	2,592만 (50.00)	2,579만 (49.76)	2,562만 (49.61)	2,545만 (49.48)	2,531만 (49.31)
격 차 (수도권 - 비수도권)	△60.1만	△58.8만	△51.5만	△41.9만	△23.1만	0.2만	24.8만	40.8만	53.1만	70.3만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등 3곳, 비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외 14곳

자료: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2024.1.10.

□ 한편, 2023년 6월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160]에서는 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161]·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면서,[162] 동법 시행령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음.[163]

이에 따라 2024년 2월 1일 기준 89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으며, 동 고시는 인구감소지역을 5년마다 다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160) 2020년 12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지원하도록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일부개정안이 공포되었으나, 2023년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폐지하고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161) 특별시 제외 /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

16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③ (생략)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	개수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3개
대구	남구, 서구	2개
인천	강화군, 옹진군	2개
경기	가평군, 연천군	2개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12개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6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9개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10개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16개
경북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6개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1개
합 계		89개

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제2021-66호)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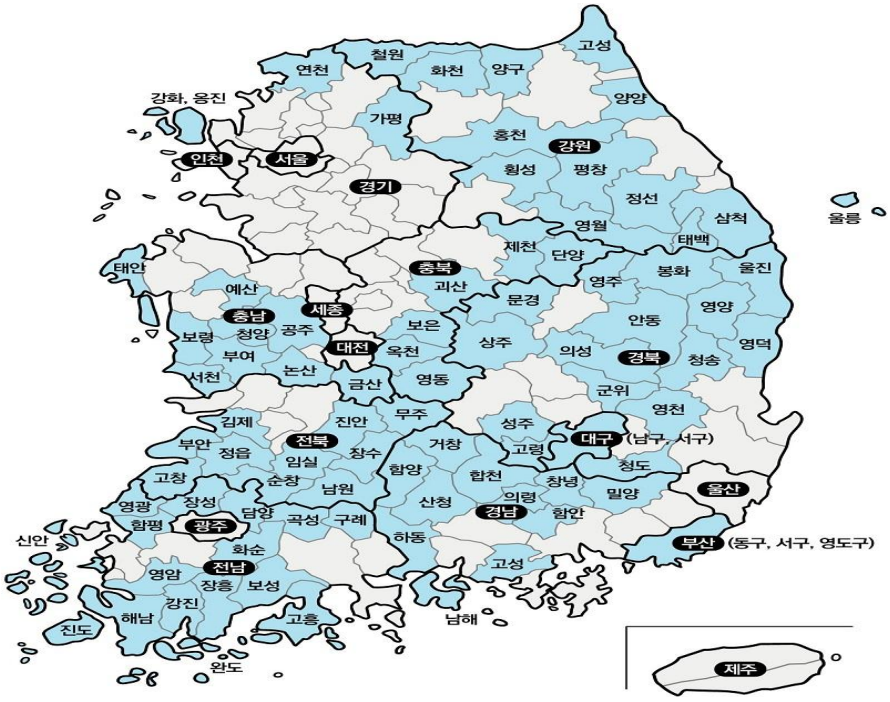

□ 9건의 개정안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164] 유입을 통하여 이들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2023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01만4265명으로 전체 인구의 50.5%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반면,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비율은 전체 인구의 9.4%에 불과하지만 국토면적은 59.5%에 해당할 정도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 및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하므로[165] 지방소멸방지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유입된 인구들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둘째, 기존 1주택자의 세컨드 홈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최근 삶의 여가 시간이 중요해지면서 일과 일상생활의 균형을 찾기 위한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재산세, 종

164)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재외동포거소신고자 포함)', '등록지 이외의 시군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월 1회 이상 방문자' 모두를 말함.

165) 「데이터로 보는 인구감소지역」, 국회도서관, 2023. 6. 7.

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주택의 추가 매입으로 인한 세부담이 큰 제약이 되고 있음.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소재 세컨드 홈 구입에 대한 세제상 특례 도입을 통해 도심지역을 벗어나 주말이나 휴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인구감소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요건 없이 세제혜택을 통해 수도권 등의 도시 인구 유입을 추진하는 것은 인구감소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인구감소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자산가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2주택자의 절세방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발 호재가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주택가격 제한이 없을 경우[166] 수도권 거주자들의 다주택 보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종합부동산세 등 기존 제도의 정책효과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셋째, 인구감소지역의 거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166) 정부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할 계획이며, 배준영·최은석의원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위임하고 있으나, 이달희·임미애·조경태 의원안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가격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음.

시행 중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등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167],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주택 신축·개수·보수 관련 비용 지원[168],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우대조치[169] 등을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들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 중에 있음.

---

16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6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개수·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169)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농어업법인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낙후지역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우대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창업,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참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관련 특례]

분야	특례 내용
산업·일자리 (1건)	국가 및 지자체는 **중소기업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판로개척**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주거·교통 (6건)	국가 및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가능
	국가 및 지자체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 개수 등 비용 지원** 가능
	지자체는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 목적으로 이전하는 개인에게 **공유지 우선 매각 허용**
	국가 및 지자체는 유치원, 학교,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 우선 지원**
	국가 및 지자체는 섬 지역 교통편의를 위해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요금 지원**
	국가 및 지자체는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어촌 등에 **교통서비스 지원 가능**
보육 (3건)	국가 및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 가능**
	국가 및 지자체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및 **무상임대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가능**
	국가 및 지자체는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어린이집에 **행·재정적 지원 가능**
의료 (4건)	국가 및 지자체는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가능**, 이를 위해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가능**
	국가 및 지자체는 지역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설치,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
	국가 및 지자체는 응급, 심혈관, 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지원 가능
	시·도지사는 의료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우선 지원 가능**
문화 (5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 설립 가능**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박물관미술관법」에도 불구, **학예사 운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국가 및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 및 이전하는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 가능**
	국가 및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 확보**를 위해 **순회 문화공연, 전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가능
	문체부장관은 문화,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적 지원 가능**

분야	특례 내용
교육 (11건)	시·도 교육감은 **유·초·중·고등학교**의 시설 및 교원 등 **통합 운영** 및 **필요한 비용 지원 가능**
	시·도 교육감은 학교 등을 **폐교**하려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
	시·군·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드는 **경비 보조 가능**
	교육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교부금법」의 교부금 지원 가능**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프로그램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방과후 과정**, 돌볼활동 등) **운영 가능**하며, **시·도 교육감**은 **행·재정적 지원 가능**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다만, 사립학교는 제외)에 대한 **설립 기준, 인가 특례 부여 가능**
	교육부장관 및 지자체장은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고, **행·재정적 지원 가능**
	국가 및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 가능**
	국가 및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지방대학에 대해 교원, 교육용 시설 등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원보다 **강화된 지원 가능**
	국가 및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대학의 **재학생·졸업생**에게 **임용, 채용 등에서 지원 강화**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내 **인구감소지역 소재 대학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그 외 (6건)	행안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 가능**
	국가 및 지자체는 **공동 시책 추진** 등을 위해 **협약 체결 가능**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게 **사증(비자)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특례 부여 가능**
	국가 및 지자체는 **노후·유휴시설의 상태 등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지자체는 **유휴시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로 그 활용범위를 확대 가능**
	기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 ※ 주민 역량강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청년·중장년·장애인·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문 의 처
02)6788-5157

2. 대토보상 과세특례 통보절차 변경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77조의2)	□ 통보절차 변경
○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이연 대상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대토보상 받은 경우	- (현행과 같음)
-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해야만 적용	-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 *사업시행자의 통보를 대토보상의 요건에서 삭제
○ 양도소득세 감면율 또는 과세이연	○ (현행과 같음)
- 양도소득세액의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 감면·과세이연한 양도소득세의 추징	○ (현행과 같음)
-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등	
○ 적용기한	○ (현행과 같음)
-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 시	

*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 개정안은 공익사업 대토보상 시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해야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요건을 공익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대토보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대토보상 받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40%를 감면하거나 과세를 이연하고 있음[170].

다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대토보상 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대토보상권을 부동산전문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공익사업 대토보상 시 양도소득세 감면율 변경 연혁]

구분	2008~2009	2010~2012	2013~2014	2015	2016~2018	2019	2020~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양도소득세 감면율	불가	불가	불가	20%	15%	15%	40%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년 기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실적은 181억원이며, 2022년 기준 과세이연을 받은 건수는 예정신고 기준 774건, 확정신고 기준 46건임.

170) 대토보상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는 2007년 말 도입 시 과세이연만 가능하였으나, 2014년 말 '세액의 20% 감면 혹은 과세이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2015년 말 '세액의 15% 감면 혹은 과세이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2019년 말 감면율을 40%로 인상하고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규정을 상향입법하였음.

[공익사업 대토보상 시 양도소득세 감면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감면액	88억원	158억원	234억원	181억원	138억원	114억원

*2024년 및 2025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공익사업용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현황]

연도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예정신고 건수	확정신고 건수
2016년	122건	12건
2017년	69건	14건
2018년	75건	6건
2019년	76건	1건
2020년	210건	3건
2021년	546건	10건
2022년	774건	46건

자료: 국세청「국세통계연보」

□ 한편, 현행법에서는 거주자가 토지 등을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대금을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 감면받는 세액 및 과세이연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토보상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171] 시행령에서는 공익사업 시행자의 대토보상명세 제출기한이 단순히 '다음 달 말

17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하 생략)

일'로 규정하여 대토보상명세 제출기한의 시작점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172]

즉, 이와 같은 모호한 제출기한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시행자가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킬 경우 대토보상을 신청한 납세자의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함.

□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의 대토보상명세의 제출을 과세특례의 요건에서 제외하여 대토보상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문 의 처
02)6788-5157

17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② 법 제7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은 자(이하 "대토보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상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윤준병·정태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정부안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7조의3)	□ 적용기한 연장
○ 요건	○ 적용기한 연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현행과 같음)
- 2024년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 2027년(정태호의원안·정부안), 2029년(윤준병의원안)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 20.7.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 임대 민간임대주택이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제외	
-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	- (현행과 같음)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준수	- (현행과 같음)
○ 양도소득세 특례	
-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70%로 적용	- (현행과 같음)

* 윤준병의원안 2024. 8. 22. 발의(의안번호 3085),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 개정안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기한을 3년간(정태호의원안·정부안) 또는 5년간(윤준병의원안)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① 국내 거주자가 ② 2024년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73]으로 등록(민간건설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등록)하여, ③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고, ④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제한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95조 상의 장기보유 공제액 관련 규정[174]에도 불구하고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구 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민간 건설임대주택
등록기한	2024년 말		2022년 말
	* 민간매입임대주택·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7.11.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제외		
임대기한	10년		
과세특례	양도소득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면 적	85m^2 이하		
임대당시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호 수	1호 이상		
임대료 상한 요건	5%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제외)

17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74)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 [표 1] 보유기간별 공제율 :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1년 2%p, 최대 15년 30% 한도로 적용

동 조항은 세제혜택을 통해 민간의 공급유인을 강화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고,

지난 2020년 정기국회에서 동 조항은, 2020년 7월 11일 이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나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시 적용되는 소득은 해당 주택을 임대한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하며,

2022년이던 민간매입임대주택의 등록기한을 2년 단축하여 2020년 말까지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주택공급의 순증효과를 유발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한 바 있음.[175]

2022년 개정에서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한이 10년인 점을 고려하여 임대기한별 과세특례(8년 50%, 10년 70%)를 10년 70%의 일원화하면서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음.

175) 당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① 등록임대주택 유형 중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을 폐지하고, ② 신규 등록임대주택을 최소 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연장하며, ③ 등록 임대사업자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관련 개편사항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국회 정기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반영된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었음.
참고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부동산 대책)」에는 이 외에도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 ㉯ 법인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적용, ㉰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다주택자, 법인 등 취득세율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연혁]

구분	2014.1.1. 이후	2015.1.1. 이후	2016.1.1. 이후	2021.1.1. 이후	2023.1.1. ~2024.12.31.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상 준공공임대주택	좌동	「민특법」 상 기업형(현행 공공지원) 임대주택 또는 준공공(현행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민특법」 상 민간건설임대주택	좌동
임대기간	10년 이상	8년 이상	8년 이상	좌동	10년 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	50% (단, 10년 이상 60%)	50% (단, 10년 이상 70%)	좌동	70%

□ 개정안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또는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임대주택공급의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민간의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갱신계약 거절·보증금 미반환 등의 주거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임대등록기간 동안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등을 적용받는 등록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된다면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에 따라 각각 3년과 5년으로 제안된 조세특례 적용기한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할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할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7

4.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과세특례 연장 등 (엄태영·윤준병·최은석·정태호의원안, 정부안)

개 정 안	개정안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9)	□ 적용기한 연장 등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로 변경하여 대상사업자 추가 (최은석의원안)
-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주택건설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	
-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 감면	
	-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추가 (최은석의원안)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 신청	
○ 사후 관리	○ 대상자 추가
-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 (현행과 같음)
-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이자상당가산액 포함)을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 (현행과 같음)
	-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최은석의원안)
○ 적용기한	○ 적용기한 연장
- 2024. 12. 31.	- 2026. 12. 31. (엄태영의원안) - 2027. 12. 31. (최은석의원안·정부안) - 2029. 12. 31. (윤준병의원안)

* 엄태영의원안 2024. 7. 22. 발의(의안번호 2072), 윤준병의원안 2024. 8. 22. 발의(의안번호 3085), 최은석의원안 2024. 10. 16. 발의(의안번호 4737),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 5건의 개정안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말에서 2026년 말(엄태영의원안)이나 2027년 말(최은석의원안·정부안) 또는 2029년 말(최은석의원안)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최은석의원안*은 동 과세특례를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로 변경하고,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동 특례의 대상으로 추가시키고 있음.

* 최은석의원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

가.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176]와 공공매입임대주택[177]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부터 3년 이내 해당 토지에

---

176)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

177)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세액 상당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 동 제도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을 보면, 제도가 도입된 2022년도 11억원에서 2023년도에는 10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4년 및 2025년에는 감면실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

(단위: 건수, 억원)

	2022	2023	2024	2025
소득세	11	10	2	2

* 2024년 및 2025년은 전망치임.
자료: 각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2029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신규 공급을 촉진하여 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됨.

토지 소유자 양도세 감면을 통한 민간신축 매입약정 사업을 위한 토지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해당 사업의 민간사업자 참여 활성화를 통해 우량 입지의 매입임대주택 확보 가능 및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용 절감이 가능한 측면이 있음.

특히, 정부에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신축 매입약정 주택공급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므로 토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유인을 계속 제공할 필요가 있음.

[신축 매입약정 주택공급 계획안]

(단위 : 만호)

구분	’23	’24	‘25	‘26	‘27	합계	평균
공급주택수	3.5	3.5	4.8	6.1	3.5	21.4	4.3

자료: 국토교통부

다만, 동 조세특례조항의 사후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세액 상당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속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토지 양도자”에게 감면한 세액 상당액을 토지 양수자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추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세액감면의 혜택이 토지 매입가격 하락 및 사업비 절감을 통해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귀착되고, 주택건설 및 공공주택사업자에게의 양도의 지연 발생시 귀책사유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있으므로, “토지 양도자”에게 감면한 세액 상당액을 토지 양수자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추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한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나.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양도 추가

□ 최은석의원안은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으로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동 과세특례를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로 변경하고,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부지를 매각한 경우 양도세를 10%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2024년 8월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모델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였음.[178]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리츠 등 법인이 단지별 100세대 이상 대규모로 건설· 공급하고,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모델로서 규제와 지원 정도에 따라 ①자율형, ②준자율형, ③지원형으로 구분됨.

개정안의 전제가 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79]은 위와 같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해 최소 20년 이상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의

178) 국토교통부,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2024. 8. 28.

17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574)

유형을 공적의무와 공적지원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임대료 규제, 임차인 자격,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개정안은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부지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다만,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의 정의 등 법적 근거를 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후에 동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157

5.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박대출·최은석·이인선·정태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안 제98조의9) ○ 준공후미분양주택 요건 - 이 법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취득 (박대출의원안) 이 법 시행일(공포 후 1년)부터 3년 이내에 취득 (최은석의원안) 2024. 8. 28.부터 2025. 12. 31.까지 기간 중에 취득하고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 (이인선의원안) 2024. 1. 10.부터 2025. 12. 31.까지 기간 중에 취득 (정태호의원안·정부안)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박대출·최은석의원안·정부안)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기존 1주택 양도 시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 (이인선의원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의 50% 공제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박대출·최은석·정태호의원안·정부안) - 1세대가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과 준공후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 공제

* 박대출의원안 2024. 6. 21. 발의(의안번호 783), 최은석의원안 2024. 8. 2. 발의(의안번호 539), 이인선의원안 2024. 10. 18. 발의(의안번호 4769),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 4건의 개정안(박대출·최은석·정태호의원안·정부안)은 1세대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유지시키는 내용임.

우선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박대출의원안)이거나 3년 이내(최은석의원안) 또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정태호의원안·정부안) ② 수도권 밖에 소재하며, ③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준공후미분양주택(이하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기존주택 양도 시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180]를 적용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는 1세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1주택과 준공후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보다 높은 금액(12억원)

---

180)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을 공제하여 주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제1호[181]를 적용하려는 것임.

반면, 이인선의원안은 거주자가 2024. 8. 28.부터 2025. 12. 31.까지 일정 요건을 갖춘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공제해주려는 것임.

□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등이 비수도권의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여러 채 취득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시켜 줌으로써, 준공후미분양주택에 대한 투자심리를 촉진하여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현재 심화되고 있는 비수도권 미분양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흔히 악성 미분양이라 일컬어지는 비수도권의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말 기준 6,226호에서 2024년 6월말 기준 11,965호로 1년 6개월만에 약 92.2% 급증[182]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

18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22. 12. 31., 2023. 4. 1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182)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미분양주택현황보고 - 공사완료후 미분양현황, 2024.1.31.
한편, 같은 기간 수도권 미분양주택수도 1,292건에서 2,891건으로 123.8%로 증가함.

때, 비수도권 준공후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둘째, 자본시장 내 여유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최근 대형 건설사의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이 많은 논란 끝에 개시된 것을 필두로 건설사들의 자금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2024년 1분기 기준 비은행권의 건설업 및 부동산업 기업대출 연체율은 7.42%, 5.86%로, 2017년 4분기 대비 7배 이상 증가하는 가장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건설사들의 자금난 문제가 금융권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임.

[금융업권별 건설 및 부동산업 기업대출 연체율]

(단위: %)

구분	건설업		부동산업	
	은행	비은행	은행	비은행
2017. 4/4	0.68	0.97	0.20	0.74
2018. 1/4	0.85	1.04	0.22	0.82
2/4	0.65	1.10	0.19	0.88
3/4	0.67	1.54	0.22	1.01
4/4	0.65	1.82	0.23	1.12
2019. 1/4	0.60	2.40	0.24	1.42
2/4	0.63	2.38	0.20	1.50
3/4	0.64	2.61	0.19	1.58
4/4	0.42	2.28	0.17	1.44
2020. 1/4	0.46	2.72	0.21	1.69
2/4	0.31	2.55	0.17	1.70
3/4	0.27	2.63	0.14	1.64
4/4	0.35	2.19	0.12	1.34
2021. 1/4	0.34	2.58	0.11	1.44
2/4	0.27	2.24	0.10	1.25
3/4	0.26	2.12	0.10	1.25
4/4	0.25	1.68	0.08	0.97
2022. 1/4	0.25	1.79	0.09	1.31
2/4	0.23	1.65	0.08	1.40
3/4	0.27	1.77	0.10	1.55
4/4	0.31	2.00	0.11	1.74
2023. 1/4	0.47	3.38	0.15	3.15
2/4	0.51	4.17	0.12	3.46
3/4	0.58	4.82	0.15	4.00
4/4	0.60	4.85	0.16	3.89
2024. 1/4	1.01	7.42	0.24	5.86

1)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2) 은행 : 국내은행 기준
3) 비은행 :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합산 기준
* 자료: 한국은행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 문제 등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이루어진다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들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은 과거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목적에서 미분양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수차례 도입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반복된 세제혜택 지원은 건설사 및 부동산 PF 등으로 하여금 향후 미분양주택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세제혜택 등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형성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거주자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현황]

구분	감면 대상		해당 기간	감 면
제98조	전국	미분양 국민주택을 해당기간에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임대한 후 양도	1995.11.1.~ 1997.12.31. 1998.3.1.~ 1998.12.31.	양도소득세율 20% 적용 혹은 종합소득세 적용 중 선택
제98조의2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을 해당기간에 취득하여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양도	2008.11.3.~ 2010.12.31.	기본세율 및 완화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일반주택 양도시 미분양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구분	감면 대상		해당 기간	감 면
제98조의3	서울 이외	미분양주택을 해당기간에 취득하여 양도	2009.2.12.~2010.2.11.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양도소득세 10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지역 60%)
				취득일부터 5년 이후 양도: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1] 전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제외 (수도권과밀억제지역 60%)
				공통: 기본세율 및 완화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일반주택 양도 시 미분양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제98조의5	수도권 밖	2010.2.11. 기준 미분양주택을 해당기간에 취득하여 양도	2010.5.14.~2011.4.30.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분양가격인하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차등 감면[2]
				취득일부터 5년 이후 양도: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분양가격인하율에 따른 감면율[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제외
				공통: 기본세율 및 완화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일반주택 양도 시 미분양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제98조의6	전국	2011.3.29. 기준 준공후미분양주택 중 해당기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양도 (①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한 주택을 취득하거나, ②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만 적용)	2011.3.29.~2011.12.31.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양도소득세 50% 감면 (①의 경우만 해당)
				취득일부터 5년 이후 양도: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제외
				공통: 기본세율 및 완화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일반주택 양도 시 미분양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제98조의7	전국	2012.9.24. 기준 취득가액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해당기간에 취득하여 양도	2012.9.24.~2012.12.31.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양도소득세 100% 감면
				취득일부터 5년 이후 양도: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제외
				공통: 일반주택 양도 시 미분양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제98조의8	전국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35㎡ 이하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기간에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2015.1.1.~2015.12.31.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제외
				일반주택 양도 시 미분양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1) 양도소득금액을 취득일,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양도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
2) 분양가격인하율이 0~10%인 경우 감면율 60%, 분양가격인하율이 10~20%인 경우 감면율 80%, 분양가격인하율이 20% 초과하는 경우 감면율 100%

자료: 현행법 조문 재구성

둘째, 단기적으로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의 적절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개정안에 따른 과세특례가 준공후미분양주택 문제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그 혜택이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었거나 해당 지역의 입주수요 대비 과도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 발생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에 대한 주택수요자들의 매수심리를 촉발하기에 충분한 유인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면이 있음.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183], 개정안은 해당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미분양문제 해소를 위한 시장 여

183)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유자금의 단기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개정안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 보유하고 있는 기존주택을 처분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동 세제혜택을 누리기 위해 가까운 미래에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준공후미분양주택을 보유하고 기존주택을 먼저 처분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184]

① 준공후미분양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요건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준공후미분양주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185]

---

184)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개정안으로 인해 소득세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 필요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예상 취득 규모, 기존 주택 보유 현황 자료 등이 부재해 추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185) 통상 준공후미분양주택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8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후 2011년 3월 29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법 제98조의6제1항제1호의 주택은 최초 임대 개시 시) 6억원을 초과하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② 개정안은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요건으로 전용면적·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용면적·취득가액은 구체적 과세대상을 확정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기 보다는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7

6.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정태호의원안·정부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제99조의14 신설) ○ 적용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 적용요건 -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 -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양도 - 부동산 양도금액을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에 납입 ○ 과세특례 - 부동산 양도소득세액에서 연금계좌납입액(1억원 한도)의 10% 세액공제 ○ 사후관리 -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시 세액공제액 추징 ○ 적용기한 - 2027년 12월 31일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 개정안은 일정요건을 갖춘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금액을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연금계좌납입액의 10%를 세액공제하려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동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이거나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하며, 해당 부동산은 보유기간[186]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어야 함.

186) 정부는 대통령령에서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을 10년 이상일 것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힘.

□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초고령화 및 인구구조 역전 현상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급속하게 진행 중임.

세계 인구 중 고령인구(65세 이상) 구성비는 2024년 10.2%에서 2072년 20.3%로 증가할 전망인 반면, 한국 인구 중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4년 19.2%에서 2072년 47.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2024~2072년 기간 중 세계와 한국의 유소년인구(0~14세) 구성비는 각각 6.5%p, 4.0%p 감소하고,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각각 3.6%p, 24.4%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나라는 세계 인구구조에 비해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임.

[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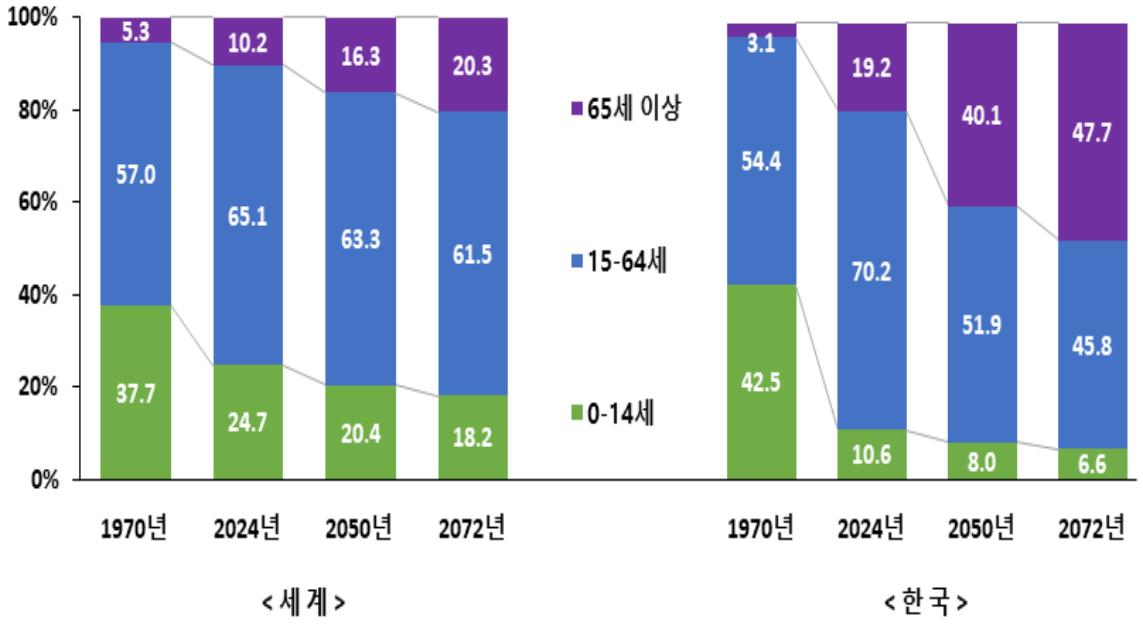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024.9.23.

□ 개정안은 이러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연금화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우리나라 60세 이상 가구주의 전체 평균 자산(5억4836만원) 중 부동산(4억3056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52%인 반면, 금융자산은 약 17.98%(9862만원)에 불과하며, 전·월세 보증금을 뺀 순수 저축액의 비중은 14.72%(8072만원)로 더 떨어지게 됨.[187]

[자산 유형별 보유액 및 구성비]

(단위: 만원, %)

		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구성비	부동산	거주주택	기타
전체		52,727	12,587	8,840	3,747	40,140	76.1	37,677	22,938	2,463
가구주연령대	39세이하	33,615	13,347	6,073	7,275	20,267	60.3	18,001	12,518	2,267
	40~49세	56,122	14,746	9,521	5,225	41,376	73.7	38,325	25,930	3,051
	50~59세	60,452	14,713	11,597	3,116	45,739	75.7	42,726	26,026	3,013
	60세이상	54,836	9,862	8,072	1,791	44,974	82.0	43,056	24,163	1,918
가구주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56,907	16,190	10,574	5,616	40,716	71.5	38,746	25,615	1,970
	임시일용근로자	23,152	6,168	4,093	2,074	16,984	73.4	16,176	11,574	808
	자영업자	66,432	12,303	9,805	2,498	54,129	81.5	48,013	23,149	6,116
	기타(무직 등)	46,278	8,714	6,780	1,934	37,565	81.2	36,830	23,291	735

자료: 통계청,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23.12.7.

187) 통계청,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23.12.7.

또한,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이 불충분하여 공적·사적 연금 통합 소득대체율이 OECD 권고 수준보다 18%p~28%p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188] 공적연금 재정부담 완화와 국민 개개인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부동산의 연금화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국가별 소득대체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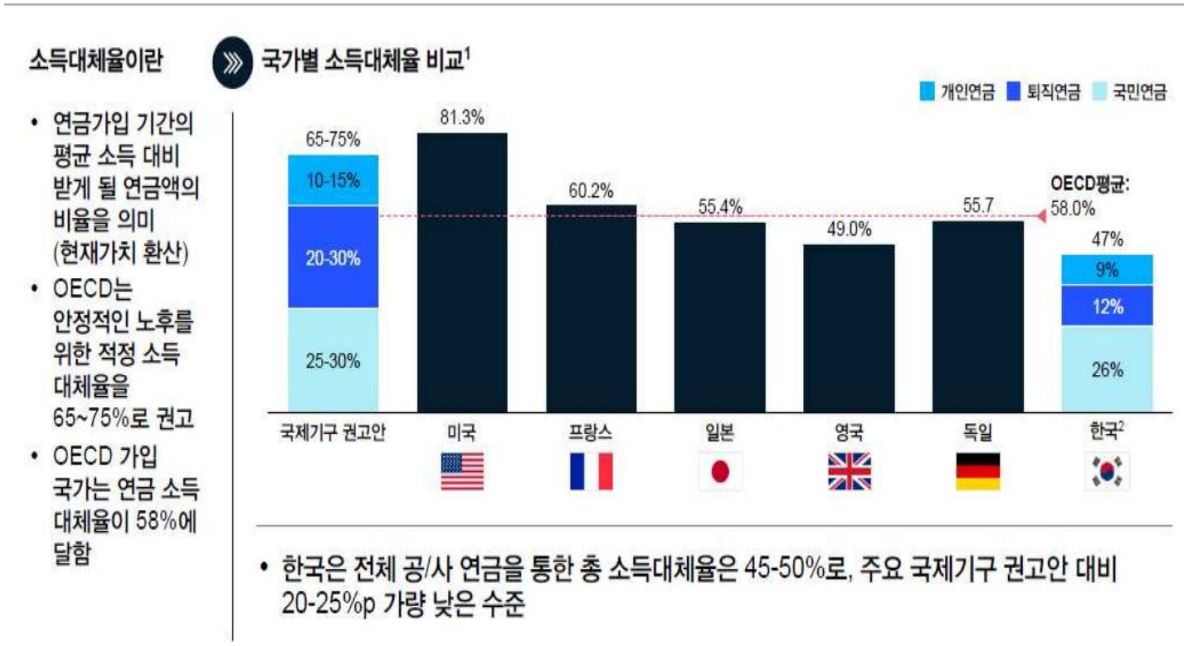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협회, 맥킨지(McKinsey) 글로벌 보장격차 연구보고서 발표 및 소득대체율 분석, 2023.7.11.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과세특례의 대상자를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대부분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189] 과

188) 연금 보장격차는 퇴직 후 합리적인 생활 수준(OECD 권고 소득대체율 65~75%)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현재가치와 현재 예상되는 연금 지급액 간 차이를 말하며, 맥킨지는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을 약 47%로 추산했는데, 이는 OECD 권고치 대비 18~28%p, OECD 평균(58.0%) 대비 11%p 낮은 결과임

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둘째, 개정안에서는 과세특례의 적용요건 중 하나로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대통령령에서 보유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는데,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과세특례 적용여부에 관한 주요한 요건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7

189)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호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법인세 분야>

1. 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조세특례제한법 상 연구개발의 정의 (제2조제1항제11호)	□ 조세특례제한법 상 연구개발의 정의 구체화
○ 정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 정의: 과학적·기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 제외되는 활동(대통령령)	○ 제외되는 활동 추가(대통령령 개정사항)
-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탐사 활동 -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탐사 활동 -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 상용화, 사업화된 제품·기술·서비스·설계·디자인 등을 단순 보완·변형·개선하는 활동

*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 2건의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연구개발”의 정의를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단순한 활동을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임.

□ 현행법 제2조는 연구개발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하고 있음.[190]

위와 같은 기준에 충족한 연구개발에 대하여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제10조의2)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됨.

한편, 현행법령의 조문은 국제표준으로 인정되는 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Frascati Manual)[191]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개발의 정의를 준용하여 그 범위를 설정하였으나,

프라스카티 매뉴얼에서는 연구개발을 '지식의 집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리고 지식을 통한 새로운 응용을 창출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① 신규성(novel), ② 창의성(creative), ③ 불확실성(uncertain), ④ 체계성(systematic), ⑤

19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정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탐사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8.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9.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191) 프라스카티 매뉴얼이란 1963년 6월 OECD가 각국 연구개발(R&D) 통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탈리아 프라스카티의 빌라 팔치오네리(Villa Falcioneri)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물로 발간한 '연구개발조사를 위한 표준지침(Proposed Standard Practice for Surveys of Research and Development)'을 의미하며, 연구개발의 개념과 정의에 대하여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음.

이전가능성/재현 가능성(transferable/reproducible)의 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어[192]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과는 상이한 점이 존재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의 정의에 맞추어 현행법에 '체계성'과 '창의성'을 추가함으로써 국제 표준에 부합하고 연구개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5

192) '프라스카티 매뉴얼 2015 - 연구개발 자료수집과 보고에 관한 지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11.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감면율 정비 등 (윤준병의원안, 정부안, 엄태영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조)

○ 적용대상: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유형별 감면율

구분		기본 감면		추가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중소기업		-	5년 50%*	상시 근로자 증가율 × 50%
	청년·생계형**	5년 50%	5년 100%	
벤처기업		5년 50%*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5년 50%*		
창업 보육 센터사업자		5년 50%		

* 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2024. 12. 31.): 3년 75%, 2년 50%

** 생계형 창업지원 대상매출액 기준: 연 8,000만원 이하

○ <신 설>

개정안

□ 감면율 정비, 감면한도 신설, 적용기한 연장 등

○ (현행과 같음)

○ 유형별 감면율

- 수도권 감면율 축소(2026. 1. 1. 이후 창업부터 적용),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 등 감면율 정비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구분		기본 감면			추가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	
창업 중소기업		-	5년 25%	5년 50%	상시 근로자 증가율 × 100%
	청년·생계형	5년 50%	5년 75%	5년 100%	
벤처기업		5년 50%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5년 50%			
창업 보육 센터사업자		5년 50%			

* 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 적용기한 도래 종료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 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 적용기한 연장:
  ~2026. 12. 31. (엄태영의원안),
  ~2027. 12. 31. (김주영의원안),
  ~2029. 12. 31. (윤준병의원안),

○ 감면한도: 연간 5억원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적용기한 - 2024. 12. 31.	○ 적용기한 - 2026. 12. 31 (엄태영의원안) - 2027. 12. 31 (정부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2029. 12. 31 (윤준병의원안) ○ 시행일: 2025. 1. 1. (윤준병의원안, 정부안, 엄태영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적용례: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은 법 시행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또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윤준병의원안 2024. 8. 22. 발의(의안번호 3085),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엄태영의원안 2024. 10. 24. 발의(의안번호 4875), 김주영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29),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 5건의 개정안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감면율 정비 또는 감면한도의 설정을 통해 세제지원의 정책적 합리성을 제고하거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안은 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을 포함하여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안은 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을 포함하여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안은 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을 포함하여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부안·정태호의원안은 지역균형발전 및 과세형평제고를 위해 ①과밀억제권역 밖인 수도권 내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을 25%p 축소하고,[193]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율을 상향하며(고용증가율의 50%→100%), ②감면한도를 연간 5억원으로 신규 설정하고, ③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을 제외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창업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지 여부 및 기업유형 등에 따라 최초 소득 발생 후 5년간 50~100%의 감면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또한,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전년대비 증가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증가율 × 50%'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추가적으로 적용함.

동 제도는 1994년에 도입된 이후 기업의 형태(창업 보육, 벤처) 및 업종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신성장서비스업과 고용유발에 대한 감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되어 왔음.

또한, 지방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중소기업의 창업에 초점을 맞추되, 벤처·에너지신기술·창업보육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대상이 추가되었음.

193) 개정안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축소하지 않고, 수도권 밖 창업중소기업과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주요 개정연혁]

개정연도	개정내용
1994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설
1998년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
1999년	일몰 신설(2003.12.31까지)
2004년	감면기간 축소(6년 → 4년), 일몰 연장(2006.12.31까지)
2007년	일몰 연장(2009.12.31까지)
2010년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추가, 일몰 연장(2012.12.31까지)
2013년	감면기간 연장(4년 → 5년), 업종 추가(사회복지 서비스업) 일몰 연장(2015.12.31까지)
2016년	일몰 연장(2018.12.31까지)
2017년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율 인상
2018년	신성장서비스업 감면율 인상, 고용증가시 추가감면 적용 등 청년·생계형 감면율 인상, 일몰 연장(2021. 12. 31까지)
2019년	감면 대상 업종 변경
2021년	생계형 창업기업 매출액 기준 연 4,800만원 → 연 8,000만원 일몰 연장(2024.12.31.까지)

한편, 2018년부터는 청년창업 및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2022년부터는 8,000만원 이하) 생계형 창업에 대해서 일반 창업중소기업에 비해 감면율을 우대하여 적용 중임.

[창업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내용]

구 분	일반 창업	청년·생계형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년간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5년간 50% 감면	5년간 100% 감면

또한, 신성장서비스업[194]에 대한 우대감면은 2018년 세법개정으로

19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⑫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서비스업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도입되었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75%와 이후 2년간 50%의 세액감면율을 적용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2021년 4,864억원에서 2023년 7,629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 및 2025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연도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소득세	2,290	3,519	4,841	5,806	6,189
법인세	2,574	2,561	2,788	2,640	2,764
소계	4,864	6,080	7,629	8,446	8,953

주)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본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제10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가. 적용기한 연장 (윤준병의원안, 정부안, 엄태영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엄태영의원안은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우대감면을 포함하여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김주영의원안은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우대감면을 포함하여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윤준병의원안은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우대감면을 포함하여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정부안·정태호의원안은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우대감면을 제외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적용기한 연장 관련 개정안 요약]

<table>
<tr><th>구분</th><th>엄태영
의원안</th><th>김주영
의원안</th><th>윤준병
의원안</th><th>정부안,
정태호
의원안</th></tr>
<tr><td>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 외)</td><td rowspan="2">2년 연장</td><td rowspan="2">3년 연장</td><td rowspan="2">5년 연장</td><td>3년 연장</td></tr>
<tr><td>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td><td>적용기한
도래 종료</td></tr>
</table>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창업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해주고 창업 초기의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음. 국가의 경제발전과 미래 성장을 고려할 때 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나, 창업 5년 이내 폐업률이

약 7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보임. .

[2021년 기준 신생기업 생존율]

(단위: %)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4.1	54.2	46.3	38.8	34.3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특히 동 제도는 「2024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법인세 실효세율을 낮춰 기업의 법인의 사업소득과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창업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의 사회진출에 기여할 수 있음.

2022년 말 기준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3.3만개사는 전년 대비 8.1%(5.6만명) 늘어난 74.6만 명을 고용하여, 같은 기간 전체기업의 고용규모가 2.4%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그리고 같은 기간 전체기업의 청년 고용이 1.2% 감소한 것과 달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청년 고용은 3.6% 성장하였음.[195]

셋째,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우대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나갈 수 있음.

195)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고용증가율, 전체기업 대비 높아', 2023. 3.

서비스 산업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취업자 비중이 전체 산업의 71.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의 중요한 부분임.[196] 그러나 서비스업의 2021년 기준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5.8% 수준이고 OECD 36개국 중 27위로 낮은 수준임.[197]

따라서 우대감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신성장서비스업 기업들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세액감면의 특성상 소득이 큰 기업에게 혜택이 증가하여 과세형평 문제가 있을 수 있음. 그리고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초기에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으므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조세혜택을 받는 5년 내에 다시 소득이 없게 되는 경우 세액감면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적용기한 연장으로 향후 5년 동안 매년 평균 8,953억 4,000만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수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198]

셋째,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우대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제조업에 대한 역차별이 지속되어 업종 간 형평성이 저해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7년 대비 2022년에 서비스업 창업감면액이 536% 증가하고 창업감면기업수가 302% 증가한 점을 고려

196) 공공데이터 포털, 기획재정부_서비스산업 주요 지표

197)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 동향」, 2024. 4.

198) 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2024. 9.

할 때, 그간 서비스업 창업 활성화의 목표가 일정 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세제지원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서비스업 세액감면 변동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17년	2022년	증가율
창업감면액	전체	810	1,672	106
	서비스업	66	419	536
창업감면기업수	전체	5,090	10,080	98
	서비스업	688	2,769	302

자료: 기획재정부

넷째, 동 제도를 활용하여 부당하게 세액감면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감면율 50%인 지역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함에도 감면율 100%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하고 부당 감면받은 탈루 사례를 국세청이 조사한바 있음.

또한, 동일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자 폐업 후에 재개업한 사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사례,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 후 본인 명의로 재개업한 사례 등 창업이 아님에도 창업으로 위장하여 부당 감면을 받은 사례가 있었음.[199]

□ 한편,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안마다 2년, 3년 또는

199)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시청자 속여 돈 번 '벗방' 기획사, 국세청이 찾아냈다', 2024. 4.

5년의 기간을 제안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나. 감면율 정비 및 감면한도 설정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2건의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밖인 수도권 내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을 축소하고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하는 한편, 감면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첫째, 과밀억제권역 밖인 수도권 내에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을 수도권 밖에 위치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비해 축소함으로써, 비교적 양호한 수도권의 창업여건을 고려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차등화할 수 있음.

둘째, 고용증대 추가 감면율을 상향하여 창업중소기업들이 고용을 확대하도록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2024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감면을 통해 절감한 지출액을 추가적인 고용에 사용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법인사업자의 경우 21.1%, 개인사업자의 경우 68.8% 사업자가 그렇다고 답변했음.

셋째, 감면한도를 신규로 설정하여 담세력에 따른 과세형평을 도모할 수 있으며, 세액감면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법인세의 실효세율과 창업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200] 수도권 내 기업 감면율 축소가 수도

권 내 창업을 억제하고 수도권 밖의 창업을 촉진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둘째, 개정안은 일반적인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밖을 차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차등화하지 않아 제도의 일관성과 창업중소기업 간 형평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모든 유형에 대해 지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201]

셋째, 수도권 내 기업 감면율 축소에 따라 해당 창업기업들의 실효세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효세율이 높아져 창업기업의 소득과 생존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라 감면율이 축소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 내 지역'은 대부분 경기도에 속하는데 법인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신고법인 중 30.7%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신고금액 중 39.5%가 경기도 소재임.

200) KDI,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24. 9.

201) KDI,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24. 9.

[2022년 법인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법인소재지별	신고법인수		신고금액	
	수	비중	금액	비중
서 울	842	8.4%	17,333	10.4%
인 천	321	3.2%	6,284	3.8%
경 기	3,095	**30.7%**	66,044	**39.5%**
강 원	286	2.8%	2,072	1.2%
대 전	432	4.3%	3,999	2.4%
충 북	448	4.4%	7,317	4.4%
충 남	663	6.6%	12,412	7.4%
세 종	109	1.1%	985	0.6%
광 주	317	3.1%	4,203	2.5%
전 북	459	4.6%	6,213	3.7%
전 남	434	4.3%	3,457	2.1%
대 구	347	3.4%	4,416	2.6%
경 북	596	5.9%	8,612	5.2%
부 산	693	6.9%	9,537	5.7%
울 산	174	1.7%	1,758	1.1%
경 남	710	7.0%	11,333	6.8%
제 주	154	1.5%	1,206	0.7%
합 계	10,080	100.0%	167,182	100.0%

자료: 국세통계포털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창업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수도권에서 창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도권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하면 추후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기업들은 더 높은 실효세율에 직면하게 되어 경영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202]

넷째, 감면한도 설정과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2)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법인세 실효세율이 1%p 상승할 경우, 다음 기에 생존을 유지하는 법인은 △5%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수도권 기업 이전 세액감면 제도(법 제63조 및 제63조의2)[203]는 동 제도보다 더 높은 세액감면율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감면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5

203)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해 7년간 100% 세액감면과 이후 3년 간 50%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함.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요

□ 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R&D 세액공제”)는 ① 일반 R&D 세액공제와 ②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③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로 구분되어 있음.

일반 R&D 세액공제는 기업이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유리한 계산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당기분 방식’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0~2%, 중견기업은 8~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증가분 방식’은 직전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대기업은 25%,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는 ‘당기분 방식’이 적용되는데,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신성장·원천기술[204]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비의 20~30%를 공제하고, 중소

---

204)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본문 생략)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30~40%를 공제하며, 코스닥상장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5~40%를 공제함.

국가전략기술은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하고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205]로서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이 10%p 높은 수준이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R&D 비용의 30~40%를 공제받고, 중소기업은 40~50%를 공제받음.

[R&D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본			추가 [1]
	대	중견	중소	
일반 (당기분 방식)	최대 2	8~15 [2]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40	최대 10

주 1)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2) (중소기업 졸업 후 ~3년)15%, (중소기업 졸업 후 4~5년)10%, (중소기업 졸업 후 6년~)8%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등 기존 10개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신설되었음.

20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본문, 제1호 생략)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전후 비교]

종 전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① R&D 설비(1/3/7) ② 생산성 향상 시설(1/3/7)* *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 ③ 안전 설비(1/5/10) ④ 에너지절약 시설(1/3/7) ⑤ 환경보전 시설(3/5/10) ⑥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⑨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⑩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 ※ 괄호: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 단, 토지와 건축물 등 제외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되며, 세액공제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인데 토지와 건축물 등은 제외됨. 또한, 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과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투자액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임. '추가공제 금액'은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제됨.

일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율이 대기업 1%·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이며,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3%·중견기업 6%·중소기업 1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15%·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임.

일반 시설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율은 3%이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율은 4%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25	4

주) 추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한편, 그동안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었으나,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법률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 직접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되었음.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술 현황]

구분	분야	기술
미래형자동차	자율 주행차	자율주행 기록 및 사고원인 규명 기술,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 등
	전기 구동차	전기차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등
지능정보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기술, , 언어이해 기술 등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IoT 네트워크 기술, IoT 플랫폼 기술 등
	클라우드(Cloud)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술, PaaS(Platform as a Service) 기술 등
	빅데이터(Big Data)	빅데이터 수집·정제·저장 및 처리기술,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 등
	착용형 스마트기기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유연한 양·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제조기술 등
	IT 융합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등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 등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 제작 및 활용 기술 등
	스마트 물류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등
차세대소프트웨어 (SW) 및 보안	기반 소프트웨어(SW)	융합서비스·제품의 소프트웨어 내재화 기술 등
	융합보안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Intelligence) 대응기술 등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가상현실(VR) 콘텐츠 기술 등
	문화콘텐츠	게임 콘텐츠 제작기술 등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지능형 반도체·센서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제조 기술 등
	반도체 등 소재·부품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등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9인치 이상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패널 기능개선 및 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등
	3D프린팅	3D프린팅 소재·장비 개발 및 제조기술 등
	AR 디바이스	AR 디바이스 제조기술 등
차세대 방송통신	5세대(5G) 및 6세대 (6G)이동통신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등
	UHD (Ultra-High Definition)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등
바이오·헬스	바이오·화합물의약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등
	의료기기·헬스케어	기능 융합형 초음파 영상기술 등
	바이오 농수산·식품	비가열 및 고온·고압 전처리 기술 등
	바이오 화학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등
에너지·환경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 등
	발전시스템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제작·조립·시험 평가기술 등
	원자력	원자로 냉각재 펌프 설계 기술 등
	오염방지·자원순환	미세먼지 제거 및 고정밀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 측정 기술 등

구분	분야	기술
융복합소재	고기능섬유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제조기술 등
	초경량 금속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등
	하이퍼 플라스틱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등
	구리합금	고강도 구리합금 설계・제조기술 등
	특수강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등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고기능 불소계 실리콘 제조・가공 기술 등
	희소금속・소재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등
로봇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고청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등
	안전로봇	감시경계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주변환경 센싱 기술, 실내외 전천후 위치인식 및 주행 기술 등
	의료 및 생활 로봇	수술, 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등
	로봇공통	실내외 소음환경에서의 대화신호 추출 기술 등
항공・우주	무인이동체	무인기 지능형 자율비행 제어 시스템 기술 등
	우주	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등
첨단 소재・부품・장비	첨단 소재	고기능성 알루미늄 도금강판 제조 기술 등
	첨단 부품	고정밀 롤러베어링 및 볼베어링 설계・제조 기술 등
	첨단 장비	첨단 머시닝센터 설계・제조기술 등
탄소중립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등
	수소	부생수소 생산기술 등
	신재생에너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스택・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등
	산업공정	함수소가스 활용 고로취입기술 등
	에너지효율・수송	지능형 전력계통(Smart Grid) 설계 및 제조기술 등
방위산업	방산장비	추진체계 기술 등
	전투지원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2024. 2. 29. 개정)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 현황]

분야	기술
반도체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PIM, HBM, LLC, CXL, SOM) 설계・제조기술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nm이하) 기술tem on Chip) 설계 및 제조(7nm 이하) 기술
	차세대 디지털기기 SoC 설계・제조기술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제조·패키징 기술
	차량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에너지효율향상 전력반도체(BCDMOS, UHV, 고전압 아날로그IC) 설계・제조기술(0.35㎛이하)
	차세대 디지털기기・차량용 디스플레이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분야	기술
	SoC 반도체 개발·양산 위한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WLP, PLP, SiP, 플립칩 기술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 및 패키징 관련 소재·부품·장비설계·제조기술
	반도체용 실리콘 기판 및 화합물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첨단 메모리반도체 및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SoC 반도체 파운드리 소재·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원자층증착법 및 화학증착법을 위한 고유전체용 전구체 개발 기술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블랭크 마스크 개발 및 제조기술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기술
	파운드리향 IP 설계 및 검증 기술
	고성능·고효율 시스템 반도체의 테스트 기술 및 테스트 관련 장비, 부품 설계·제조기술
이차전지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팩 제조기술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사용후 배터리 평가 및 선별 기술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기술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기술
	장수명 음극재 제조기술
	이차전지 분리막 및 전해액 제조기술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술
백신	방어 항원 등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 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원료 및 원부자재 등 개발·제조 기술
	생산장비 개발·제조 기술
디스플레이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친환경 QD(Quantum Dot)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Micro LED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기술
	디스플레이 TFT 형성 장비 및 부품 기술: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수소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기술

분야	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압축·저장·충전 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미래형 이동수단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의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터(Bio Better)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후보물질 발굴 및 바이오 신약 제조 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 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2024. 2. 29. 개정)

R&D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2020년 2조 7,340억원에서 2023년 4조 6,30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3조 99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음.

[R&D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득세	910	954	1,057	1,081	1,013	1,080
법인세	26,430	26,342	36,173	45,221	28,562	29,910
합 계	27,340	27,296	37,231	46,302	29,575	30,990

주: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출은 2020년 6,226억원에서 2023년 2조 799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대기업 실적회복으로 2025년에는 4조 2,88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득세	217	491	810	1,036	1,269	1,295
법인세	6,009	12,969	21,187	19,764	16,134	41,590
합 계	6,226	13,459	21,997	20,799	17,402	42,883

주: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2023년 법인세 R&D 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41,660개가 1조 5,150억 1,800만원을 신고했고, 일반법인 1,718개가 3조 70억 4,000만원을 신고했음.

[2023년 법인세 R&D 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수입금액 규모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10억원 이하	4,370	26,931	1	11
20억원 이하	6,119	56,352	4	36
50억원 이하	11,814	203,843	17	536
100억원 이하	8,470	254,558	32	1,665
200억원 이하	5,506	278,567	57	2,980
300억원 이하	2,090	160,621	44	2,761
500억원 이하	1,797	198,988	93	7,155
1,000억원 이하	1,169	229,272	171	26,106
5,000억원 이하	324	102,498	872	319,207
5,000억원 초과	1	3,388	427	2,646,583
합계	41,660	1,515,018	1,718	3,007,040

자료: 국세통계포털

2023년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8,926개가 4,013억원을 신고했고, 일반법인 1,752개가 1조 3,789억 200만원을 신고했음.

[2023년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수입금액 규모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10억원 이하	1,063	2,172	2	104
20억원 이하	874	3,752	2	84
50억원 이하	1,744	16,690	9	80
100억원 이하	1,392	28,987	22	240
200억원 이하	1,520	59,975	76	2,187
300억원 이하	789	48,214	52	2,327
500억원 이하	757	70,227	98	3,921
1,000억원 이하	610	102,277	219	12,769
5,000억원 이하	u	56,247	833	138,317
5,000억원 초과	u	12,759	439	1,218,875
합계	8,926	401,300	1,752	1,378,902

자료: 국세통계포털

나.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공제율 상향 (정부안, 정태호 의원안)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유형별 공제율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1</td><td>5</td><td>10</td><td rowspan="2">3</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td><td>3</td><td>6</td><td>12</td></tr>
<tr><td>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td><td colspan="2">15</td><td>25</td><td>4</td></tr>
</table>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td>
<td>□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추가공제 공제율 상향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1</td><td>5</td><td>10</td><td rowspan="3">10</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td><td>3</td><td>6</td><td>12</td></tr>
<tr><td>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td><td colspan="2">15</td><td>25</td></tr>
</table>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td></tr>
</table>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 2건의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율을 일괄하여 10%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도록 유인을 제공하여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8월 중 설비투자실행 BSI[206] 실적은 93으로 전월 대비 1p 하락했으며 9월 전망 역시 93으로 100보다 낮아, 계획대비 투자를 늘리려는 기업보다 줄이려는 기업이 더 많은 상황임.

206) 설비투자실행 BSI = 「계획대비 수정증액」응답업체 구성비(%) – 「계획대비 수정감액」응답업체 구성비(%) + 100

[설비투자실행 BSI 현황]

	'24.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대비
설비투자실행	93	94	94	95	94	94	93		-1
(전망치)	(92)	(94)	(94)	(95)	(94)	(94)	(93)	(93)	(0)

자료: 한국은행

특히, 추가공제 공제율이 상향되면 기업이 직전 3개년도 평균 투자액에 비해 투자액을 늘려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커지는 것이므로, 기업이 이전에 비해 투자를 확대할 유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리고 기업이 세액공제로 절감된 재원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등의 입법취지임. .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업의 투자결정은 세제지원 외에도 기업의 현금보유수준, 사업리스크, 부채비율, 대내외 경영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제율 상향이 투자 확대로 이어질지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둘째, 기본공제와 달리 추가공제는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에 대해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추가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대기업에 귀착되는 비율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음.

감면액 기준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수혜자 귀착을 살펴보면, 전체 감면액 중 상호출자제한집단에 귀착되는 감면액의 비중이 2021년에는 61.3%, 2022년에는 64.1%, 2023년에는 56.8%임.

즉,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상황임.

[감면액 기준 통합투자세액공제 수혜자 귀착 현황]

(단위: 억원, %)

항목	법인				합계
	중소	중견	상출	기타	
2023년	5,569 (26.8)	1,577 (7.6)	11,809 (56.8)	1,843 (8.9)	20,798
2022년	4,839 (22.0)	1,628 (7.4)	14,101 (64.1)	1,429 (6.5)	21,997
2021년	3,002 (22.3)	1,030 (7.7)	8,248 (61.3)	1,180 (8.8)	13,459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그런데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추가공제의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면 대기업에 귀착되는 혜택의 비중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음. 즉, 투자 세제지원을 통한 우회적인 대기업 감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 직전 3년간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 아닌 일반 설비에 매년 100억원을 투자한 대기업과 10억원을 투자한 중소기업이 투자액을 10% 늘리면 현행제도상 공제액은 대기업 1.4억원, 중소기업 1.13억원임.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추가분 공제율을 10%로 늘리면, 대기업 공제액은 1.4억원에서 2.1억원으로 50%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 공제액은 1.13억원에서 1.2억원으로 6.2% 증가하는 것에 그침.[207]

207) 세액공제액 계산 세부 내역

셋째, 추가공제가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투자실적을 기반으로 한 실증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 보유 미시자료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분리된 항목으로 보관되어 있지 않아[208] 추가공제 적용으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났는지 여부에 대해 「2024년 조세특례심층평가」에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넷째,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상향은 조세지출 규모를 크게 증가시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에 해당되지만, 정부는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209]

다섯째, 세수감소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제출한 비용

항목	대기업	중소기업
현행 제도	(110억원×1%)+(10억원×3%)= 1.4억원	(11억원×10%)+(1억원×3%)= 1.13억원
개정안	(110억원×1%)+(10억원×10%)= 2.1억원	(11억원×10%)+(1억원×10%)= 1.2억원
증감(증감률)	0.7억원(50%)	0.07억원(6.2%)

208) 동 세액공제 관련 서식은 2023년 사업연도분부터 구분이 가능하도록 수정되어 향후에 효과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상황임.

209) 면제사유는 '전략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 지속, 투자 세제지원 강화 필요(조특법§142⑤1)' 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⑤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추계서에 따르면 매년 2,603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다.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 R&D 세액공제(제10조)

○ 유형별 공제율

구 분(%)	기본			추가[1]
	대	중견	중소	
일 반	최대 2	8~15[2]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40	최대 10

1」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2」 (~3년)15%, (4~5년)10%, (6년~)8%

*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25~40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유형별 공제율

구 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15		25	4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개정안

□ R&D 세액공제(제10조)

○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율 점감구조 도입 및 코스닥 중견기업 우대 삭제

구 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 반	최대2	8~20[1」]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 25[2」]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 35[3」]	40	최대 10

1」 (~3년)20%, (4~5년)15%, (6년~)8%

2」 (~3년)25%, (4년~)20%

3」 (~3년)35%, (4년~)30%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율 점감구조 도입

구 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7.5[1」]	10	3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3	6, 9[2」]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15	15, 20[3」]	25	4

1」 (~3년)7.5%, (4년~)5%

2」 (~3년)9%, (4년~)6%

3」 (~3년)20%, (4년~)15%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 2건의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중소기업을 졸업 후 단계적으로 공제율을 축소하는 점감구조를 도입하는 한편,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에 적용하던 신성장·원천기술 R&D 우대공제(기본 25%, 추가 최대 15%)는 폐지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른 R&D 세액공제 점감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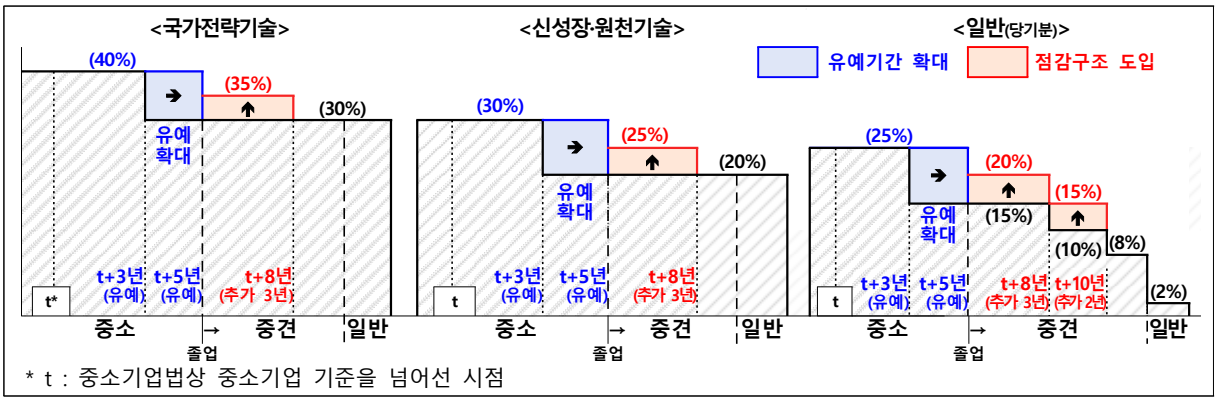

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3년→5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임

[개정안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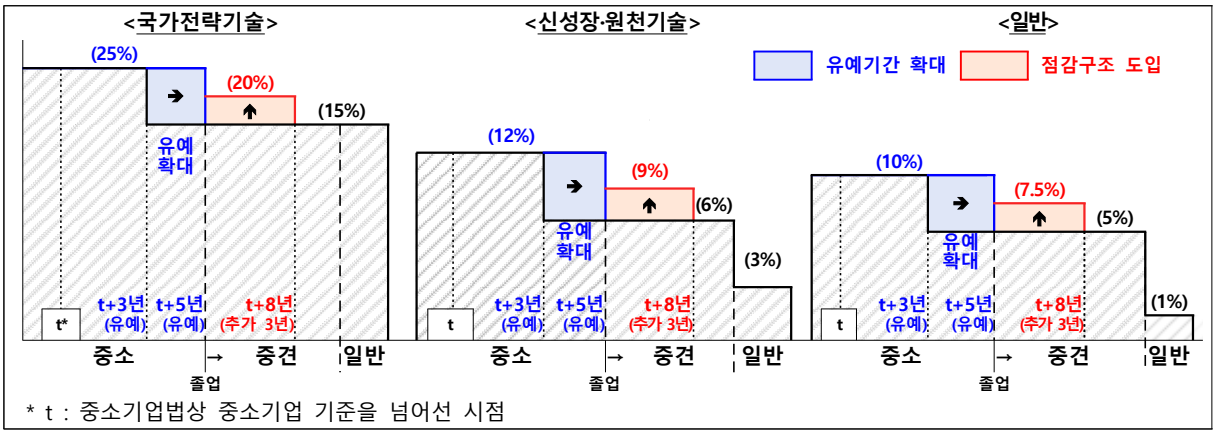

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3년→5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임

□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기업 규모

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이는 중소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으로 진입할 때 각종 혜택에서 배제되고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우려해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데,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 수는 2018년 89개 사, 2019년 50개 사, 2020년 69개 사임.[210]

이에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2024년에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음.[211]

---

210)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유예제도 개선방안 연구」, 2023. 12.

2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업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동일하게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은 7년으로 2년 추가 연장할 예정임.[212)]

한편, 현행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유예기간 종료 후 공제율이 축소되는 구조임. R&D 세액공제는 공제율이 10%p 축소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일반 분야 5%p,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6%p, 국가전략기술 분야

2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0%p 축소됨.

또한, 현행 R&D 세액공제는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에 대해 기본 공제율 25% 및 추가 공제율 최대 15%가 적용되고 있어 일반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기본 공제율 20% 및 추가 공제율 최대 10%에 비해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됨.[213]

□ 개정안은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종료 후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점감구조를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도입하는 한편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R&D 우대공제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첫째, 점감구조 도입은 중소기업 졸업 후 세제혜택의 축소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최근 10년 내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2023년)에 따르면, 중소기업 졸업 후 부담이 큰 정책변화는 조세부담 증가(51.5%)로 보고되고 있음.[214]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실시한 '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 관련 설문조사'(2023년)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을 질의(복수응답)한 결과, '조세부담 완화'(86.5%)가 가장 많았음.

213)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우대공제는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214)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중견기업의 경영실태 및 시사점 조사', 2023. 1.

개정안에 따라 점감구조를 도입하면 초기 중견기업이 개정 전에 비해 더 높은 공제율을 일정기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R&D 및 설비투자의 재정부담이 줄어들어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우대를 폐지하여 코스피·코스닥상장기업에 대한 지원을 합리화하려는 취지임.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코스피·코스닥상장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할 예정이므로, 세액공제 우대를 폐지함으로써 지원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중소기업 정책수혜를 위해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한 중견기업의 비중이 크지 않고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0년에는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한 기업이 중견기업의 6.6%였고, 2021년에는 6.2%, 2022년에는 5.3%로 감소하였음.

[중소기업 회귀 검토 현황]

(단위: %)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제조업	8.3	6.6	5.5
비제조업	5.5	5.9	5.2
전체	6.6	6.2	5.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중견기업 기본총계

둘째,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수준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 늘어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점감구조 도입을 통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행령이 개정되면 코스피·코스닥 상장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2년 추가 연장되어, 중견기업 규모로 성장한 후에도 총 7년 간 중소기업 수준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셋째, 세수감소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매년 투자세액공제에서 △12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약 △13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라.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 상향과 적용기한 연장(황정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정성호의원안, 박성훈의원안, 박수민의원안, 김종양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영진의원안, 김정재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이병진의원안, 정부안, 최민희의원안, 박지혜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정태호의원안)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
□ R&D 세액공제(제10조)
○ 유형별 공제율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1)]</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 colspan="2">최대 2 8～15[2)]</td><td>25</td><td>-</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td><td colspan="2">20</td><td>30</td><td>최대 10</td></tr>
<tr><td>국가전략기술</td><td colspan="2">30</td><td>40</td><td>최대 10</td></tr>
</table>
1」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2」 (～3년)15%, (4～5년)10%, (6년～)8%
*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25～40%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적용기한: 2024.12.31.
</td><td>
□ R&D 세액공제(제10조)
○ 유형별 공제율
-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상향 (황정아의원안)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최대 2</td><td>8～15</td><td>25</td><td>-</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td><td colspan="2">30</td><td>50</td><td>최대 10</td></tr>
<tr><td>국가전략기술</td><td colspan="2">40</td><td>60</td><td>최대 10</td></tr>
</table>
*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35～50%
-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상향 (박수영의원안)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최대 2</td><td>8～15</td><td>25</td><td>-</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td><td colspan="2">20</td><td>30</td><td>최대 10</td></tr>
<tr><td>국가전략기술</td><td colspan="2">40</td><td>50</td><td>최대 10</td></tr>
</table>
*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25～40%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적용기한 연장
- 2026.12.31. (최은석의원안, 천하람의원안)
- 2027.12.31. (황정아의원안, 정성호의원안, 박성훈의원안, 박수민의원안,
</td></tr>
</table>

현 행	개정안
	정부안, 최민희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2029.12.31. (김종양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2030.12.31. (김영진의원안) - 2034.12.31. (김정재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이병진의원안) - 국가전략기술 2028.12.31. (박지혜의원안) - 국가전략기술 2034.12.31. (박수영의원안)

* 김정재의원안 2024. 6. 13. 발의(의안번호 463), 김태년의원안 2024. 7. 3. 발의(의안번호 1361), 김종양의원안 2024. 7. 5. 발의(의안번호 1431), 황정아의원안 2024. 7. 8. 발의(의안번호 1450), 박수영의원안 2024. 7. 8. 발의(의안번호 1484), 김영진의원안 2024. 7. 9. 발의(의안번호 1526), 정성호의원안 2024. 7. 22. 발의(의안번호 2063), 이병진의원안 2024. 7. 23. 발의(의안번호 2125), 최은석의원안 2024. 7. 24. 발의(의안번호 2186), 박성훈의원안 2024. 8. 1. 발의(의안번호 2466), 윤준병의원안 2024. 8. 22. 발의(의안번호 3085), 박수민의원안 2024. 8. 29. 발의(의안번호 3391),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최민희의원안 2024. 9. 5. 발의(의안번호 3697), 박지혜의원안 2024. 9. 5. 발의(의안번호 3721), 허성무의원안 2024. 10. 22. 발의(의안번호 4825), 안도걸의원안 2024. 10. 25. 발의(의안번호 4923), 천하람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44), 신영대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83),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 개정안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공제율을 상향하고 적용기한(2024년)을 연장하여 주요 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과 관련하여, 황정아의원안은 공제율을 대·중견기업 30~40%, 코스닥상장중견기업 35~50%, 중소기업 50~60%로 10%p 상향하려는 것임.

국가전략기술 공제율과 관련하여, 박수영의원안은 공제율을 대·중견기업 40~50%, 중소기업 50~60%로 상향하려는 것이고, 황정아

의원안은 대·중견기업 40~50%, 중소기업 60~70%로 상향하려는 것임.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적용기한과 관련하여, 최은석의원안·천하람의원안은 2026년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황정아의원안·정성호의원안·박성훈의원안·박수민의원안·정부안·최민희의원안·허성무의원안·안도걸의원안·신영대의원안·정태호의원안은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김종양의원안·윤준병의원안은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김영진의원안은 2030년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김정재의원안·김태년의원안·이병진의원안은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지혜의원안은 국가전략기술의 적용기한만 2028년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박수영의원안은 국가전략기술의 적용기한만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적용기한 연장 관련 개정안 요약]

적용기한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4년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모두 연장	최은석의원안, 천하람의원안	황정아의원안, 정성호의원안, 박성훈의원안, 박수민의원안, 정부안, 최민희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김종양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영진의원안	김정재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이병진의원안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만 연장	-	-	박지혜의원안	-	-	박수영의원안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과기부에서 선정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이동수단 등 12대 국가전략기술[215] 분야 기업을 조사한 결과, R&D 세액공제 지원이 기술 성장성, 성공한 R&D 과제수, 최신특허 인용 등 혁신활동 및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216]

또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기업의 조세 지원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R&D 기업은 일반적으로 R&D 세액공제를 통해 절감한 비용을 연구개발 활동 재투자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217]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기술개발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외부효과도 더욱 크게 발생하므로 세제지원이 R&D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

둘째, 주요국들이 주요기술에 대한 R&D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세액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215)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과 범위에 차이가 있음.

216) KISTEP, 「기업 혁신활동 제고를 위한 R&D 조세 지원 정책 연구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기업을 중심으로」, 2023. 5.

217) 소기업은 절감된 비용을 일반적으로 R&D 인력 충원에 활용하고, 중기업 이상 절감된 비용을 R&D 인력 충원과 R&D 설비 투자에 활용하였음.

예를 들어, 대만은 2023년에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켜 기술혁신·세계 공급망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업체가 연구개발(R&D)에 투자할 경우 R&D 비용의 2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하였음.

[주요국 반도체 인센티브(투자대비 %)]

구 분		한국	대만	미국	일본
세액 공제	R&D	30~50	25	(증가분) 20	1~17
	투자	15~35	5	25	-
투자보조금		-	-	최대 15	33~50

자료: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2024. 6.)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세액공제 제도가 연구개발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있어,[218] 동 제도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둘째,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는 공제율 수준이 높고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세수감소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신성장·원천기술은 기술분야가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218) 조세재정연구원,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24. 9.

2017년 11개 분야·157개 기술에서 2024년 14개 분야·270개 기술로 늘어났고, 국가전략기술 역시 2022년 3개분야·36개 기술에서 2024년 7개 분야·66개 기술로 늘어나 세수감소 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

일반 기술의 경우, 2022년 조세지출액이 2018년 대비 1,305억원 증가(2조 1,553억원 → 2조 2,858억원)하였으나, 신성장·원천기술은 7,344억원 증가(1,447억원→8,791억원)하였고, 국가전략기술은 2022년 조세지출규모가 4,524억원에 달하여 조세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임.

[R&D 세액공제 조세지출 추이]

구 분	2018	2022	증감
일반	2조 1,553억원	2조 2,858억원	1,305억원
신성장·원천기술	1,447억원	8,791억원	7,344억원
국가전략기술	-	4,524억원 (신설)	-

자료: 조세재정연구원,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셋째,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산정책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말에서 2034년 말로 10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가 2026년 2조 542억원, 2035년 2조 6,802억원 등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23조 5,486억원(연평균 2조 3,54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기술별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연도	2026	2027	…	2034	2035
신성장·원천기술	-8,569	-8,826	…	-10,855	-11,181
국가전략기술	-11,972	-12,331	…	-15,166	-15,621

자료: 예산정책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총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10년 연장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542	-21,158	-21,793	-22,446	-23,120	-23,813
	2032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24,528	-25,264	-26,021	-26,802	-235,486	-23,549

자료: 예산정책처

넷째, 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산정책처는 황정아의원안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로 3년 연장하고, 기술유형별로 R&D 세액공제율을 10~20%p 상향함에 따라 법인세가 2026년 4조 5,329억원, 2030년 1조 7,432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7조 4,462억원(연평균 3조 4,89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또한, 예산정책처는 박수영의원안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말에서 2034년 말로 10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비 10%p 상향함에 따라 법인세가 2026년 1

조 6,253억원, 2035년 2조 1,206억원 등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 18조 6,319억원(연평균 1조 8,6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다섯째, 우리나라와 같이 기술 분야를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해외 주요국 사례는 없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제도처럼 R&D 세액공제율을 기술 범주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구조를 복잡하게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각 범주의 기술을 적절하게 선정하지 못하면 자원배분의 왜곡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마.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제율 상향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이상식의원안, 정성호의원안(1951), 이병진의원안(2125), 이병진의원안(2173), 정진욱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성훈의원안, 박수민의원안, 조지연의원안, 김종양의원안, 박충권의원안, 김영진의원안, 김성원의원안,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정부안, 박지혜의원안, 정성호의원안(4780), 허성무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신영대의원안)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유형별 공제율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1</td><td>5</td><td>10</td><td rowspan="2">3</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td><td>3</td><td>6</td><td>12</td></tr>
<tr><td>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td><td colspan="2">15</td><td>25</td><td>4</td></tr>
</table>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td><td>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유형별 공제율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추가공제율 상향 (이상식의원안, 정성호의원안(1951))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1</td><td>5</td><td>10</td><td rowspan="2">3</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td><td>3</td><td>6</td><td>12</td></tr>
<tr><td>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td><td colspan="2">15</td><td>25</td><td>10</td></tr>
</table>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기본공제율 상향 (박수영의원안)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1</td><td>5</td><td>10</td><td rowspan="2">3</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td><td>3</td><td>6</td><td>12</td></tr>
<tr><td>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td><td colspan="2">25</td><td>35</td><td>4</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td><td>-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기본공제율 상향 (이병진의원안(2173))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1</td><td>5</td><td>10</td><td rowspan="2">3</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td><td>3</td><td>6</td><td>12</td></tr>
<tr><td>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td><td colspan="2">30</td><td>40</td><td>4</td></tr>
</table>
-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기본공제율 상향 (신영대의원안)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1</td><td>5</td><td>10</td><td rowspan="2">3</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td><td>15</td><td>20</td><td>25</td></tr>
<tr><td>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td><td colspan="2">25</td><td>30</td><td>4</td></tr>
</table></td></tr>
<tr><td>○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2024. 12. 31.</td><td>○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 2025. 12. 31. (정진욱의원안)
- 2026. 12. 31. (김상훈의원안)
- 2027. 12. 31. (박성훈의원안, 박수민의원안, 정부안, 허성무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신영대의원안)
- 2028. 12. 31. (조지연의원안, 박지혜의원안)
- 2029. 12. 31. (김종양의원안)
- 2030. 12. 31. (이상식의원안, 박충권의원안, 김영진의원안, 정성호의원안(1951))
- 2034. 12. 31. (김성원의원안,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이병진의원안(2125), 정성호의원안(4780))
- 2039 12. 31. (천하람의원안)</td></tr>
</table>

* 박충권의원안 2024. 5. 31. 발의(의안번호 67), 김성원의원안 2024. 6. 18. 발의(의안번호

578), 이상식의원안 2024. 7. 1. 발의(의안번호 1233), 김태년의원안 2024. 7. 3. 발의(의안번호 1361), 김종양의원안 2024. 7. 5. 발의(의안번호 1431), 김상훈의원안 2024. 7. 8. 발의(의안번호 1457), 박수영의원안 2024. 7. 8. 발의(의안번호 1484), 김영진의원안 2024. 7. 9. 발의(의안번호 1526), 정성호의원안 2024. 7. 18. 발의(의안번호 1951), 조지연의원안 2024. 7. 19. 발의(의안번호 1980), 이병진의원안 2024. 7. 23. 발의(의안번호 2125), 이병진의원안 2024. 7. 24. 발의(의안번호 2173), 박성훈의원안 2024. 8. 1. 발의(의안번호 2466), 정진욱의원안 2024. 8. 20. 발의(의안번호 3009), 박수민의원안 2024. 8. 29. 발의(의안번호 3391),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박지혜의원안 2024. 9. 5. 발의(의안번호 3721), 정성호의원안 2024. 10. 18. 발의(의안번호 4780), 허성무의원안 2024. 10. 22. 발의(의안번호 4825), 천하람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44),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신영대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83)

□ 개정안은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상향하며 적용기한(2024년 말)을 연장하려는 것임.

공제율 상향과 관련하여 이상식의원안·정성호의원안(의안번호 1951)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추가공제율을 6%p(4%→10%) 상향하려는 것이고, 박수영의원안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기본공제율을 10%p(대·중견 15%→25%, 중소 25%→35%) 상향하려는 것이며, 이병진의원안(의안번호 2173)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기본공제율을 15%p(대·중견 15%→30%, 중소 25%→40%) 상향하려는 것이고, 신영대의원안은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 기본공제율을 상향(대 3%→15%, 중견 6%→20%, 중소 12%→25%)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기본공제율을 상향(대·중견 15%→25%, 중소 25%→30%)하려는 것임.

적용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정진욱의원안은 2025년까지 1년 연장하고, 김상훈의원안은 2026년까지 2년 연장하며, 박성훈의원안·박수민의원안·정부안·허성무의원안·정태호의원안·신영대의원안은 2027년

까지 3년 연장하고, 조지연의원안·박지혜의원안은 2028년 말까지 4년 연장하며, 김종양의원안은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이상식의원안·박충권의원안·김영진의원안·정성호의원안(의안번호 1951)은 2030년 말까지 6년 연장하고, 김성원의원안·김태년의원안·박수영의원안·이병진의원안(의안번호 2125)·정성호의원안(의안번호 4780)은 2034년 말까지 10년 연장하며, 천하람의원안은 2039년 말까지 15년 연장하려는 것임.

[적용기한 연장 관련 개정안 요약]

적용기한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4년	2039년
개정안	정진욱 의원안	김상훈 의원안	박성훈 의원안, 박수민 의원안, 정부안, 허성무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신영대 의원안	조지연 의원안, 박지혜 의원안	김종양 의원안	이상식 의원안, 박충권 의원안, 김영진 의원안, 정성호 의원안 (의안번호 1951)	김성원 의원안, 김태년 의원안, 박수영 의원안, 이병진 의원안, 정성호 의원안 (의안번호 4780)	천하람 의원안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요한 국가전략기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에 대한 설비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수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 제도가 시

행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해 2022년에는 0.51배의 투자를 진행했을 것이고 2023년에는 0.54배의 투자를 진행했을 것이라고 응답결과가 나타났음.[219]

즉, 동 제도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국가 간 기술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각국들 역시 선제적으로 기술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국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늘려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국내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주요국의 전략산업 지원현황]

구분	지원내용
미국	반도체 시설·장비 투자액의 25%를 세액공제(CHIPS Act)
대만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5% 세액공제
EU	'30년까지 민간투자에 430억€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The European Chips Act)
일본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까지 세제지원(경제안전보장추진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조세지출 평가서

셋째,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면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2024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화

21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3): 통합투자세액공제」, 2024. 9.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도입 이후 동 제도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들에서 총자산의 성장률이 기타 산업들에 비해 3.3~3.4%p 더 높았던 것으로 관찰되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업의 투자결정은 세제지원 외에도 기업의 현금보유수준, 사업리스크, 부채비율, 대내외 경영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제율 상향이 투자 확대로 이어질지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둘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고용성장률에 대한 계수가 대체적으로 양(+)의 값을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220] 동 제도의 고용창출효과는 불분명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하는 경우, 2026년 4,821억원, 2035년 6,292억원 등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세수가 10년간 연평균 5,528억원(총 5조 5,27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221]

2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3): 통합투자세액공제」, 2024. 9.

221) 이병진의원안(의안번호 2125)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4,821	-4,965	-5,115	-5,268	-5,427	-5,590
	2032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5,758	-5,931	-6,109	-6,292	-55,275	-5,528

주)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감면액의 20%)를 고려한 값임
자료: 예산정책처

넷째, 일반시설,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간 공제율이 차등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의 기술범주를 적정하게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의 투자 결정을 왜곡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음.

바.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운 분야 추가 등

현 행	개정안
□ 기업의 R&D 및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 제24조, 제130조)	□ 기업의 R&D 및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 제24조, 제130조)
○ 국가전략기술 범위(제10조)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	○ 국가전략기술 범위(제10조) -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추가 (김태년의원안, 최민희의원안) - 인공지능 추가 (이인선·조승래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신영대의원안) - 방위산업 추가(김종양의원안) - 방위산업, 인공지능 추가(정성호의원안(2063), 정태호의원안) -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탄소중립산업 추가(김영진의원안) - 태양광, 풍력 추가(박지혜의원안) - 원자력 추가(박성훈의원안) - 미래형운송수단 추가(박수민의원안) - 미래형 이동수단에 미래형 선박 포함 명확화 (허성무의원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제130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제130조) - 인공지능기술 사업화시설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조항의 예외 적용(정성호의원안(4568))

* 김태년의원안 2024. 7. 3. 발의(의안번호 1361) 김영진의원안 2024. 7. 9. 발의(의안번호 1526), 김종양의원안 2024. 7. 11. 발의(의안번호 1644), 이인선·조승래의원안 2024. 7. 19. 발의(의안번호 2012) 정성호의원안 2024. 7. 22. 발의(의안번호 2063), 박성훈의원안 2024. 8. 1. 발의(의안번호 2466), 박수민의원안 2024. 8. 29. 발의(의안번호 3391), 최민희의원안 2024. 9. 5. 발의(의안번호 3697), 박지혜의원안 2024. 9. 5. 발의(의안번호 3721), 정성호의원안 2024. 10. 4. 발의(의안번호 4568), 허성무의원안 2024. 10. 22. 발의(의안번호 4825), 안도걸의원안 2024. 10. 25. 발의(의안번호 4923), 천하람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44), 신영대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83),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1) 인공지능 분야 추가 및 인공지능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조항 예외 적용(김태년의원안, 이인선·조승래의원안, 정성호의원안(2063), 최민희의원안, 정성호의원안(4568), 안도걸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김태년의원안, 이인선·조승래의원안, 정성호의원안(2063), 최민희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정태호의원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 분야를 추가하려는 것이고, 정성호의원안(4568)은 인공지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222]의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조항의 예외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 현재 인공지능(Artificial Inteligence, 이하 'AI') 기술은 대통령령에서 신성장·원천기술의 분야로 지정되어 있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회·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전환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팽창이 전망되며, 민간투자·스타트업의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39.7%씩 성장하고 있는 추세로 2021년 581억 달러에서 2026년 3,095억달러 수준으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임. 또한, 국내 인공지능 분야 시장은 2027년까지 연평균 14.9% 성장하여 시장규모가 4조 4,636억

222) 수도권 내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호)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2022년 기준 민간투자는 1,896억달러로 10년 전 대비 10배 증가한 규모이며, 민간투자는 미국·중국·유럽이 세계시장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2022년 전세계 기업의 50%가 적어도 한 가지 인공지능 기술을 사업에 적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223]

한편, 산업시설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법 제130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고 있음.[224]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1989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기업의 대체투자와 1990년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대체투자는 세액공제가 적용됨.

또한, ①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 ②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③ 에너지절약시설,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223) KISTEP 브리프 「기술동향: 2023 인공지능」

224)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설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도 세액공제가 적용됨.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대통령령에서 신성장·원천기술의 분야로 지정되어 있는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하여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인공지능은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미국 등 주요국이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주요국의 AI 지원현황]

국가	지원현황
미국	인공지능 분야의 첨단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패권경쟁 선도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국가적 R&D 전략 수립 - 「국가 AI 이니셔티브 법」제정 및 전담 실행조직인 '국가 AI 이니셔티브실(NAIIO)'을 출범하며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및 제도적 기반 확립('21.~) -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국가 AI R&D 전략 계획(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 2023 Update)」을 업데이트·발표('23.05.)
중국	경제 및 안보 측면에서 전략기술로 인식하며 차세대 인공지능 확보를 위한 혁신과 제도 환경 조성을 위해 '17년 이후 대대적인 국가 AI 전략 수립 - 「차세대 AI 발전계획」('17.07.)과 「차세대 AI 개발을 위한 3개년 실행계획」('17.12.)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국가 인공지능 정책 이행에 착수 - 「14차 5개년 계획」('21.12.), 「인공지능 시나리오 혁신 가속화 방안」('22.08.), 「디지털 차이나 건설계획」('23.03.) 등 국가 차원의 집중 지원을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표
EU	미·중 등 주요 선도국 대비 기술적으로 동등·열위 수준이나, '사람 중심

국가	지원현황
	의 AI'의 고유한 지원방안을 제시, EU 회원국은 기술·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 투자 중 - 미국 대비 다소 열위, 중국과 동등 수준에서 「EU를 위한 AI(Artificial Intelligence for Europe)」을 발표('18.04.)하며 EU 차원의 AI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

자료: KISTEP 브리프 「기술동향: 2023 인공지능」

우리나라는 아직 AI 분야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기술력이 뒤쳐져 있고 민간 투자가 저조한 수준인데, 세액공제 혜택의 부여를 통해 관련투자를 증진함으로써 기술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021년 기준 AI 분야 세계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기술 수준이 89.1%이며 기술격차가 1.3년으로 나타나고 있음.[225] 또한, 2011년에서 2020년 사이 선진 5개국 특허청에 출원된 초거대 AI 관련 특허 출원은 미국이 1위(35.6%)이고, 한국은 4위(11.3%)임.[226]

또한,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AI 분야 민간 투자액은 13억 9,000만 달러로서 미국(672억 2,000만 달러), 중국(77억 6,000만 달러), 영국(37억 8,000만 달러) 등 다른 주요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임.

225)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1 ICT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보고서」

226) 국회도서관,「초거대 AI 한눈에 보기」(2023. 11.)

[2023년 기준 주요국의 AI 분야 민간투자 현황]

(단위: 십억 달러)

국가	미국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우리나라
투자액	67.22	7.76	3.78	1.91	1.69	1.52	1.39

자료: 미국 스탠포드 대학, ‘AI Index 2024’

둘째, 글로벌 빅테크 AI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AI 기술에 대한 주도권 상실은 안보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I 기술 육성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음.

AI 기술의 발달로 미래에 AI가 국민 일상 전 영역에 침투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AI 관련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 법·규제 적용이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글로벌 빅테크의 AI 독과점이 지속되는 경우, 민감한 데이터의 국외 유출,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AI 기술우위의 적대국이 치명적 유해 알고리즘을 확신시켜 안보에 위협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음.

이처럼 AI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각 국가가 외부의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AI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 ‘소버린(Sovereign) AI’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AI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AI 기술력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잠재적인 안보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셋째, 인공지능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해 AI 산업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하는 경우도 세제지원을 하여 인공지능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를 더욱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내기업 AI 기술 활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AI 활용비율은 수도권 기업이 40.4%, 비수도권 기업이 17.9%로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AI 기술의 활용과 능동적 확대를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로는 'AI 분야 투자 및 R&D 지원'이 1위(51.4%)로 나타났음.[227]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내 AI 기술력 발달과 AI 확산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여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인공지능 도입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고용이나 1인당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지 않으나, 장기로 갈수록 고용이나 1인당 인건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높아질 가능성을 제기하는 연구결과가 있었음.[228] 연령대별로는 남녀 모두 청년층에서 고용 하락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을 중심으로 전문직군의 고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비스·단순노무 고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227)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국내 기업 AI 기술 활용 실태 조사', 2024. 8.

228) KDI, '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방향', 2023. 12.

또한, 우리나라 취업자 중 약 341만명(전체 취업자수 대비 12%)은 AI 기술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도 있었음.[229]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노동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는데, 생산성 효과는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대체 효과는 특정 집단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일부 근로자들은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전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연구결과는 주장하고 있음.

둘째, AI는 우리나라의 미래 주요산업이 될 잠재력이 있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인공지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면 미래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시설 및 기업활동이 수도권으로 더욱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다른 일반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과 같이 인공지능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은 제한된 재정자원 하에서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우선적 투자대상을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해당 기술의 전략적 가치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229) 한국은행, ‘AI와 노동시장 변화’, 2023. 11.

(2) 방위산업 분야 추가 (김종양의원안, 정성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위산업은 방위산업물자, 무기체계 등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 포함)과 관련된 산업을 의미함.[230]

방위산업은 우리나라의 안보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수출 산업으로서 의의가 있음.

글로벌 방산 시장은 각국의 국방비 지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2022년 글로벌 국방비는 약 2.24조 달러로 2021년 글로벌 국방비 2.18조 달러 대비 3.7% 증가하였음.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동유럽의 2022년 국방비가 2021년 대비 58% 상승하였으며, 추후 국방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3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물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다.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략물자 중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
라.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지정・고시한 물자
2.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글로벌 국방예산 전망(2010년~203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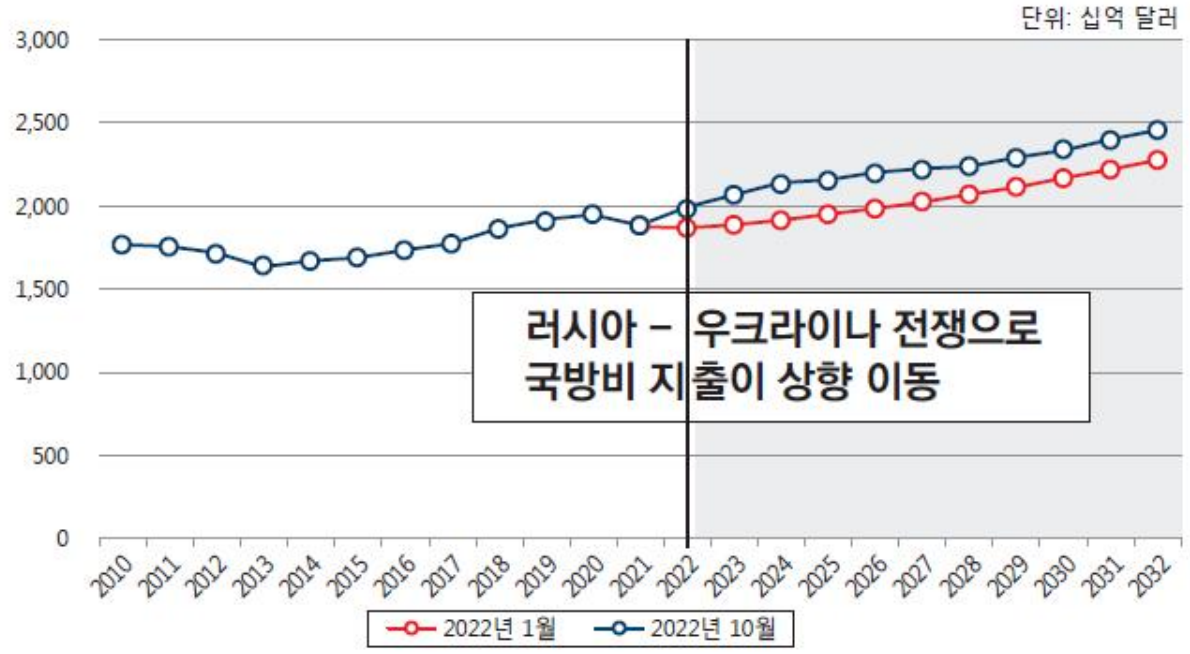

자료: 산업연구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시장의 변화와 시사점」(2023. 3.)

2018~2022년 글로벌 무기수출 시장 점유율은 미국이 약 40%(1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4%(9위)임.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2019년까지 수출액이 30억 달러 미만이었으나, 2022년 173억 달러·2023년 13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또한, 2023년 수출대상국은 12개국으로 2022년 4개국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고, 수출 무기체계 종류도 2배로 늘었음.[231)]

[최근 5년 방산 수출실적]

(단위: 억 달러)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액	25	30	73	173	135

자료: 방위사업청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31) 한국무역보험공사, 「방위산업 현황과 전망」, 2024. 2.

□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신성장·원천기술의 분야로 지정되어 있는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첫째, 방위산업에 대한 R&D와 설비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방산 수출 제고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방위산업은 무기 자체를 수출한 후에도 무기 운용 프로그램 개선, 부품 교체 및 정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무기 수출이 추가적인 수출로 연계되는 특징이 있음. 특히,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무력충돌 등 국제분쟁 격화로 긴장감이 고조됨에 향후 방산시장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참고로, 2022년에는 방위산업에서 13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46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232)]

둘째,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 전력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음.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방산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방위산업을 강화하여 수출을 늘리면 방산수출을 통한 잠금효

232) 국회예산정책처, 「나보 포커스: 방위산업 수출 현황 및 향후 과제」, 2024.7 .

과[233]를 통해 국가간 안보협력을 공고히 하여 우리나라의 국방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방위산업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2024년 2월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추가되어 이전보다 R&D와 투자에 대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비교적 최근에 세제지원이 강화되었으므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 강화된 세제지원이 R&D 및 설비투자 촉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함.

둘째, 개정안과 같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은 제한된 재정자원 하에서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우선적 투자대상을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해당 기술의 전략적 가치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233) 잠금효과(lock-in effect)는 A국이 B국의 무기체계 도입 후에는 A·B 간 안보 협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후 무기체계의 호환성 및 군사협력 강화로 발전되는 현상임.

(3) 종합 검토의견

□ 국가전략기술에 특정 기술분야를 추가하는 개정안은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수의 핵심기술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는 국가전략기술의 도입취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전략기술에 더 많은 기술 분야를 추가할수록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주요 산업들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을 다변화할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한정된 재정자원 하에서 보다 다양한 기술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할수록,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이 분산되어 일부 기술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소수의 핵심 산업을 육성하려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둘째, 국가전략기술 분야가 확대될수록 상향된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기업의 R&D 지출 및 시설투자 비율이 높아져 세수감소 규모가 커질 수 있음.

셋째,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기술분야가 확대될수록 더 많은 산업에서 세제혜택의 확대 요구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국가전략기술

의 범위가 늘어날수록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기술분야와 유사한 기술분야의 범위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각 산업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사.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제외 대상에 임대용 자산 추가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적용제외 대상 - 중고품 - 리스에 의한 투자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적용제외 대상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임대용 자산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 2건의 개정안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임대용 자산을 제외하려는 것임.

□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사업용 유형자산 등인데, 중고품에 대한 투자 및 운용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되고 있음.[234][235] 중고품

23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235)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는 적용대상에 포함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 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에 대한 투자 및 운용리스에 의한 투자는 국가 차원에서 생산설비를 늘리는 '투자'의 개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임.

또한, 사후관리 규정(법 제146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함.[236] 단,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등은 제외됨.

이와 같이 사후관리 규정을 두는 이유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목적이 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인데, 자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임.

그런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됨에도 불구하고, 추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있음.[237]

---

236)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37) 정부는 최근 렌탈사업을 위해 임대용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하였음. (서면-2023-법인-2493 [법인세과-2004] 2023. 12. 27.)

즉, 임대용 자산에 투자를 하면 투자단계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임대용 자산에 투자한 목적에 따라 임대용 자산을 실제로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임대용 자산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조치로 보임.

4.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범위 확대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제10조의2)	□ 과세특례 대상 출연금 확대
○ 대상: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을 받은 내국인	○ (현행과 같음)
○ 과세특례 대상 출연금 -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	○ 과세특례 대상 출연금 -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
○ 과세특례: - 출연금 수령 시 익금불산입 - 연구개발비 지출 및 관련 자산취득 시 익금산입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6. 12. 31.	○ (현행과 같음) ○ 적용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 2건의 개정안은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모든 출연금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10조의2는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238]을 받은 내국인이 출연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출연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실제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하였을 때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3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5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 및 제11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동 특례는 정부의 연구개발 출연금 수령에 따른 일시적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서 2006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2007년부터 시행된 이후 특별한 제도 변경 없이 적용기한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음.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연혁]

연도	주요 변경사항
2007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도 신설(2006년 12월 30일) · 연구개발 출연금 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 · 연구개발 출연금 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
2010	2012년말까지 일몰기한 연장
2011	· 근거법률을 「기술개발촉진법」에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출연금'을 '연구개발출연금 등'으로 변경
2013	일몰기한 연장(2012년 12월 31일 → 2015년 12월 31일)
2015	일몰기한 연장(2015년 12월 31일 → 2018년 12월 31일)
2018	일몰기한 연장(2018년 12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2021	일몰기한 연장(2021년 12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2023	일몰기한 연장(2023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동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 20억원에서 2023년 4억원으로 감소하고 있음.

[연구개발출연금등의 과세특례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	15	8	9	9	6	7	4	3	4	4	3	3

주: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최근 출연금의 구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예산의 경우 연구개발출연금은 24.3조원으로 전체 출연금의 45.5%를 차지하고 있음.

[출연금 구성별 규모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일반출연금	24.2 (51.7)	23.1 (47.6)	25.3 (47.6)	24.7 (45.3)	29.0 (54.5)
연구개발 출연금	22.6 (48.3)	25.4 (52.4)	27.9 (52.4)	29.9 (54.7)	24.3 (45.5)
합계	46.8 (100.0)	48.4 (100.0)	53.3 (100.0)	54.6 (100.0)	53.3 (100.0)

주 1) 2020년~2022년은 결산기준, 2023년 및 2024년은 예산 기준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함

□ 개정안은 연구개발 관련 특례 대상 출연금을 특정 법률에 근거한 출연금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안정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은 일반적으로 수년에 걸쳐 사용되므로 해당 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법인세가 먼저 과세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는 점, 연구개발비 수령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세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동 특례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출연금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됨.

문 의 처
02)6788-5155

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등 (정태호 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 세액공제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등
○ 지원대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내국법인	○ (현행과 같음)
○ 지원요건: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 (현행과 같음)
① 인수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 취득	
② 피인수법인의 지분 50% 초과 취득할 것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30%)	
③ 매입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인수법인 순자산시가의 130%와 인수지분율을 곱한 금액 이상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에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아닐 것	
⑤ 피인수법인이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 취득기간: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최대 2년간 분할 취득 가능)	○ 취득기간: 최초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최대 3년간 분할 취득 가능)
○ 세액공제율: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	○ 세액공제율: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5%
○ 적용기한: 2024. 12. 31.	○ 적용기한: 2027. 12. 31.

*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 2건의 개정안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에서 5%로 하향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며, 특례의 적용기간을 2027

년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는 내국법인이 기술가치를 고려하여 순자산시가의 130%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239]을 합병·인수하는 경우 그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동 특례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의 150% 이상'이던 요건을 '130% 이상'으로 완화하고(2015년), 양도가액 중 현금지급비율 요건을 삭제(2017년)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2014년에 신설된 후 3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2024년 말로 적용기한이 도래할 예정임.

[기술혁신형 합병·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연혁]

구분	도입 ('14.1.1)	1차개정 ('15.12)	2차개정 ('16.12)	3차개정 ('17.12)	4차개정 ('18.12)	5차개정 ('21.12)	6차개정 ('23.12)
지원대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인수하는 내국법인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공제율	양도·인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주요 지원 요건	①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 합병·인수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② 양도·인수가액이 피합병·인수법인 순자산시가의 150% 이상	130% 이상으로 변경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③ 양도·인수가액	(좌동)	현금	요건	(좌동)	(좌동)	(좌동)

239)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신기술 인증 등을 받은 기업 등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구분	도입 ('14.1.1)	1차개정 ('15.12)	2차개정 ('16.12)	3차개정 ('17.12)	4차개정 ('18.12)	5차개정 ('21.12)	6차개정 ('23.12)
	중 현금지급비율이 80% 초과		지급비율 50%초과	삭제			
주식등 취득기간	최초취득일 현재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최초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최초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적용기한	2015. 12. 31.	2018.12.31.	(좌동)	(좌동)	2021.12.31.	2024.12.31.	(좌동)

동 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12억원, 2018년 4억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 47억원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4년 및 2025년에도 큰 폭으로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기술혁신형 합병·인수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2	4	9	47	64	53	76	182	190

주)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① 동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취득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② 세액공제율을 10%에서 5%로 하향하며, ③ 특례의 적용기간을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가. 주식등 취득기간의 확대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준지분비율[240]을 초과하여 피인수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다수의 주주로부터 동일한 날에 주식을 인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241] 2021년 세법개정을 통해 지분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분할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또한, 기준지분비율 취득기간을 동일사업연도로 한정할 경우 짧은 기간 내 순차취득이 이루어졌어도 사업연도가 바뀌는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과세형평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242]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3년 세법개정에서는 원활한 기업 인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로 규정한 기준지분비율 취득기간을 '최초 취득일로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보다 완화시켰음.

---

240)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을 의미함.

241)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검토보고', 2021.11.11.

242)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인수법인(사업연도 1월1일 ~12월31일)이 발행주식총수가 10,000주인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기준지분비율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기간이 동일사업연도에 이루어지지 못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하였음.

취득일	피인수법인 주주	취득주식 수	인수법인지분율(누적)
2024. 11. 9.	A	3,750	37.5%
2024. 12. 15.	B	1,000	47.5%
2025. 1. 15.	C	1,000	57.5%

□ 개정안은 인수주식을 장기간 분할하여 양도하더라도 특례가 적용되도록 주식취득 기간 요건을 최대 3년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다만, 동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식취득기간은 최근 2021년과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최대 2년으로 연장하였고, 이에 따라 동 특례의 조세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또 다시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세액공제율 하향

□ 개정안은 동 특례의 도입 이후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는 10%의 세액공제율을 5%로 하향하려는 것으로서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등 유사제도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현행법상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전문창업투자회사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신규로 취득하여 출자하는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를 세액공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혁신창업 생태계의 활성화라는 유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취득에 대해서도 벤처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양 제도는 모두 벤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다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일반적인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 중심의 직접적인 출자를 유도하기 위한 특례인 반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의 투자금액 회수를 정책적으로 활성화하여 자금의 선순환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양 제도 간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다. 적용기한 연장

□ 개정안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인수를 촉진하여 벤처 창업자 등이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한 자금의 재투자 등 유동성 증가로 벤처업계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음.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의 회수는 인수합병보다는 투자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업공개(IPO)[243] 또는 장외 주식매각에 의존하고 있으므로,[244] 해외사례[245]와 같이 인수합병 방식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합병법인 및 인수법인이 취득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신규투자 및 고용창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셋째, 기술혁신형 합병·인수를 촉진함으로써 벤처기업이 가진 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최근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조달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어려운

243) 벤처투자자 피투자기업의 코스닥 IPO 소요기간 : 13.5년(2022년 기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44)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 벤처캐피탈(VC) 회수원금 1조6,450억원 중 IPO의 비중은 38.1%이고, M&A와 장외매각의 비중은 32.2%로 나타났으며, 이 중 M&A는 5% 안팎으로 알려짐.

245) 미국벤처캐피털협회(NVCA)에 따르면, 2023년 벤처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자금회수 방법으로 IPO는 5%에 불과하며, M&A가 95%를 차지하고 있음.

현실에서는 벤처기업이 보유한 뛰어난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하여 사장될 우려가 있음.

[벤처기업 경영 애로사항]

(단위: 점, %)

구분	신기술 개발	기술 사업화	국내판로개척	해외시장개척	필요인력 확보·유지	자금 조달·운용	기술유출 및 디자인·상표 도용	과당경쟁 및 덤핑
5점 척도	3.3	3.5	3.7	3.4	3.8	3.9	3.1	3.2
상위응답률	42.6	48.3	58.6	46.6	61.8	68.8	28.0	34.0
구분	법률, 회계 지식 부족	조직관리	환율변동	특허분쟁	각종 규제	산학연 협력	불공정한 시장질서	
5점 척도	3.0	3.1	2.9	2.7	3.1	2.8	2.8	
상위응답률	26.8	32.0	26.4	24.0	29.3	16.4	16.4	

주) 상위응답률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24.1.10.

다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인수하는 내국법인이면 그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혁신형 합병·인수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이 주로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동 특례는 벤처기업의 기술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순자산시가의 130% 이상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이와 같은 공격적인 합병·인수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기술을 취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5

6.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가. 지방이전지원세제 개요

□ 현행법에서는 수도권에 공장 및 기업활동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공장이전세액감면 제도(법 제63조)는 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내국인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임

본사이전세액감면 제도(법 제63조의2)는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가동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최대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임.

[수도권 밖으로 공장(제63조) 및 본사(제63조의2)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비교]

구분		공장이전세액감면 제도	본사이전세액감면 제도
요건	대상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의 사업영위 기업(법인, 개인)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의 사업영위 법인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중소기업은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업종	이전 후 동일 업종 영위	
	투자 및 고용	해당 없음	이전본사에 대한 투자금액 10억원 + 이전본사 근무인원 20명
감면소득		이전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본사 이전 비율에 따라 산출된 소득* * 이전본사 근무인원/법인전체 근무인원

구분	공장이전세액감면 제도	본사이전세액감면 제도
세액감면	· 지방중규모도시 등이 아닌 위기지역 등의 경우 12년간 감면 (10년간 100%, 그다음 2년간 50%) · 지방중규모도시 등이 아닌 지역, 지방중규모도시 내의 위기지역 등의 경우 10년간 감면(7년간 100%, 그다음 3년간 5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방중규모도시 등의 경우 7년간 감면 (5년 100%, 그다음 2년간 50%)	
감면한도	없음	
최저한세	적용 배제 (단, §63에 따라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과세특례의 조세지출 실적으로 살펴보면, 공장이전세액감면은 2021년 2,052억원에서 2023년 1,279억원으로 감소했으며, 본사이전세액감면은 2021년 3,032억원에서 2023년 727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감소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공장이전 세액감면	2,052 소득세 (253) 법인세 (1,799)	1,192 소득세 (264) 법인세 (928)	1,279 소득세 (249) 법인세 (1,029)	805 소득세 (195) 법인세 (610)	847 소득세 (208) 법인세 (639)
본사이전 세액감면	3,032	2,993	727	383	401

주) 2024년, 2025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지방이전지원세제 개요]

□ 이전시 발생하는 기존 본사 및 공장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해당 조문	이전 대상	이전 요건	과세특례
제60조	공장	대도시 → 대도시 밖	익금불산입 후 5년 거치 5년간 분할익금산입
제61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밖	

□ 지방이전 후 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해당 조문	이전 대상	이전 요건	과세특례
제63조	공장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중소기업은 과밀억제권역 밖)	5년간 100% + 2년 50%[1)] 7년간 100% + 3년 50%[2)] 10년간 100% + 2년 50%[3)]
제63조의2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지방의 광역시, 중규모도시 등으로 이전
2) 지방광역시·중규모도시 내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이전
3)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수도권·지방광역시·중규모도시 등은 제외)으로 이전

□ 공공기관의 본사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해당 조문	이전 대상	이전 요건	과세특례
제62조	공공기관의 본사	수도권 →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익금불산입 후 5년 거치 5년간 분할익금산입

* 대도시: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②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대구광역시(달성군 및 군위군 제외),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246)]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247)]
*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248)]

246)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2항제2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24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24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1

나. 수도권 내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축소

현 행	개정안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
○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인	○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인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였을 것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②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은 수도권 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 중소기업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 (현행과 같음)
○ 감면대상: 이전 후 공장 발생소득	○ (현행과 같음)
○ 감면율	○ 감면율
-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밖)*, 지방광역시, 중규모도시 등으로 이전시: 5년간 100% + 2년간 50%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지방광역시, 중규모도시 등으로 이전시: 5년간 100% + 2년간 50%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
- 지방광역시 및 중규모도시 중 낙후지역*으로 이전시: 7년간 100% + 3년간 50%	- (현행과 같음)
*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현 행	개정안
- 그 외 낙후지역으로 이전 시: 10년간 100% + 2년 50%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5. 12. 31.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5. 1. 1.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이전을 위해 기존 부지나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이전을 위해 신규 부지나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 2건의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본사와 함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공장이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만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공장과 본사를 모두 과밀억제권역 밖의 수도권으로 이전할 때에는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처럼 세액감면을 적용 중임. 이전 후 공장에

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년간 100%를 감면받을 수 있고,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음.

공장이전 중소기업 중 수도권 내 이전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신고 건수 기준으로 비중이 89.3%이고,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비중이 50.3%임.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신고 건수]

(단위: 건)

연도	'18	'19	'20	'21	'22	계
수도권(a)	694	636	598	578	561	3,067
전체(b)	766	708	669	649	642	3,434
수도권 비중(a/b)	90.6%	89.8%	89.4%	89.1%	87.4%	89.3%

자료: 기획재정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신고 금액]

(단위: 백만원)

연도	'18	'19	'20	'21	'22	계
수도권(a)	29,197	27,883	29,692	30,791	29,005	146,569
전체(b)	43,344	42,112	44,474	122,742	38,658	291,330
수도권 비중(a/b)	67.4%	66.2%	66.8%	25.1%	75.0%	50.3%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며,[249] 현재 전국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은 현재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등 4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음.

[인구감소지역 지정현황(2024년 8월 기준)]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

24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3조(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도에 속한 시・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개정안은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이전의 범위를 더 엄격하게 규정하여 공장의 수도권 내 이동을 억제하고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수도권 내 권역별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과밀억제권역은 인구가 40만 7,000명 감소한 반면, 성장관리권역은 인구가 36만 2,000명 증가하고 자연보전권역은 2만 2,000명 증가한 상황임. 즉,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집중이 완화되는 추세이고 과밀억제권역 밖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

[수도권 내 권역별 인구 추이]

(단위: 천명)

구분	2020년(a)	2023년(b)	증감(b-a)
과밀억제권역	18,981	18,574	△407
성장관리권역	5,804	6,166	362
자연보전권역	1,252	1,274	22

자료: e-나라지표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최근 수도권 지역의 순이동자 수[250]를 살펴보면, 2016년까지 인구가 순유출되었으나 2017년 이후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음. 호남권과 영남권은 매년 순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순유출 규모도 큰

250) 순이동자수는 대한민국 국민 중 국내의 일정한 지역에 살던 사람이 읍면동 경계를 벗어나 국내의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를 집계한 것으로 읍면동의 전입신고서를 기초로 작성되는 통계로,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뺀 값으로 계산함. 순이동자수가 양(+)의 값을 가지면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경우이며 순 인구유입을 의미하고, 순이동자수가 음(-)의 값을 가지면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경우로 순 인구유출을 의미함.

상황임.

[권역별 순이동자 수 추이]

(단위: 천명)

권 역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도권	-4	-21	-33	-1	16	60	83	88	56	37	46
중부권	28	39	49	41	42	28	11	12	24	34	17
호남권	-7	-6	-8	-16	-18	-28	-25	-24	-16	-13	-15
영남권	-25	-23	-22	-40	-54	-69	-71	-78	-67	-61	-47

주)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중부권: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
호남권: 광주・전북・전남 / 영남권: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자료: 통계청, '2022년 국내인구이동 결과' 내용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공장이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수도권 내 공장이전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로만 한정하면, 수도권 내 중소기업 공장 이전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에 속하지 않더라도 과밀억제권역 밖의 수도권 지역 중 낙후되거나 인구감소의 위험을 직면하고 있는 지역은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이전 대상 지역에서 배제되어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인구감소지수가 높아 정부에서 '관심지역'으로 선정된 18개 지역이 있는데, 인천 동구, 경기 동두천시, 경기 포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2021년 기준 인천시는 총 군·구 10개 중 6개(60%)가 전국 시·군·구 평균소득의 중위값에 미치지 못하였고, 경기도는 총 시·

군·구 42개 중 11개(26%)가 전국 시·군·구 평균소득의 중위값에 미치지 못하였음.[251]

따라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비수도권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의 필요성과 수도권 낙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과밀억제권역 밖의 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감면을 계속 지원하되 감면율을 낮추거나 감면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을 지방광역시 및 중규모 도시 등 비수도권 지역과 차등 지원함으로써 수도권 내로 공장을 이전할 유인을 존속시키는 대신 수도권 내 이전을 장려하는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음.

참고로, 정부안(의안번호 3522)은 수도권 내 지원을 정비하기 위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법 제6조)에 대한 개정도 포함하고 있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에 소재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려는 것인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아닌 감면율을 25%p 인하하는 방식임.[252]

251) 서울연구원,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2023. 12.

252)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밖의 수도권 내 위치한 창업중소기업은 5년간 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과밀억제권역 밖의 수도권 내 위치한 청년·생계형 창업중소기업 5년간 세액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음.

다. 과거 감면기업 적용 제외 및 동일업종 영위기간 요건 추가

현 행	개정안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
○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인	○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내국인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였을 것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였을 것. <u>다만, 이전을 위해 조업을 중단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이 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u>
②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은 수도권 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③ (현행과 같음)
○ 업종요건: <u>이전 전·후 동일한 업종 영위</u>	○ 업종요건: <u>이전 전 2년(중소기업은 1년)간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u>
○ 감면대상: 이전 후 공장 발생소득	○ (현행과 같음)
○ 감면율 - <u>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밖)*</u>, 지방 광역시, 중규모도시 등으로 이전시: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5년간 100% + 2년간 50%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 - 지방광역시 및 중규모도시 중 낙후지역*으로 이전시: 7년간 100% + 3년간 50% *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 그 외 낙후지역으로 이전 시: 10년간 100% + 2년 50%	
○ 적용기한: 2025. 12. 31.	○ (현행과 같음)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의2)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의2)
○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법인	○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u>다만,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이 조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은 제외</u>
-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 (현행과 같음)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 대한 투자금액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현행과 같음)
○ 업종요건: <u>이전 전·후 동일한 업종 영위</u>	○ 업종요건: <u>이전 전 2년간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u>
○ 감면대상: ①×②×③	○ (현행과 같음)
- ①: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등 제외한 금액	
- ②: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비율	

현 행	개정안
- ③: 위탁가공무역 외 매출비율	
○ 감면율	○ (현행과 같음)
- 지방광역시, 중규모도시 등으로 이전시: 5년간 100% + 2년간 50%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	
- 지방광역시 및 중규모도시 중 낙후지역*으로 이전시: 7년간 100% + 3년간 50% *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 그 외 낙후지역으로 이전 시: 10년간 100% + 2년 50%	
○ 적용기한: 2025. 12. 31.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5. 1. 1.
	○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 법 시행 전에 공장·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법 시행 이후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공장·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이전을 위해 기존 부지나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이전을 위해 신규 부지나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 2건의 개정안은 중복감면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공장 또는 본사 이전 전 10년 내에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업종 영위기간 요건(2년, 공장이전 중소기업은 1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 현행 공장이전세액감면 제도와 본사이전세액감면 제도는 업종요건을 두고 있는데, 공장이전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 기준[253]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하고, 본사이전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 기준으로 이전 전의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함.[254]

또한, 공장이전세액감면 제도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①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②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③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함.

---

253) 한국표준사업분류는 '대>중>소>세>세세' 등 5단계로 구분됨.

254) 「조세특례제한법 」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⑦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공장이전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⑤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본사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또한, 본사이전세액감면 제도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①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③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④감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 중 이전본사의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함.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이전하기 전 10년 중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동일 기업이 공장·본사를 수도권 안팎으로 반복 이전하며 중복 감면받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4년 이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본사 지방이전 감면을 받은 법인 중 총 5개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으로 재이전하였음. 2개 법인은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으로 재이전하였으며, 3개 법인은 감면기간 중 재이전하였음.[255]

이와 같은 수도권 재이전은 지방에 기업 본사 및 공장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도권으로 공장 및 본사를 재이전한 기업이 다시

255) 감사원, 「감사보고서: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2020. 4.

세액감면을 받는 것은 방지할 필요가 있음.

둘째, 동일업종 영위기간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이전 직전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전 전·후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해야 하는 감면요건을 우회하는 행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

지방으로 이전하며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조세혜택이 지방이전지원세제에 비해 작은 지방창업(5년간 50~100% 세액감면, 법 제6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 제도는 이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기 위해 동일업종 요건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이전 전 해당 업종을 영위한 기간에 대한 요건이 없어, 이전 직전에 업종을 추가하여 동일업종 요건을 우회할 수 있는 상황임. 개정안과 같이 동일업종 영위기간 요건을 추가할 경우 이러한 요건 우회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공장이전세액감면 제도는 이전한 공장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제공하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과거 10년 내 공장이전세액감면을 받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공장을 이전하여 신규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는 것은 중복감면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본사이전세액감면제도와 달리 공장이전세액감면제도는 기업의 전체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한 공장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지원하는 것임.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고 수도권으로 재이전한 후, 해당 공장을 다시 지방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것은 중복감면으로 볼 수 있으나,

기업이 과거에 지방이전을 한 공장과 무관하게 새로운 공장을 이전하여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는 것은 과거와 원천이 다른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는 것이므로, 중복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현행 제도 하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A제품을 생산하는 C공장과 B제품을 생산하는 D공장을 운영 중인 甲기업이 C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 C공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세액감면을 받기 시작한 지 1년 후, D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 이전한 D공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C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과 D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은 서로 다른 소득에 대한 감면이므로 중복감면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과거에 이전한 공장과 다른 새로운 공장을 이전한 경우까지 감면을 배제할 필요성이 낮은 측면이 있음.

둘째, 개정안과 같이 과거 10년 내 공장이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면, 추가적으로 공장을 지방

에 이전할 유인이 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앞의 예시에서 현행제도에 따라 甲기업은 C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여 C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았더라도, 이후 D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 D공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음.

즉, 현행 제도는 과거에 일부 공장을 이전한 기업이 추가로 다른 공장을 지방에 이전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장의 추가적인 지방이전을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됨.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C공장 이전으로 감면을 받은 甲기업은 별개의 공장인 D공장을 지방으로 옮겨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공장의 추가 지방이전을 추진할 유인이 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라. 공장이전세액감면 제외업종 규정 삭제

현 행	개정안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
○ 제외업종: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 등	○ (삭 제)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의2)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의2)
○ 제외업종: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 등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5. 1. 1.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 2건의 개정안은 조문 정비를 위해 공장이전세액감면 조문(법 제63조)에서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적용 제외업종으로 규정한 단서를 삭제하려는 것임.

□ 2020년 세법개정 이전에는 법 제63조에 '중소기업의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가 규정되고 법 제63조의2에 '법인의 공장·본사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제도가 규정되어 있었음. 당초 제63조에는 제외업종 규정이 없었으며, 제63조의2에서만 부동산업·건설업 등을 제외하고 있었음.[256]

256) 舊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460호, 2020. 6. 9.)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

그런데 2020년 세법개정으로 지방이전지원세제 조문구성을 변경하면서, 개정 이전 제63조의2에만 존재하던 제외업종 단서가 제63조(기업의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와 제63조의2(기업의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에 동일하게 포함되었음.

[2020년 세법개정 전후 조문 구성]

구 분		2020년 세법개정 이전	2020년 세법개정 이후
제63조	내용	중소기업의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기업의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외업종 단서	X	O
제63조의2	내용	법인의 공장·본사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기업의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외업종 단서	O	O

그런데 제외업종으로 열거된 부동산업, 건설업 등은 업종 특성상 공장[257]을 보유하지 않는 업종이므로, 제외업종 단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 제63조에 따른 공장이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공장이전세액감면 대상의 제외업종을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으로 규정한 단서는 불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공장의 범위등) ①법 제60조 및 제63조에서 "공장"이란 각각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필요한 단서임.

□ 이에 개정안은 공장이전세액감면 조문(법 제63조)에서 제외업종을 규정한 단서를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불필요한 단서를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입법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5

7.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제74조제1항)	□ 적용대상에 의료기술협력단 추가
○ 특례대상	○ 특례대상
- 사립학교법인, 산학협력단, 원격대학 운영 비영리법인, 국립서울대학법인 및 발전기금, 국립인천대학법인 및 발전기금	- (현행과 같음)
- 사회복지법인	- (현행과 같음)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등	- (현행과 같음)
- 도서관 운영법인	- (현행과 같음)
- 등록 박물관 또는 미술관 운영 법인	- (현행과 같음)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현행과 같음)
-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 (현행과 같음)
- 공익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80% 이상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 (현행과 같음)
-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현행과 같음)
	- <u>사립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등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 추가</u>
○ 특례내용: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기 위한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비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100%를 손금에 산입	
○ 적용기한: 2025. 12. 31.	○ (현행과 같음)

*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 2건의 개정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법인 대상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추가하려는 것임.

□ 현행 「법인세법」 제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258]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는 「법인세법」제29조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일반기부금 지출을 위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258)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음.

동 특례는 1976년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5항의 '사립학교수익사업으로부터의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부터 도입되어 그 대상이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1995년부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체에 대한 손금산입이 허용되었고 그 대상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단체 등이 추가되었으며, 이후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전부개정으로 1999년부터 적용기한이 설정된 이후 계속 기한이 연장되어 왔음.

동 손금산입특례에 따른 조세지출은 연간 1,000억원 대의 조세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의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법인세	1,538	1,675	1,524	1,094	404	423

주)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한편, 최근 연구중심병원의 산업·병원·연구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인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법률[259]이

25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2024.1.16. 개정)
제28조의2(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의료기술협력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의료기술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마련됨에 따라 의료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체계가 변경되었음.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11년 연구중심병원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연구중심병원이 연구 성과로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사업화에 따른 수익이 병원에 귀속되기 어려운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됨.

즉, 대학병원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이용하여 특허출원·기술이전 등의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고 있어 연구 성과 수익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귀속되며, 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특허출원·기술이전 등의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게 되어 병원의 연구 성과 수익은 법인으로 귀속되어 온 것임.[260]

---

④ 의료기술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병원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의료기술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병원의 회계에 편입한다.
⑥ 의료기술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의료기술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28조의4(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병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병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
5. 보건의료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병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연구중심병원은 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8조의6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260)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19호) 검토보고서, 2023.4.

[연구중심병원 법인 유형]

구분	학교법인 (4개)	특수법인 (2개)	의료법인 (2개)	사회복지재단 (1개)	사회복지법인 (1개)
연구중심 병원 (10개)	고대 구로병원 고대 안암병원 연대 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가천길병원 분당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산학협력단 유무	있음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최근 개정된「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는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하여 R&D 계약체결·이행, 지식재산권 취득·관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등 산업·병원·연구 협력에 관한 주요 업무를 관장하게 함으로써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수익이 병원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수익을 연구비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설립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법인에 포함하려는 것으로서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 선순환체계 구축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또한, 현행법에서는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의료기술협력단은 연구중심병원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분리하여 설립되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산

학협력단이 특례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261]

문 의 처
02)6788-5155

261)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하고, 제6호의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마. 삭제
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라.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사.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

8.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박성훈의원안, 정성호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제104조의10)	□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 특례내용: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실제 영업이익이 아니라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음	○ (현행과 같음)
- 과세표준(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의 순톤수×톤당 1운항일 이익×운항일수×사용률)	- 선박의 소유 여부에 따라 톤당 운항일 이익을 차등화하기 위해 위임근거 마련(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운항일 이익 : 선박톤수, 해운기업의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 실적 및 외국의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하여 톤당 3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운항일 이익 : 선박톤수, 선박 소유 현황, 해운기업의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 실적 및 외국의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하여 톤당 3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적용기한 - 2024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 2029. 12. 31.(박성훈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2034. 12. 31.(정성호의원안)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박성훈의원안) - 2025. 1. 1. (정성호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박성훈의원안 2024. 6. 3. 발의(의안번호 80), 정성호의원안 2024. 7. 19. 발의(의안번호 1981),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 4건의 개정안은 국내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제도(이하 “톤세제도”)의 적

용기한을 연장하고, 과세표준(선박표준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톤당 운항일 이익을 선박의 소유현황에 따라 차등화하기 위해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안은 2024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안은 2024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적용기한을 2034년 말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부안·정태호의원안은 2024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과세표준(선박표준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톤당 운항일 이익을 선박의 소유현황에 따라 차등화하기 위해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의 규정에 따른 톤세제도는 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고 비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인세 원칙에 따라 과세하지만,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실제소득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과세표준[262]으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임.

262) 과세표준은 ∑(개별선박의 순톤수×톤당 1운항일 이익×운항일수×사용률)으로 계산됨.

[톤세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법인세 산출 방식]

과세 표준	비해운소득 법인세법상 익금 - 법인세법상 손금	×	법인세율	=	법인세액
	해운소득 ∑개별선박순톤수×톤당 1운항일 이익×운항일수 ×사용률				

주) 선박은 해당 기업이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을 의미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톤당 1운항일 이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은 개별선박의 순톤수에 따라 톤당 1운항일 이익을 4원~14원으로 정하고 있음.[263]

26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2. 해운소득 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톤당 1운항일 이익은 선박톤수, 해운기업의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실적 및 외국의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하여 톤당 3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④법 제104조의10제8항에서 "1톤당 1운항일이익"은 다음과 같다.

개별선박의 순톤수	1톤당 1운항일이익
1,000톤 이하분	14원
1,000톤 초과 10,000톤 이하분	11원
1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분	7원
25,000톤 초과분	4원

톤세제도는 1990년대 유럽 해운국들이 자국 상선대의 회복과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하였는데, 우리나라도 경쟁국과 대등한 조세환경 조성을 위해 2005년에 도입했음. 2005년 시행 이후 적용기한은 매 5년마다 중단없이 연장되어 왔으며, 2024년 12월 31일로 적용기한이 일단 종료될 예정임.

톤세제도는 경기침체로 해운업 수익이 감소하면 법인세 감면액이 함께 줄어들고, 경기가 회복되어 수익이 증가하면 감면액도 늘어나는 구조인데,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2023년) 간 톤세 적용으로 인한 법인세 감면액은 연평균 6,548억원 수준임.

연도별로 186억원~4조 2,777억원이 감면되었으며, 증감추세는 일정하지 않음. 2022년 및 2023년은 물동량 확대 및 국제 운임지수 급등 등으로 해운기업의 실적이 급증함에 따라 법인세 감면액이 증가하였음.

[톤세 적용으로 인한 연도별 법인세 감면액]

(단위: 억원)

신고 연도	톤세 미적용 시 예상 법인세(A)	톤세 신고액 (B)	법인세 감면액 (A-B)	신고 연도	톤세 미적용 시 예상 법인세(A)	톤세 신고액 (B)	법인세 감면액 (A-B)
2006년	3,684	424	3,260	2015년	2,081	1,316	765
2007년	2,285	689	1,596	2016년	2,246	1,435	811
2008년	3,591	1,335	2,257	2017년	660	233	427
2009년	7,922	1,614	6,309	2018년	2,633	1,451	1,182
2010년	1,401	680	721	2019년	1,231	1,045	186
2011년	2,233	756	1,476	2020년	2,099	1,741	358
2012년	1,429	1,080	349	2021년	2,539	1,151	1,388

신고 연도	톤세 미적용 시 예상 법인세(A)	톤세 신고액 (B)	법인세 감면액 (A-B)	신고 연도	톤세 미적용 시 예상 법인세(A)	톤세 신고액 (B)	법인세 감면액 (A-B)
2013년	2,180	1,142	1,038	2022년	18,421	1,935	16,486
2014년	2,210	1,109	1,101	2023년	46,267	3,489	42,777

주) 해운협회에 등록된 선사 기준으로 각 사가 계산한 값을 취합한 것임
자료: 예산정책처

한편, 해운기업 톤세 제도 도입 이전인 2004년 536척이었던 국적외항 상선(국적선 및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은 2022년에 1,154척으로 증가하였음. 또한, 2023년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배상선대[264] 규모는 1,696척, 97,144천 DWT(Dead Weight Tonnage, 중량톤수)로 세계에서 척수 기준 7위, DWT 기준 6위임.

264) 국적선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선박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임.

가. 적용기한 연장(박성훈의원안, 정성호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개정안은 톤세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첫째,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온 톤세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해운기업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해운업계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할 수 있음.

톤세제도는 선박톤수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져 해운기업의 법인세 지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중장기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하고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해운기업의 선박 재투자 여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실제로, 톤세제도를 도입한 이후 외항선대는 2004년 536척에서 2021년 1,154척으로 2.15배 증가하였음.

둘째, 일본·미국·영국·네덜란드·독일 등 주요국들이 톤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톤세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편의치적[265]에 따른 국적선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음.

해운산업은 선박등록 및 조세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국가로 선적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국제적 이동성이 높은 특징이 있어, 자국 선박 이탈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해운선진국들이 경쟁

265) 세금을 줄이고 값 싼 외국인 선원을 승선시키기 위해 선주가 소유하게 된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에 치적하는 것을 의미함.

적으로 톤세제도를 도입한바 있음.

[톤세제 시행 주요국의 톤세제 도입연도 및 도입 주요 목적]

구분	도입연도	도입 주요 목적
한국	2005년	편의치적 방지 및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등
영국	2000년	국적선복량 증대 및 자국 선박 직원 규모의 유지·확대 등
네덜란드	1996년	네덜란드 해사 산업의 쇠퇴 방지 등
독일	1999년	독일 해운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확보 등
덴마크	2002년	덴마크 해운기업 경쟁력 제고 및 국적선 이탈 방지 등
노르웨이	1996년	노르웨이 해운기업 경쟁력 제고 및 국적선 유지 등
프랑스	2002년	프랑스 해운기업 경쟁력 제고 및 해운부문 고용 증대 등
그리스	1975년	자국선적 등록을 통한 자국 지배선대 확대 등
몰타	1973년	자국선적 선박을 확대하고 자국 해운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등
미국	2004년	미국 일자리 창출법의 일환으로 도입 등
일본	2008년	일본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국제 해상운송 안정화를 통해 경제안전보장 확립 등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동향분석 Vo.195(2024. 2.)

다른 주요 해운선진국들이 톤세제도를 지속 시행 중임으로 고려할 때, 톤세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국적선 이탈로 우리나라 해운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화물운송능력이 저하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해운기업에 적용되는 톤세제도는 특정산업에 대해 다른 산업과 다른 법인세 산출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조세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특히, 경기가 좋을 때 톤세제도 적용에 따

른 감면규모가 늘어나는데, 2023년에는 감면액이 4조 2,777억원에 달하였음.

둘째, 톤세제도 적용기한 연장에 따라 2026년 이후 매년 6,000억원 이상의 조세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2025~2030년]

(단위: 억원)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104조의10)	△517	△6,548	△6,548	△6,548	△6,548	△6,032	△32,741	△5,457

자료: 예산정책처

셋째,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감면액이 규모가 큰 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산업내 형평성이 낮은 측면이 있음.

총 감면액 기준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중/대기업)의 감면액 비중은 2020년에 93.51%, 2021년에 99.17%, 2022년에 99.49%로 높은 수준이며 증가 추세에 있음.

또한, 2022년 10대 기업의 법인세 절감액은 총 4조 609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절감의 95%에 이르고 있음.

□ 한편,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안마다 5년 또는 10년의 기간을 제안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

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나. 톤당 운항일 이익을 선박의 소유현황에 따라 차등화하기 위한 위임근거 마련(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톤당 운항일 이익을 선박의 소유현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 마련하려는 것으로서,[266]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용선에 비해 자사선에 더 낮은 톤당 운항일 이익을 적용하게 되면, 해운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사선을 늘리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임.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84.6%로서 매우 높은 수준인데, 수출입 의존이 높은 우리 경제에서 수출입물류의 99.7%를 해운이 담당하고 있음.

해운기업이 자사선을 더 많이 확보하면 선박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해상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반면, 해운기업들이 자사선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지 못하면 수출기업들은 외국 선사들의 고운임 정책에

266) 정부는 2005년 톤세제 시행 이후 물가 및 운임상승 등을 감안하여 톤당 운항일 이익을 30% 인상할 계획인데, 자사선 확대를 위해 인상된 운항일 이익은 기준선박 외 '용선'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할 계획임.

개별선박순톤수	톤당 1운항일 이익	
	기준선박	기준선박 外
1,000톤 이하분	14원	18.2원
1,000~10,000톤	11원	14.3원
10,000~25,000톤	7원	9.1원
25,000톤 초과분	4원	5.2원

주) 기준선박: 해당 기업 소유 선박,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 리스 선박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자사선 수요 증대로 국내 조선산업의 선박 수주를 늘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톤세제는 용선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가 자사선 연간운항순톤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267] 현행 제도상 이미 국내 해운기업들이 용선선박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업규모가 커 투자여력이 큰 기업들이 자사선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어 자사선비율이 높고 용선비율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용선 등에 대해 인상된 운항일 이익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투자여력이 작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여 기업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음.

실제로 톤세납부세액 구간이 '10억원 이상'인 해운기업들은 평균 용선비율이 1.15배인데,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해운기업들은

26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법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2.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다만, 수산물운송사업을 제외한다.
3.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운항사업

평균용선비율이 1.66으로 용선비율이 더 높음. 즉, 개정안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세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늘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

[톤세 납부세액 구간별 선사 수 및 평균 용선 비율]

(단위: 천원, 배)

톤세 납부세액 구간	해당 선사 수	평균 용선비율
10억원 이상	8	1.15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7	1.66
1억원 미만	75	0.60
합 계	100	-

자료: 해양수산부

셋째, 자사선과 용선의 비율에 대한 결정은 미래의 해운 수요 등을 고려한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기업의 주요 결정사항인데, 정부가 자사선과 용선에 대한 세금부과를 차등화하면 기업의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기업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155

9.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정태호 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제104조의11)	□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회사 등	○ (현행과 같음)
○ 특례: 신용회복목적 회사에 출연 시 해당 출연 금액 손금 산입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4. 12. 31.	○ 적용기한: 2027. 12. 31.

*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 2건의 개정안은 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한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신용회복목적회사란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으로서 현재 국민행복기금과 새출발기금이 있음.

먼저, 국민행복기금(舊 신용회복기금)[268]은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채무조정 및 저금리전환 사업을 통해 약 143만명을 지원하고, 햇살론 사업을 통해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자, 저신용자 등에게 5조 2,05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소외자의 극빈층 전락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268) 종전에는 2008년 금융위원회의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이 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2013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기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국민행복기금이 설립되었음.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지원 연도별 실적]

(단위: 만명)

구 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계
채무조정	7.6	8.9	7.8	8.3	24.6	16.1	14.3	12.6	8.5	3.0	3.0	1.0	0.9	0.7	0.5	117.8
저금리전환	1.5	1.7	4.6	6.2	5.7	1.7	1.0	0.9	0.5	0.8	0.7	-	0.2	0.1	-	25.6
소계	9.1	10.6	12.4	14.5	30.3	17.8	15.3	13.5	9.0	3.8	3.7	1.0	1.1	0.8	0.5	143.4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최저신용자 신용보증(햇살론15(17)) 연도별 실적]

(단위: 억원)

목표	실적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달성도
50,000	3,807	9,990	10,862	14,305	13,086	52,050	104.1%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 신용회복목적회사로 지정되었으며,[269] 2024년 7월말 기준으로 채무조정 신청인원이 77,976명, 채무액은 126,041억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음.[270]

한편, 현행법 제104조의11의 규정[271]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금융회사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액을 해당 사

269) 「신용회복목적회사 신규 지정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2022. 10. 4.)

270)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현황', 2023.11.6.

27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0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금융회사등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08년 금융소외자의 재활지원을 위해 출범한 신용회복기금의 재원을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272] 중 금융기관에 돌아갈 분배금을 신용회복기관에 출자함으로써 조성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금융기관 분배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로 인해 신용회복기금의 출자재원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273] 동 규정이 신설되었음.

이후 금융기관이 2009년 및 2010년에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반환받아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자한 이후 자발적으로 출연한 실적은 미비하여 동 특례의 지속 필요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2021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 손금산입하는 특례로 개편하면서 금융기관은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을 다시 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켰음.

2023년 은행권은 이익의 사회환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274] 서민금융의 재원 감소를 방지하기

27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총 39.2조원의 공적자금(부실채권정리기금)을 투입하여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약 111조원에 이르는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인수·정리하여 투입된 공적자금보다 8.9조원을 초과회수함.

273) 당시 금융기관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약 7,000억원이었으며, 그에 상당하는 법인세액이 약 2,000억원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약 5,000억원만을 신용회복기금에 출자할 수 있었음.

274) 은행연합회,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취약계층 등을 위해 10조원+α를 추가로 공급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분담하겠습니다.', 2023.2.15. 보도자료.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에는 ①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을 활용한 저소득·저신용자 등 지원(약 3조원), ② 금융소외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위한 추가 출연(약 3조원), ③ 기타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약 4조원 이상) 등을 포함하여 향후 3년간 취약계층 등을 위해 10조원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위해서는 은행권의 출연금에 대한 손금 산입 특례가 재차 도입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금융기관을 특례대상에 다시 포함시킨 것임.

동 특례의 조세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2년에는 조세지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금융기관을 특례대상으로 적용된 2023년 84억원의 지출이 발생하였고, 2024년 및 2025년에는 14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	-	-	-	84	140	140

주)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한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서민금융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자금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안정적인 보증상품 공급을 위한 기금 재원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금융회사등의 국민행복기금 재원 출연 시 손금산입을 통해 출연기관이 법인세를 절감하고, 절감된 법인세만큼 국민행복기금의 서민금융재원이 확충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특히, 2023년 은행권이 사회공헌 프로젝트으로 일환으로 4년간 900

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됨.

문 의 처
02)6788-5155

10.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엄태영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제104조의24)	□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로 완전 또는 부분 복귀한 기업	○ (현행과 같음)
○ 세액감면율	○ 세액감면율:
-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 7년 100% + 3년 50%	-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 (현행과 같음) (엄태영·한병도·윤준병·김주영·정태호의원안, 정부안) 9년 100% + 5년 50% (최은석의원안)
- 수도권 내 부분복귀: 3년 100% + 2년 50%	- (현행과 같음)
○ 업종요건: 국외사업장과 국내이전·복귀사업장 간 업종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4.12.31.	○ 적용기한 - 2026.12.31.(엄태영의원안, 김주영의원안) - 2027.12.31.(한병도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2029.12.31.(최은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시행일: 2025. 1. 1.

* 엄태영의원안 2024. 6. 17. 발의(의안번호 526), 한병도의원안 2024. 7. 5. 발의(의안번호 1413), 최은석의원안 2024. 7. 24. 발의(의안번호 2186), 윤준병의원안 2024. 8. 22. 발의(의안번호 3085), 김주영의원안 2024. 10. 23. 발의(의안번호 485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 7건의 개정안은 국내에 복귀한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을 2년~5년 연장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세제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내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최은석의원안은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의 세액감면 과세연도 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있음.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의 규정에 따른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제도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으며, 이후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제도 도입시에는 해외사업장을 완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완전복귀의 경우에만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였으며, 감면을 받기 위한 복귀지역은 수도권 밖으로 한정하였고, 2013년 시행 법률에서는 부분복귀제도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하면서 그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였으며, 동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음. 부분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에서 대기업을 제외한 것은 완전복귀 이외에는 대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275]

2016년 시행 법률에서는 동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8년도까지 연장하였고, 2017년 시행 법률에서는 부분복귀 시 세액감면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세액감면 대상 지역을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임.

275)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검토보고서, 2012.10., p.147

또한, 2019년 시행 법률에서는 부분복귀 시 세액감면 대상을 대기업까지로 확대하면서,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100% 세액감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고,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하였음.

이후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 법률에서는 창업 및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증설을 통한 국내복귀의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감면대상 복귀방법을 확대하였으며, 2021년 세법개정에서는 세액감면 적용기간을 2024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였음.

마지막으로, 최근 개정된 2024년 시행 법률에서는 완전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과 지원기간을 최초 7년간 100%와 이후 3년간 50%로 확대하였음.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주요 변화]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2011</th><th>2013</th><th>2016</th><th>2017</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4</th></tr>
<tr><td rowspan="4">세액감면대상 및 감면율</td><td>완전 복귀</td><td>모든 기업</td><td>모든 기업</td><td>모든 기업</td><td>모든 기업</td><td>모든 기업</td><td>증설 추가</td><td colspan="2">모든 기업</td></tr>
<tr><td>감면율</td><td colspan="6">5년간 100% + 2년간 50%</td><td>7년간 100% +3년간 50%</td></tr>
<tr><td>부분 복귀</td><td>-</td><td>중소 기업</td><td>중소 기업</td><td>중소·중견기업</td><td>모든 기업</td><td>증설 추가</td><td colspan="2">모든 기업</td></tr>
<tr><td>감면율</td><td>-</td><td colspan="3">3년간 100% + 2년간 50%</td><td colspan="3">5년간(수도권 3년간) 100%+2년간 50%</td><td>(수도권) 3년간100% +2년간 50% (비수도권) 7년간100% +3년간 50%</td></tr>
<tr><td colspan="2">세액감면대상 복귀지역</td><td>수도권 밖</td><td>수도권 밖</td><td>수도권 밖</td><td colspan="5">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td></tr>
<tr><td colspan="2">적용기한</td><td>2012년말</td><td>2015년말</td><td>2018년말</td><td>2018년말</td><td>2021년말</td><td colspan="2">2024년말</td></tr>
</table>

동 제도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을 보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소득세·법인세액 감면실적은 2014년도 1,000만원에서 2023년도에는 1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 및 2025년에도 감면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실적]

(단위:억원)

신고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소득세	0.1	0.1	0.1	0.2	0.4	0.1	0	0	0	0	0	0
법인세	-	3.7	5.7	2.3	2.8	8	1.6	3	8	12	59	61
합계	0.1	3.8	5.8	2.5	3.2	8.1	1.6	3	8	12	59	61

주) 2024년 및 2025년은 전망치
자료: 각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실적은 시기별로 등락을 보여 왔으나,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71개사가 국내복귀하는 등 전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 고금리 등 어려운 대내외 투자환경 속에서 복귀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4년 이후 2023년까지 총 146개사가 국내로 복귀하였으며, 특히 2023년 국내복귀기업 22개사 중 중견·대기업의 비중은 40.9%(9개)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음.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현황]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현황) 법률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126개社

○ 연도별: ('14)15 → ('15)2 → ('16)10 → ('17)4 → ('18)8 → ('19)14 → ('20)23 → ('21)26 → ('22)24 → ('23)22

○ 진출국가별: 중국 113, 베트남 16, 미국 4, 필리핀 2, 인도네시아 2, 멕시코·대만·일본·인도·미얀마·방글라데시 9

○ 기업규모별: 대기업 4, 중견기업 34, 중소기업 108

○ 업종별

전자	자동차	금속	기계	주얼리	화학	신발	섬유	포장재	기타	계
41	30	17	11	11	9	8	6	5	8	146

○ 국내복귀지역

충남	전북	경기	경북	경남	부산	인천	대구	충북	세종	광주	울산	강원	전남	계
19	19	20	24	17	14	7	8	6	3	3	2	3	1	146

< 국내복귀기업의 기업규모별 분포 추이 (단위 : 개社)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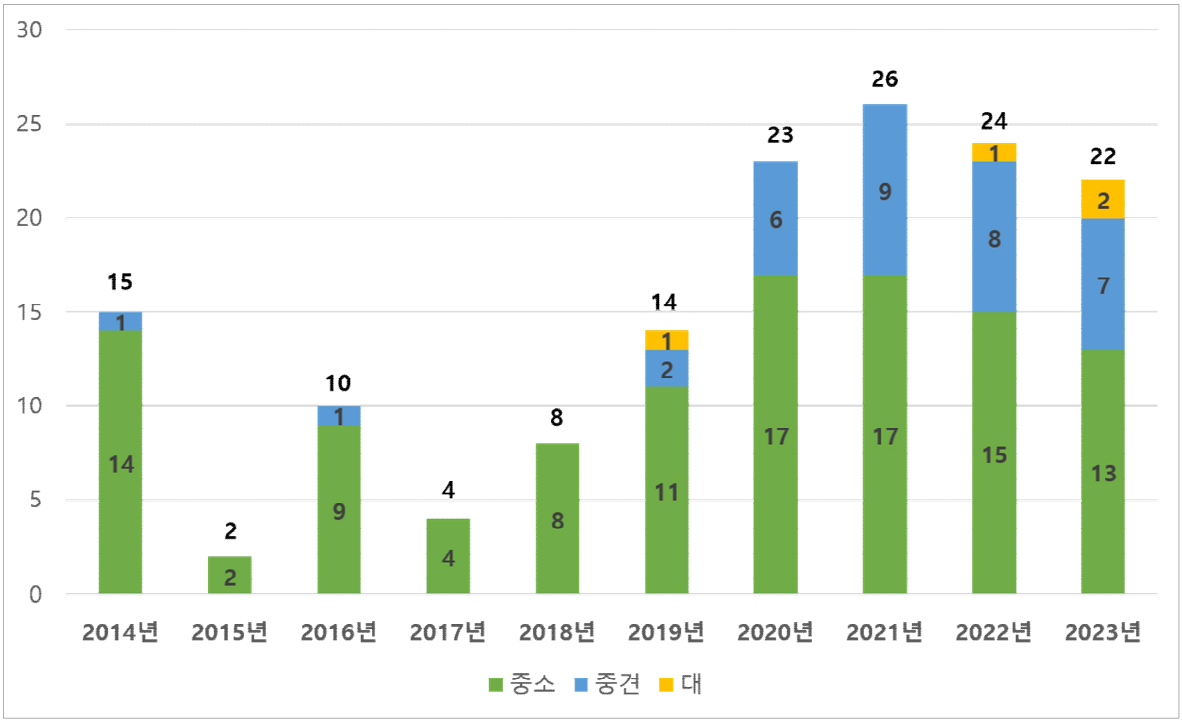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가. 적용기한 연장(엄태영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개정안은 2024년말 일몰이 예정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2년~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음.

국내복귀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 복귀기업 수의 증가와 함께 2014년 745억원에서 2023년 1조 1,361억원로 증가하고 있으며,

총 고용계획 규모 또한, 2014년 685명에서 2022년 1,794명, 2023년 1,281명으로 증가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국내복귀기업 투자계획 규모 추이]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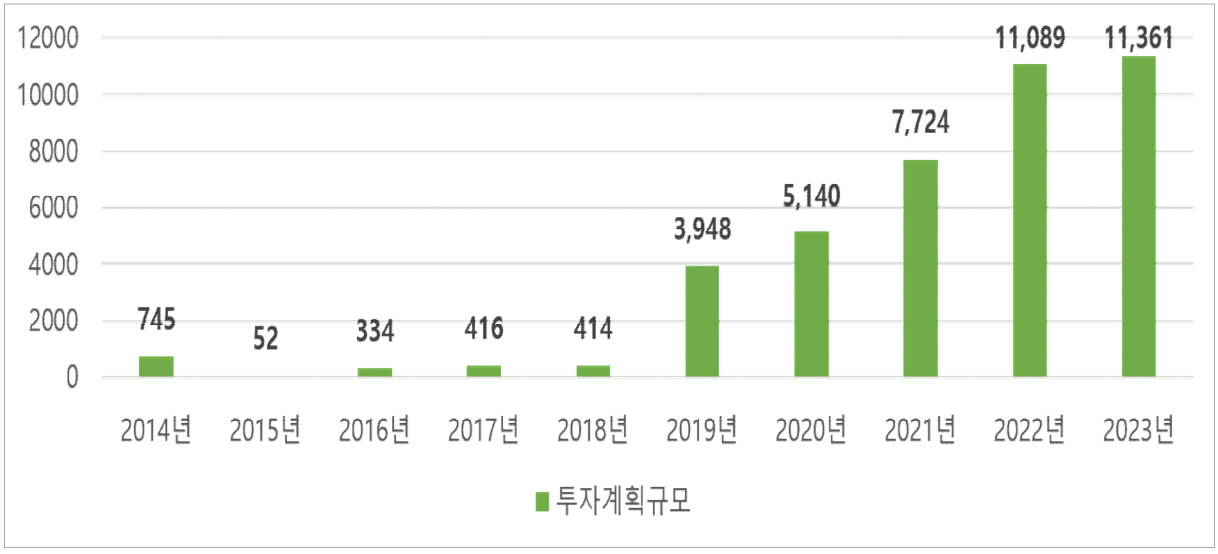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내복귀기업 고용계획 규모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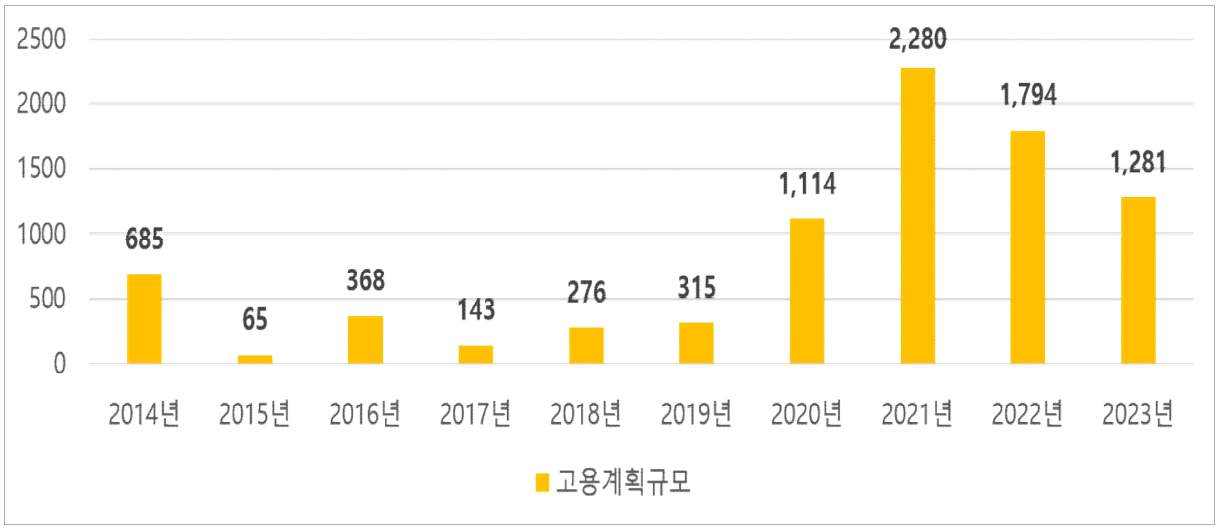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참고로, 국내복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해외진출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 보조금 지원(49.7%), 법인세(소득세) 감면(26.6%), 금융(대출/보증) 지원(6.5%), 자동화 설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4.7%) 등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276]

둘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는 국내 자체 공급망 확보를 통하여 예상치 못한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산업활동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수입은 주로 중국, 일본, 미국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 천재지변, 수출규제 등 통상환경 급변 등 예상하지 못한 국제적인 충격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공급망 확보 등의 전략이 필요함.

27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3년 해외진출기업 경영현황 및 국내복귀 수요조사 결과보고', 2023.

특히 과거 생산비용의 절감방식에서 공급망 안정 위주로 산업구조의 변화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공급망의 내부화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음.

셋째, 동 제도에 따른 세액 감면실적이 2023년 기준 12억원에 불과하여 과세기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개정안은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년~5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할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할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5

11. 정비사업 채권포기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엄태영의원안,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제104조의26)	□ 적용기한 연장
○ 적용요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 취소사유: 정비구역 지정 해제 등 - 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 포기	○ (현행과 같음)
○ 내용 - 시공사 등: 포기한 채권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 조합 등: 채권포기에 따라 조합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4. 12. 31.	○ 적용기한: 2026. 12. 31.(엄태영의원안) 2027. 12. 31.(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시행일: 2025. 1. 1.

* 엄태영의원안 2024. 6. 13. 발의(의안번호 430),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 3건의 개정안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진행을 위해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된 상황에서 시공자 등이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채권포기에 따라 조합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안은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정부안·정태호의원안은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동 과세특례 신설 전에는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등이 조합 등에 대한 대여금[277] 중 회수가 불투명한 대여금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대여금(매몰비용) 회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이로 인해 시공사 등과 조합 및 추진위원회 소속 주민 간 갈등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따라 뉴타운 등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되고 시공사 등[278]이 해당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279] 해당 채권가액을 손금산입 가능하도록 하고,[280] 채권 포기에 따라 조합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과세특례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음.

종전에는 동 규정에서 舊「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의2를 인용하여 조합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

277) 일반적으로 조합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건설사를 통해 대여금으로 조달하고 이때 시공사는 조합원들에게서 연대보증을 받음.(「2021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78)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279) 채권포기 요건: ① 시공자 등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3조에 따른 채권확인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채권확인서에 따라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② 시공자 등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280) 본래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회수불능인 경우에만 손금산입이 가능함.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 등의 사유로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하였음[281].

그런데 2017년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시 타법 개정[282]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인용 조문이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에서 제113조[283]로 개정됨에 따라 손금산입 적용대상이 도시정비법 위반 등

---

281) 舊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7년 전부개정 이전)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① 구청장등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조합이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이하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추진위원회가 그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삭제
5.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조에서 "조합 설립인가등"이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3. 제4조의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28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법률 제14567호) 부칙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⑲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7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로 한다.

28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3조(감독) ①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의 사유로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로 변경되어 과세특례의 본래 취지와 달라졌음.

이에 따라 2021년 세법개정을 통해 인용 조문을 다시 도시정비법 제22조로 개정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 등의 사유로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 손금 산입되도록 하였음.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계속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비사업 중단 시의 출구전략을 마련하여 정비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음.

[연도별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재건축사업 조합인가 현황]

(단위: 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현황	4	9	6	38	39
재건축사업 조합인가 현황	26	43	31	11	10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둘째, 조세지출 규모가 크지 않아 국가의 재정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021년 조세지출 실적은 0.5억원이었고, 2022년 실적 및 2023년 실적은 1억원이었으며, 2024년 및 2025년 전망도 각각 1억원 이하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법인세	0.5	1	1	1	0.8

주) 2024년, 2025년은 전망치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그리고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된 때 시공사 등이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데, 동 과세특례는 손금산입 시점을 앞당겨주는 정도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과도한 특례로 보기 어려움.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동 과세특례로 인한 시공사의 매몰비용 보전의 범위가 법인세 감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공사 등이 선제적으로 채권을 포기할 결정적 유인으로 작용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KDI의 「2021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에서는 동 제도에 대해 '시공사 등이 활용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시공사 등이 선제적으로 채권포기를 할 유인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둘째, 현행 제도는 기본적으로 대손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법인세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로서, 특정 채권에 대해서만 혜택을 제공하여 과세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관계에서도 채권 회수와 관련된 분

쟁과 갈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비사업만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가 필요함.

셋째, 조합 등은 과세특례가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채무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채권자인 시공자 등에 대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284)]

□ 한편, 개정안은 적용기한을 2년 또는 3년 연장하려는 것인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5

284) 전병욱, '정비사업채권 손금산입의 타당성 분석', 「조세와 법」 제14권 제2호, 2021. 12.

1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 (정태호 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104조의31)	□ 이월공제금액 명확화
○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7조에 적합할 것 -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현행과 같음)
○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배당가능이익 =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 (현행과 같음)
○ 공제방법: <u>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u>	○ 공제방법: <u>①+②+③의 금액이 해당</u>

현 행	개정안
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이하 “초과배당금액”)은 최대 5년간 이월공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배당금액(이하 “미공제 배당금액”)은 최대 5년간 이월공제 * ① 이월결손금, ② 이월된 미공제배당금액, ③ 당기 배당금액
- 이월한 초과배당금액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액 및 나중에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보다 우선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	- 이월한 미공제 배당금액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액 및 나중에 발생한 미공제 배당금액보다 우선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
○ 적용기한: 2025. 12. 31.	○ (현행과 같음)

*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 2건의 개정안은 프로젝트금융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이월공제 대상 미공제 배당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과 배당금액의 합계액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는 금융기관이나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의 자금과 현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자산관리업무는 전문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하는 회사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도로·항만·철도·관광시설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사용되고 있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금융기관의 대규모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 진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도관 성격’의 법인으로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285]

285) 「조세특례제한법」

동 제도는 그 동안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가 동 제도에 대한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2021년부터「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였음.

또한, 2022년 세법개정에서는 프로젝트금융회사가 배당가능금액을 초과하여 배당한 경우 이를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초과배당액을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286)]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을 보면, 특례적용 첫해인 2021년 192억원의 조세지출이 발생하였고,

---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1.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2.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8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다른 회사와 달리 재무제표 상의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도 유효한 배당을 할 수 있음에도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보다 커서 초과배당액이 발생한 경우 차기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액을 소득공제하지는 못한다고 해석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월공제 규정을 도입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의안번호 제17151호) 참고].

2023년 701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는 다소 조세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법인세	192	521	701	404	423

주)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과 배당금액(이월된 미공제 배당금액 포함)의 합계액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된 규정에서는 이월공제 대상 배당금액을 단순히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월되는 공제금액 계산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A)이 80, 이월결손금(B)이 30, 당기 배당금액(C)이 100이었다고 가정할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하고 나서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월공제 대상 배당금액으로 보면 당기에 공제받지 못한 50[C-(A-B)]을 모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월공제 대상 배당금액으로 볼 경우 이월가능한 공제금액은 20(C-A)만 가능해져

법인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됨.

실무에서는 국세청 예규[287]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이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5

287) 사전-2023-법규법인-0312

13. 중복지원 배제 확대 및 추가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중복지원 배제(제127조)	□ 중복지원 배제(제127조)	□ 중복지원 배제(제127조)
○ 중복배제 적용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중복배제 적용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고용증대 추가감면(제6조제7항)과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증대(제29조의8제1항) 중복 배제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과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중복 배제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과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증대(제29조의8제1항) 중복 배제
○ <신 설>	○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제29조의4)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탄력고용지원(제29조의8제9항)* 중복배제 * 정부안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을 전제로 함 ○ 시행일: 2025. 1. 1.	○ (현행과 같음) ○ (좌 동)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 2건의 개정안은 조세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중복지원 배제를 확대하거나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안은 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법 제6조)과 통합고용세액공제(법 제29조의8) 중복배제를 확대하고, ②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법 제29조의4)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탄력고용 지원(법 제29조의8제9

항)[288] 간 중복배제를 추가하려는 것임.

정태호의원안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법 제6조)와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증대(법 제29조의8제1항) 간에만 중복배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 법 제127조에 따른 중복지원의 배제는 조세특례의 내용이 중복적으로 적용되어 과다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취지임. 동일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간 중복적용 배제[289], 동일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간 중복적용 배제[290], 동일사업장 내 세액감면간 중복적용 배제[291], 세액공제와 세액감면간 중복적용 배제 등이 규정되어 있음.

이중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고용증대 추가감면(법 제6조제7항)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에 따른 세액공제(법 제29조의8제1항)는 중복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법 제6조)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50~100%의 기본감면율 외에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전년대비 증가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증가율 × 50%'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임.

---

288) 정부안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법 제29조의8)을 전제로 함.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하는 탄력고용자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법 제29조의8제9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89)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3제3항),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

290)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제19조제1항)와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 공제(제29조의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와 청년고용 증대 세액공제(제29조의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30조의4)

29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7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6조), 지방이전기업 세액 감면(제63조), 각종 특구입주기업 등 세액감면(제12의2 등) 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요]

구분	기본 감면		추가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중소기업	-	5년 50%*	상시근로자 증가율 × 50%
청년·생계형**	5년 50%	5년 100%	
벤처기업	5년 50%*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5년 50%*		
창업보육 센터사업자	5년 50%		

* 신성장서비스업 우대감면(~2024. 12. 31.): 3년 75%, 2년 50%

통합고용세액공제(법 제29조의8)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에 대해 고용증가 인원당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임.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요]

(단위: 만원)

	구 분	공제액			
		중소(3년)		중견(3년)	대기업(2년)
		수도권	지방		
기본공제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구 분	공제액	
		중소	중견
추가공제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배제 확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에 고용증가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배제하려는 취지임.

정부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중복적용 배제로 매년 277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둘째, 정부안에서 신설하려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상 탄력고용자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와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292]는 모두 임금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중복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정부안은 중복지원 배제를 통해 과도한 조세지원을 배제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배제 확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29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기본감면만 적용받고 고용증대에 따른 추가감면은 적용받지 않으면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는 이중지원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창업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과 동일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중 고용증대에 따른 추가감면은 적용

292)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의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0% 세액공제하는 제도임.

293) 정부안에 따라 통합세액공제 제도가 개편되는 것을 전제로 함.

받지 않고 기본감면 혜택만 받게 됨.

그리고 해당 기업의 탄력고용자 인건비가 증가하였다면 정부안에 포함된 개편된 방식의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다른 예시로는, 기업규모가 작아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중 고용증대에 따른 추가감면은 적용받지 않고 기본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면서,[294]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음.

이와 같은 사례에서 창업중소기업의 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감면 혜택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고용에 대해 지원되는 세액공제 혜택은 동일한 사유에 대한 중복지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문 의 처
02)6788-5155

29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한다)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업종명칭 변경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제6조제3항)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명 변경
○ 제조업 등	○ (현행과 같음)
- 제외업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 제외업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제7조제1항)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명 현행화
○ 작물재배업 등	○ (현행과 같음)
- 제외업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 제외업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업종 (제106조제5항)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명 현행화
○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등	○ 개인택시운송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등

*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 2건의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업종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

□ 제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는 2021~2023년 기간 중 세차례의 대국민·관계기관 의견수렴, 4차에 걸친 전문가 분류심의회 및 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었고,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295]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국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여 산출되는

295) 통계청 고시 제2024-2호(2024.1.1.)

자상자산을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하여 가상자산 매매와 중개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상대적 비중이 감소한 산업인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업',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과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으로 분류를 통합하였음.

□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법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의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제106조제5항의 '용달 및 개별 화물 자동차운송업, 그 밖의 도로화물운송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화물운송업'으로 수정하려는 것으로서 최근 개정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명을 반영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155

<부가가치세 분야>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에 대한 가산세 추징 배제 사유 신설(정태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에 대한 가산세 추징(제106조의7)	□ 가산세 추징 배제 사유 신설
○ 적용대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 (현행과 같음)
○ 납부세액 경감률: 부가가치세액의 99%	○ (현행과 같음)
○ 경감액 지급대상 - 경감세액의 90%: 운수종사자 - 경감세액의 5%: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 - 경감세액의 4%: 복지기금 재원	○ (현행과 같음)
○ 사후관리: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 미지급시 다음 금액 추징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이자상당액 - 가산세	○ (현행과 같음)
<u><신 설></u>	○ <u>가산세 추징배제</u> - <u>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 2건의 개정안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1995년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도입·시행되었음. 이후 경감율이 100분의 90(2009년 시행), 100분의 95(2015년 시행), 100분의 99(2018년 시행)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적용기한 또한 계속 연장되어 현재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현재 경감세액의 100분의 90은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고, 100분의 5는 택시감차보상재원 관리 기관[296]에, 100분의 4는 운수종사자 복지를 위한 복지재단[297]에 지급되고 있으며, 동 제도에 따른 2023년 조세지출 규모는 2,067억원임.

[일반택시 운수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의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망)	2025 (전망)
조세지출 규모	2,012	2,022	1,786	1,835	2,067	2,318	2,440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기획재정부)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을 지급기간[298] 내에 지급하였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

296) (재)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2015년 설립)

297) (재)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2018년 설립)

298)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내에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이하 “미지급통보”라 함)해야 함.

국세청장 등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지급하지 않은 경감세액에 대하여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지연지급)와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미지급)로 구분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을 지연지급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과 가산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를 추징함.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세액 관련 추징금액]

구분	계산식	추징금액
지연지급	① 이자상당액: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미지급기간(일)×0.022% ② 가산세: 지급하지 않은 경감세액 상당액×100분의 20	①+②
미지급	①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② 이자상당액: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미지급기간(일)×0.022% ③ 가산세: 지급하지 않은 경감세액 상당액×100분의 40	①+②+③

□ 2건의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사망, 주민등록의 말소 등 예외적인 경우로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자기귀책이 없는 사유로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추징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적 성격의 가산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60

2.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신설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면세점송객용역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신설(제106조의11) ○ 대상용역: 관광사업자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관광객을 면세점에 유치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객(送客) 용역 ○ 대상자: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 ○ 부가가치세액 납부절차 -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개설 -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에 입금 -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 ○ 가산세 -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와 그 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 각각 면세점송객용역 가액의 10% 징수 -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지연입금 가산세):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다음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 가산 ○ 면세점송객용역의 매출액이 면세점송객용역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 환급을 보류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자는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함.

현 행	개 정 안
	○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해 필요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명령 가능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 2건의 개정안은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면세점사업자가 관광사업자로 하여금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송객용역(이하 "면세점송객용역"이라 함)을 공급받은 경우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이하 "송객수수료"라 함)의 부가가치세를 관리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는,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는 면세점사업자 또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가 지급한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가 거래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전용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통해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면세점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 받은 후 국세청에 바로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1조[299]는 거래징수를 규정함으로써 공급자(사업자)가 매입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299)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공급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거나 폐업하는 등 거래징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은 세금을 탈루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자납부특례'를 허용하고 있음.

[일반적 거래 및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대상 거래 흐름 비교]

□ 일반적 거래 흐름(거래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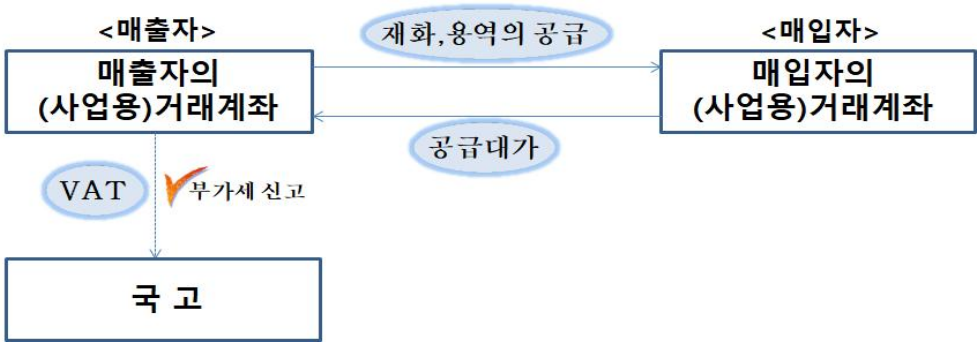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거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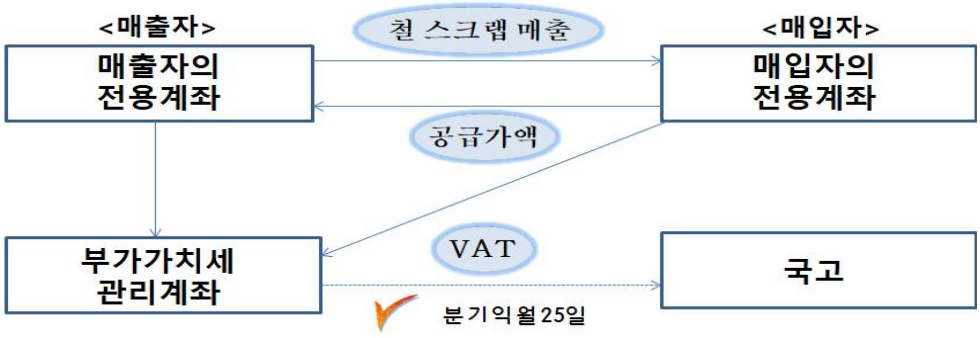

출처: 국세청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는 2008년 금지금[300] 거래에 대하여 처음 도입된 이후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과 정상적인 납세를 위해 특례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왔음.

2009년 고금, 2014년 구리 스크랩[301], 2015년 금 스크랩에 이어 2016년 철 스크랩 거래가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구리, 철 외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을 포함한 비철금속류에 대하여도 매입자납부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였음.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현황]

대상	금지금	고금	구리 스크랩	금 스크랩	철 스크랩	비철금속류
시행일	2008년 7월 1일	2009년 7월 1일	2014년 1월 1일	2015년 7월 1일	2016년 10월 1일	2024년 7월 1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통상 국내 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면세점 구매를 알선하는 여행사와 여행가이드 등에게 여행객 유치에 대한 대가로서 면세점 매출의 일정 비율만큼을 송객수수료로 지급하는데,

송객수수료의 규모가 2018년 1조 3,180억원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면세점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 감소 등의 이유로 2021년 3조 8,750억원, 2022년 7조 1,530억원까지 증가하였음.

300)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

301) 스크랩은 금속제품을 만들 때 생기는 금속 부스러기나 제품의 폐물, 쇠 부스러기 등이 대표적이며, 강철의 제련과 재생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가리킴.

[연도별 송객수수료 및 면세점 매출액]

(단위: 십억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송객수수료 (A)	297	549	563	967	1,148	1,318	1,300	863	3,875	7,153	595
외국인면세점 매출액(B)	4,267	5,730	6,119	8,815	10,652	15,000	20,813	14,585	17,005	16,390	11,073
비중 (100*A/B)	7.0	9.6	9.2	10.9	10.8	8.8	6.2	5.9	22.8	43.6	5.4

자료: 기획재정부(관세청 및 한국면세점협회 작성)

그런데 공급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일부 여행사가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고의로 폐업하여 세금을 탈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면세점 및 여행사 간 거래구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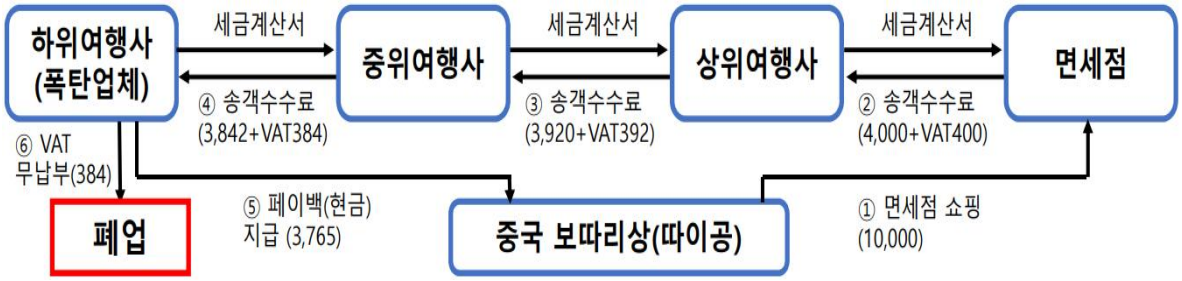

주: 송객수수료 규모는 면세점 매출의 40%, 여행사 마진은 매출의 2%로 가정
자료: 기획재정부

□ 개정안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9에서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등 재화에 대해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하여 도입하려는 것으로, 면세점송객용역의 매입자인 면세점 등이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탈세를 방지하여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투명한 거래와 과세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면세점사업과 관광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정책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2건의 개정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매입자특례 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납세자 협력비용 발생으로 여행업계의 경영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일반 사업자의 경우 매출자가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만, 매입자납부특례를 시행하게 되면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어 매출자의 자금부담[302]과 함께 전용계좌 개설, 미사용 시 가산세 부과 등과 같은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는 금 관련 제품 등 특정 재화에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재화와 달리 거래의 실질의 파악하기 곤란한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하여 매입자 납부 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금 관련 제품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와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160

302) 부가가치세 납부전까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자금을 활용하는 경영을 하던 사업자의 경우 자금 운영 측면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3.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제107조의2제1항)	□ 환급대상 숙박업의 범위 확대
○ 환급대상: 외국인관광객	○ (현행과 같음)
○ 대상용역: 30일 이하의 **관광호텔** 숙박용역	○ 대상용역: 30일 이하의 관광호텔 등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숙박용역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현행과 같음)

*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 2건의 개정안은 2024년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303]에서 언급된 방한관광객 유입의 촉진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외국인관광객 등[304]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305]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이하 "환급대상 숙박용역"이라 함)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건의 개정안은 환급대상 숙박용역의 범위를 관광호텔 외에도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업 등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306]에 따른 호텔업과 휴

303) 「활력있는 민생경제-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2024.1.4.

304)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으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하며, 법인,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국제연합군·미국군의 장병 등은 제외됨.

305)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 관련 시행령 규정

양콘도미니엄업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13호, 2022 2.15.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3호, 2024 2.29. 일부개정]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② 법 제10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호텔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호텔 2. 해당 호텔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을 해당 호텔의 전년 또는 전전 연도(2022년에 숙박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직전 4개 연도 중 1개 연도)의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의 100분의 110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호텔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② 법 제10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호텔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 2. (좌 동)

※ 기획재정부는 2024년 2월 29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급대상 숙박용역의 범위가 당초 관광호텔에서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로 이미 확대되었고, 이번 개정안의 입법화를 통해 휴양콘도미니엄까지 포함할 계획이라 설명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급대상 숙박용역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취지와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동 보고서는 현행 법률 규정과 개정안에 대하여 비교검토·설명함.

306)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동 특례제도는 정부가 1977년 7월 외화획득 장려 차원에서 영세율 제도를 도입한 후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하다가 요금인하 효과가 없고 세제혜택이 숙박업계의 이윤으로 흡수되는 문제를 감안하여 2009년에 영세율 제도를 최종 폐지하였음.

이후 정부는 2013년 7월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2014년 4월 1일부터 도입하여 2015년 3월 31일까지 시행 후 1차례 연장되었다가 일몰되었음.

현행 특례제도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 장기화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재시행[307]된 것이나, 이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4차례 연장되어 2025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 수는 11,032천명으로 2022년 대비 245%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7,503천명에 비하면 약 63.0% 수준에 불과함.

[방한 외국인관광객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외국인관광객 수	15,347	17,503	2,519	967	3,198	11,032
전년대비 증가율	15.1	14.0	△85.6	△61.6	230.7	245.0

자료: 한국관광공사

307) 2018년 재시행 시 현행과 같이 ①최소 숙박일수 축소(2일→1일), ②요금인상률 확대(5%→10%) 등 완화된 요건 기준을 적용함.

코로나19 이후 방한 외국인관광객 수가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관광 트렌드의 변화로 단체여행보다 개별여행의 비중이 확대되고 평균 체류일수 등의 감소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제한적인 상황[308]임을 고려할 때에,

2건의 개정안은 외국인관광객의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을 확대하여 관광객 유치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숙박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시키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2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된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해외사례는 없으며,

이스라엘[309]을 제외한 OECD 일부 국가에서 호텔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310]하고 있으나 내외국민 차별 없이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관광객의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확대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 측면이 있음.

둘째, 동 세제지원을 통한 외국인관광객의 방한 제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외국인관광객이 방한시

308) 「관광수입 증대를 위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4. 6.17.

309) 이스라엘은 외국인관광객에 한정하여 영세율 적용 중임.

310)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숙박세, 도시진입세 등의 이름으로 관광세를 거두고 있음.

고려한 관광인프라의 비중은 대중교통 및 교통 45.6%, 치안 41.3%, 숙박시설 34.3%, 경제적인 여행경비 32.7%, 언어소통 23.1% 순으로 조사[311]되고 있음.

[2023년도 외국인관광객이 방한시 고려한 인프라 현황]

(중복응답, 단위: %)

구 분	비율
대중교통 / 교통	45.6
치안	41.3
숙박시설	34.3
경제적인 여행경비	32.7
언어소통	23.1
모바일 / 인터넷 이용편의	19.4
출입국 절차	17.2
관광안내 서비스	16.0
길찾기	10.6
디지털 관광 정보	5.0
의료체계 / 질병관리	3.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외국인관광객의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을 확대하는 세제지원은 외국인관광객의 방한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문 의 처
02)6788-5160

311) 2023 외래관광객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4. 7.

<개별소비세 분야>

1.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 축소(엄태영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조인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109조)	□ 적용기한 연장 및 하이브리드차 감면한도 축소
○ 적용대상 -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현행과 같음)
○ 감면한도 - 하이브리드자동차: 대당 100만원 - 전기자동차: 대당 300만원 - 수소전기자동차: 대당 400만원	○ 감면한도 축소(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하이브리드자동차: 대당 70만원 - 전기자동차: (현행과 같음) - 수소전기자동차: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4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엄태영·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2027년 12월 31일(김주영의원안) - 2028년 12월 31일(조지연·조인철의원안) - 2029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

* 엄태영의원안 2024. 6. 14. 발의(의안번호 476), 조지연의원안 2024. 7. 18. 발의(의안번호 1911), 조인철의원안 2024. 7. 18. 발의(의안번호 1932), 윤준병의원안 2024. 8. 23. 발의(의안번호 3126), 김주영의원안 2024. 10. 22. 발의(의안번호 4815),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 7건의 개정안은 ①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②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특례의 한도를 축소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엄태영의원안·정태호의원안과 정부안은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김주영의원안은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조지연의원안과 조인철의원안은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 윤준병의원안은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한편,

정태호의원안과 정부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를 대당 100만원에서 대당 70만원으로 축소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 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9년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대상으로 신설되었고, 2012년에는 전기자동차, 2017년에는 수소자동차가 동 제도에 포함됨.

개별소비세의 감면한도는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경우 신설 당시부터 현재까지 각각 100만원과 4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고, 전기자동차는 도입 당시 200만원이었으나 2018년부터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음.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구 분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현행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시)	100만원 (143만원)	300만원 (429만원)	400만원 (527만원)
적용기간	2009. 1. 1. ~ 2024. 12. 31.	2012. 1. 1. ~ 2024. 12. 31.	2017. 1. 1. ~ 2024. 12. 31.

주) 개별소비세액의 30%만큼 교육세 부과(surtax)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엄태영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조인철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7건의 개정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엄태영의원안·정태호의원안 및 정부안은 2년 연장, 김주영의원안은 3년 연장, 조지연의원안과 조인철의원안은 4년 연장, 윤준병의원안은 5년 연장하려는 내용임.

□ 7건의 개정안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312]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체계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2023년 12월말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현황은 총 198만 6,422대로 전체 승용차 대비 9.3% 수준이나 매년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312)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 등을 통한 흡수 또는 이산화탄소의 포집 등을 통한 제거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하여 탄소의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제로(Net-Zero)라 부름.(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12.22.)

[환경친화적 자동차 누적 등록 현황(승용차 기준)]

(단위: 대, %)

연도	하이브리드차 (A)	전기차 (B)	수소전기차 (C)	환경친화적 자동차 (A+B+C)	비중	전체 승용차
2016	232,996	10,771	87	243,854	1.4	17,338,160
2017	313,578	24,907	170	338,655	1.9	18,034,540
2018	404,759	55,417	891	461,067	2.5	18,676,924
2019	505,711	87,926	5,068	598,705	3.1	19,177,517
2020	674,115	117,616	10,831	802,562	4.0	19,860,955
2021	907,853	185,256	19,270	1,112,379	5.4	20,410,648
2022	1,170,112	303,261	29,337	1,502,710	7.2	20,952,759
2023	1,541,747	411,084	33,591	1,986,422	9.3	21,390,202

주 1) 해당 연도 12월 기준
2) 비중은 전체 승용차 대비 친환경자동차 등록대수임.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현황 보고」(각 연도)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별소비세 감면과 같은 조세 감면 혜택이 없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동 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참고로 조세특례 심층평가[313]에 따르면,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추진 방안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내연기관차 대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쟁력이 확보되는 시점가지는 일정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세 가지 유형의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의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음.

313)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24. 9. p.207

□ 다만, 동 감면제도에 따른 2023년도 감면세액은 하이브리드차는 2,740억원, 전기차는 2,580억원, 수소전기차는 178억원으로 총 5,498억원이며, 조세지출의 규모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망)	2025 (전망)
하이브리드차	883	750	1,085	1,470	2,740	3,436	3,008
전기차	572	490	700	1,613	2,580	3,622	3,822
수소전기차	69	142	167	208	178	67	70
계	1,524	1,382	1,952	3,291	5,498	7,125	6,900

주)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개별소비세 감면액임.
자료: 각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기획재정부)

□ 한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60

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의 축소(정태호의원안, 정부안)

□ 2건의 개정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를 대당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하고, 전기차와 수소차는 대당 300만원과 400만원의 감면한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려는 것임.

2022년 2월에 발표된 「저공해차 분류체계 개편 및 세제지원 조정방안」[314]에 따르면 정부는 하이브리드차의 온실가스 저감효과,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해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친환경차의 범위에서 제외할 계획임.

또한, 2023년 4월에 발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315]에 따르면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 및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친환경화 추진을 위해 수소·전기차의 보급률을 2022년 1.7%(43만대)에서 2030년 16.7%(450만대), 2050년 85%~97%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임.

□ 2건의 개정안은 이러한 계획을 반영하여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를 축소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수소·전기차에 비하여 친환경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지원은 동일하게 유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대적 차이에 보다 상응하는

314)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관계부처 합동 (2022. 2.24.)

3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해당 기본계획 p.198

조세유인 체계를 설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환경부에 따르면 연료공급 단계부터 자동차운행 단계까지의 전(全) 과정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한 결과 전기차 94g/km, 하이브리드차 141g/km, 경유차 189g/km, 휘발유차 192g/km 순으로 나타났음[316].

둘째, 하이브리드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하거나, 무공해차와 저공해차로 세분하여 세금 감면을 차등하는 등의 국제사례가 증가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벨기에,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등은 하이브리드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덴마크 및 핀란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무공해차와 저공해차로 세분하여 세금 감면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317].

□ 다만, 2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를 축소할 경우, 하이브리드차 구매를 고려했던 소비자들이 전기차 또는 수소차보다는 내연기관차 구매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가격요인 이외에 전기차·수소차의 이용편의성 및 안전성 등

316) 환경부 보도자료(연료별 운행까지 온실가스 전과정 측정 결과, 친환경차 배출량 내연차 절반 수준). 2015. 6.24.
* 전과정평가(LCA) : 연료공급단계(원유추출, 원유수입, 석유정제, 국내분배) + 자동차운행단계
* 온실가스 산정기준 : 전력원 기준(석탄 39%, 천연가스 23%, 원자력 29%, 기타 9%)과 자동차 등록대수(2014년 기준)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317)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 하이브리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2024. 9.) p.136

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세유인 변경에 따른 대체효과가 전기차·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간 보다는 하이브리드차와 내연기관차 간에 발생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임.

[국내판매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내연기관차 가격 비교]

(단위: 만원)

구 분	대표 차종	가격
내연기관차	현대 아반떼 가솔린	1,994~2,826
	현대 소나타 가솔린	2,808~3,917
	기아 K5 가솔린	2,784~3,526
	기아 K8 가솔린	3,736~5,055
	제네시스 G80 가솔린	5,890~6,830
하이브리드차	현대 아반떼 하이브리드	2,485~3,161
	현대 소나타 하이브리드	3,187~3,921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2,757~3,468
	기아 K5 하이브리드	3,183~3,811
	기아 K8 하이브리드	4,372~5,167
	도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4,630~4,990
전기차	현대 코나 일렉트릭	4,142~5,086
	현대 아이오닉	4,140~4,440
	기아 니로 EV	4,855~5,120
	기아 EV6	5,260~6,242
	기아 EV9	7,337~8,397
	테슬라 모델3	5,199~6,939
수소차	현대 넥소	6,950
	도요타 미라이	가격정보 없음

주: 2024년 9월 자동차 판매가격 기준

문 의 처
02)6788-5160

<관세 분야>

1.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수입 자본재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한병도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수입 자본재 관세 감면(제118조의2)	□ 적용기한 연장
○ 감면율 - 완전복귀: 100% - 부분복귀: 50%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4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 김주영의원안:2026년 12월 31일 - 정부안·한병도·정태호의원안: 2027년 12월 31일 - 윤준병·최은석의원안: 2029년 12월 31일

* 한병도의원안 2024. 7. 5. 발의(의안번호 1413), 최은석의원안 2024. 7. 24. 발의(의안번호 2186), 윤준병의원안 2024. 8. 22. 발의(의안번호3085), 김주영의원안 2024. 10. 23. 발의 (의안번호 485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4975), 정부안 2024. 9. 2. 발의 (의안번호3522)

□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하는 경우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김주영의원안은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정부안,정태호의원안, 한병도의원안은 2027년까지 3년, 윤준병·최은석의원안은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완전복귀 귀업은 수입 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100% 감면하고, 부분복귀 기업

은 관세를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318].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수입자본재 관세감면은 2013년도에 도입되어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관세감면을 적용[319]하다가 2017년도부터는 관세감면 대상을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고 감면한도를 과거보다 2배 상향하였으며[320], 2019년도부터는 감면대상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고 감면한도 제한을 폐지하였음.

□ 최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실적을 보면, 국내복귀기업 수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으로 국내복귀기업이 완만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이러한 상황 속 정부는 국제 정세변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체계의 안정적 구축 및 첨단산업의 유턴투자 촉진을 위해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하였고, 이는 정부 지원 대상이 되는 국내복귀기업의 범위 및 요건을 완화하고,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2023년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전 또는 복귀하는 내국인일 것
2. 제104조의2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의 경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100
2. 제104조의24제1항제2호의 경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50

③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관세감면을 받고 도입한 자본재를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9) 완전복귀의 경우 관세의 100%를, 부분복귀의 경우 관세의 50%를 각각 감면함.

320) 완전복귀의 경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부분복귀의 경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를 상향함.

570억원→2024년 1,000억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321]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현황

□ (유턴기업 선정 현황)

○ 2020년 이후 연 20개 기업 이상 복귀 중임 ('14~'19: 연평균 8.5개, '20~'23: 연평균 23.8개)

○ 연도별 유턴투자규모(억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3,948	5,400	7,715	11,078	11,361

○ 복귀 기업의 81.5%는 비수도권을 복귀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충남 19개, 경북 24개, 전북 14개, 부산 14개, 대구 8개 등)

※ 유턴기업들은 2023년 기준 약 1,281명 고용 투자계획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진출기업의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지속적인 세제지원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인함으로써 국내 산업활동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성공적인 '리쇼어링(re-shoring)[322]'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으로 2022년 기준 5조 2,548억 1,600만불의 FDI 유입이 발생하였으며, 이들 기업이 새롭게 창출한 일자리는 2022년 기준 누적 36만 4,904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323] 우리나라의 경우 상기 자료와 같이 국내복귀 기업의 수는 완만하게 증가하

321)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기업 지원 확 늘린다", 2024. 5. 7. 산업통상자원부

322)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함(한경 경제용어사전).

32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례로 보는 미국 공급망 재편 동향', 2024. 7.

고 있으나 2010년대 국내복귀 리쇼어링 기업은 오프쇼어링 및 확장기업[324]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노동집약적이며 생산성이 낮은 특징을 갖는 편으로 나타나고 있어[325]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임.

둘째, 국내복귀를 고려하는 해외진출기업들이 조세지원정책을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제도가 일정부분 실효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관련 실태분석 조사에 따르면 국내복귀를 고려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법인세 등 감면(40%)과 이전설비에 대한 관세감면(28%) 등이 지목되고 있음[326].

□ 한편, 김주영의원안은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부안과 한병도의원안, 정태호의원안은 2027년 12월 31까지로, 윤준병의원안과 최은석의의원안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할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할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간 조세지출 규모가 300억원

324) 확장기업: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투자하는 기업, 오프쇼어링 기업: 국내에서는 투자를 회수 또는 유보하고 해외에서만 투자하는 기업

325)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 결정 요인, KDI FOCUS, 2023.11.

326) 참고로 중복응답을 허용한 수치임(KOTRA, '중국 및 동남아 진출 우리기업 실태조사 분석', 2016.11, p.96)

이상인 특례에 대해서는 평가를 의무화[327]하고 있으므로, 적용기한을 과도하게 설정할 경우 그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8

327)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1. 납부유예 주식등의 증여규정 정비(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제30조의7) ○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 제30조의5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및 제12항을 준용	□ 준용규정 정비(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 제30조의5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 및 제13항을 준용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 2건의 개정안은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된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 준용하는 인용 조문을 현행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및 제12항"에서 "제30조의5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3항"으로 한 개의 항씩 미루어 인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202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328] 시 함께 개정되지 않은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임.

문 의 처
02)6788-5161

328) 제30조의5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규정이 각각 제8항부터 제15항까지로 되고, 같은 조에 제7항이 신설됨.

2.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적용대상 어업권 정비(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71조)	□ 감면대상 어업권 정비
○ 감면요건 및 내용 -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농지·어선·어업권·축사용지 등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	○ 감면요건 및 내용 (현행과 같음)
○ 감면대상인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 감면대상인 어업권 - 다음의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1)「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어업권 2)「내수면어업법」 제7조의 어업권 3)「양식산업발전법」제2조제8호의 양식업권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 개정안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의 적용대상인 어업권의 범위에 「양식산업발전법」제2조제8호의 양식업권을 추가하려는 것임.

□ 양식업은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329]되기 전까지는 「수산업법」[330]과 「내수면어업법」[331]에서 규율하고 있었는데, 2019년 8

329)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제정]

330) 舊「수산업법」[법률 제14349호]
제8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해조류양식어업(海藻類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3. 패류양식어업(貝類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4. 어류등양식어업(魚類等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월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양식업[332]에 관한 사항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이관 규정되었음.

□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 적용대상 어업권의 범위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61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5. 복합양식어업(複合養殖漁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양식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6.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7. 협동양식어업(協同養殖漁業): 마을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를 초과한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협동하여 양식하는 어업
8. 외해양식어업: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331) 舊「내수면어업법」[법률 제8377호]

제6조(면허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양식어업(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332)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양식업권"이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10조(양식업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해조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2. 패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3. ~ 7. (생 략)

<국세기본법 분야>

1.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간(정부안, 정태호의원안)

□ 현 행	□ 개정안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제99조의10)	□ 특례 적용기간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
○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	○ 폐업일 및 재기 기준일 연장
1. 폐업일 포함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 15억원 미만	1. (현행과 같음)
2. 2023.12.31. 이전 폐업하고 다음 요건 중 하나 충족	2. 2024. 12. 31. 이전 폐업하고 다음 요건 중 하나 충족
가. 2020.1.1.부터 2026.12.31.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개시 이후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 계속	가. 2020. 1. 1.부터 2027. 12. 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 계속
나. 2020.1.1.부터 2026.12.31.까지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	나. 2020. 1. 1.부터 2027. 12. 31.까지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3. (현행과 같음)
4. 신청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4. (현행과 같음)
5.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 5천만원 이하	5. (현행과 같음)
6.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미적용자	6. (현행과 같음)
○ 특례내용	○ (현행과 같음)
-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 면제	
-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가	

□ 현 행	□ 개정안
○ 신청기간: 2020.1.1.부터 2027.12.31.까지	○ 신청기간: 2020.1.1.부터 2028.12.31.까지
○ 강제징수 기준일[333]	○ 특례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강제징수 기준일 추가 규정
- 2019.12.31. 이전 폐업시: 2019.7.25.	- (현행과 같음)
- 2020.1.1.~12.31. 폐업시: 2020.7.25.	- (현행과 같음)
- 2021.1.1.~12.31. 폐업시: 2021.7.25.	- (현행과 같음)
- 2022.1.1.~12.31. 폐업시: 2022.7.25.	- (현행과 같음)
- 2023.1.1.~12.31. 폐업시: 2023.7.25.	- (현행과 같음)
<신 설>	- 2024.1.1.~12.31. 폐업시: 2024.7.25.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 2건의 개정안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기간을 2024년 말까지 폐업한 후 2027년 말까지 사업 개시 또는 취업으로 재기한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특례 신청 기한을 2028년 말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부과됨으로써 재창업 및 취업 후 가중되는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체납된 국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려는 취지임.

동 특례의 전신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로 2008년 말 경제위기 등 경기불황으로 인해 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

333) 체납일 기준일 당시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함.

들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영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전액을 소멸해주던 제도로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334] 시행됨.

현행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는 2019.12.3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0.1.1. 시행)으로 도입되었으며, 기존의 체납액 전액을 소멸해주던 제도를 개선하여 가산금(2021.12.28. 개정시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335]을 면제하고 체납국세를 장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동 제도는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네 차례 연장되어 현재 2023년까지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가 2026년까지 다시 사업을 개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해당 체납액을 최대 5년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영세개인사업자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사람
폐업 및 재기	2023.12.31. 이전 폐업 후 2026.12.31.까지의 기간 중 ①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또는 ②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선의의 체납	5년 이내 조세범으로서 처벌·처분받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 없고 신청일 현재 진행 중인 조세범칙조사가 없는 사람
소액 체납자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액 체납자로 한정

334) 2010년 1월 1일 제도 신설 후 2014년 말에 폐지되었다가 2017년 12월 19일에 재시행되었음.

335) 2021.12.28.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국세기본법」 개정(2018.12.31. 개정, 2020.1.1. 시행) 시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국세징수법」의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 바 있음)

구 분	주 요 내 용
체납액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
중복적용 금지	기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을 받은 경우는 제외
특례 내용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 면제 체납액에 대한 최대 5년 이내 분납 허가
신청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특례 취소	기준일 당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체납액 징수특례 취소하고 강제징수

□ 그런데 동 제도의 적용대상이 2023년 말까지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경제침체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2024년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동 제도가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개정안은 동 제도가 적용되는 최종 폐업일을 2024년 말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 코로나19 이후 여전히 경기여건이 불확실하여 취약계층인 영세개인사업자의 경영상 피해가 심각하고, 이로 인해 폐업으로까지 이어진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다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61